

中國文化大學外語學院韓國語文學系

碩士論文

Master of Art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ollege of Foreig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Culture University

韓·台喪葬禮比較研究

A Comparative Study on Funeral Rites between Korea and Taiwan

한·대상장례비교연구



指導教授：扈貞煥 教授

Advisor：Professor Jung-Hwan Ho

研究生：任炳沃

Graduate Student：Byoung-Ok Im

中華民國 103 年 1 月

January 2013

中國文化大學

韓國語文學研究所

碩士學位論文

韓·台喪葬禮比較研究

研究生：任炳沃

經考試合格特此證明

口試委員：

陳寧寧

游娟銀

扈貞煥

指導教授：

扈貞煥

所長：

扈貞煥

口試日期：中華民國 103 年 1 月 15 日

中文摘要

本論文以「韓國、台灣喪葬禮儀比較」為中心進行研究。以儒家為中心的中華文化圈，其影響力不僅包括韓國、台灣，也遍及到整個東南亞。韓國自高麗末期吸收朱子學為中心的儒家文化，到了朝鮮王朝更將之運用為統治理念，影響了韓國人的生活方式，造就了喪葬儀禮的典型。另一方面，中國廣東與福建居民，大量遷移台灣，和原住民融合，成了以漢族為中心的移民社會，儒家文化附著於基本生活的深層，形成台灣習俗基幹，原始時候開始隨著民族生存環境、宗教而變遷、增添的中華文化經過長時間的流轉過程，在各國生活習俗呈現出部份不同的面貌。尤其在生活習俗中喪葬儀禮這一部份；生老病死無從先行體驗的儀禮，依據當事人的遺族意志而決定，是人生中的重大事件，除了孝道觀念之外，因對死亡認知而有所不同。

韓國和台灣同時期經歷日本殖民統治，喪葬儀禮也因日本的高壓政策而有所改變，之後由農業進入產業社會、都市化、小家庭制的變遷之中，更以個人信仰風俗的不同而有所改變、省略縮小規模；代代傳承而來的喪葬儀禮，其中追思祖先和善盡孝道的意義顯然衰退式微，幾乎以簡樸效率化為原則，單純處理遺體事務為主，本論文除了文獻資料之外，也以實地調查的數據為中心進行研究。

關鍵字：韓國喪葬禮儀、臺灣喪葬禮儀、韓·臺喪葬禮儀比較

목차

I. 서론	1
1.1 연구 동기와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3 선행연구 검토	9
II. 생명관	14
2.1 통과의례 속의 상장례	14
2.2 죽음과 생명관	15
2.3 상장례의 의미	22
III. 한국 상장례	29
3.1 한국 상장례 변천 과정	29
3.2 한국 전통 상장례 절차.....	44
3.3 한국 상장례 정책	90
3.4 제기되는 문제점	102
IV. 대만 상장례	107
4.1 대만 상장례 변천 과정	107
4.2 대만 전통 상장례 절차	121

4.3 대만 상장례 정책	175
4.4 제기되는 문제점	183
V. 결론	187
참고문헌	199
Abstract	203



표 목차

표 3-1) 사실묘지 면적 제한의 변화(시행령)	42
표 4-1) 대만 수의(壽衣) 기준	127
표 4-2) 대만 상장례 시 복기와 해당 가족 구분	137
표 4-3) 做七與做旬之王官及天數對照表	152
표 4-4) 牲禮	172
표 4-5) 菜碗	173
표 4-6) 麵食 및 甜食	173
표 4-7) 과일	173
표 4-8) 茶酒	173
표 4-9) 冥紙(金·銀紙錢)	174
표 4-10) 香	174





I. 서론

1.1 연구 동기와 목적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는 한국과 고대중국으로부터 유교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민속문화가 정착되어 온 대만은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의 정치에 이르기까지 예(禮)를 기본으로 하여 발달되어 왔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은 고대 선사시대의 단군으로부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왔으나 이를 이겨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문화찬탈 정치에 의해 수많은 고유 문화는 침체되거나 사라지고 일본식에 의한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자주독립국가로서 오늘에 이르면서 일제식민지 기간에 잃어버린 우리 문화를 창조해 왔고, 그 독특한 문화의 저변에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뿌리깊은 효 사상을 담고 있다. 물론 효는 고려 말 주자학이 유입되면서 조선시대의 통치기반으로 삼은 유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현대 가정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만 역사는 크게 16세기 이전시기, 네덜란드 식민지시기(1624~1662), 정씨 왕조시기(1662~1683), 청나라시기(1684~1894), 일본제국 식민지시기(1895~1945), 중화민국시기(1945~현재)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만은 구석기시대 말기에 이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발견된 유물은 없고, 신석기시대에 사람이 거주하였다는 증거는 명확한 편으로 2011년 12월 마조우(馬祖)섬 인근에서 7500~7900년 전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석기 시대의 인간 유골이 발견되었다. 발굴에 참여한 한 대만 고고학자는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채 발굴된 이 남성 유골은 대만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

골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밝혔다.¹ 한편 연구원들은 유골의 주인공이 어떤 인종인지를 밝혀 내기 위해 DNA 추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석기 시대의 대부분의 유물은 말레이 계 원주민이 남긴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역사문헌상 대만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624년 네덜란드 상인들이 대만섬에 진출하여 점거하면서부터이다. 1624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대만 남부에 요새와 현재의 타이난(台南)지역에 안평이라는 소규모 거주지를 건설하고, 1642년부터 동인도회사를 통해 대만을 직접 관할하고 총통을 임명하여 중국인 및 토착인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였다. 즉 대만의 1차 식민지 통치가 시작 된 것이다. 1644년 만주족의 명(明)나라 침입으로 중국대륙이 혼란에 휩싸이자, 중국 복건성 남부와 광둥성 동부지역의 많은 중국인들이 대만으로 이주하였고, 정성공(鄭成功)은 1661년 청나라 군대와 9개월간의 싸움 끝에 대만으로 쫓겨와, 대만섬을 점령하고 있던 네덜란드인 들을 공격하여 1662년 2월 1일 네덜란드 세력의 항복을 받아내 정씨정권(鄭氏政權)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정성공의 손자에게 넘어가면서 내부분열이 일어났고, 청 정부는 뇌물을 이용해 이러한 내부분열을 심화시켜 결국 정성공으로부터 시작한 정씨 일가의 3대에 이은 대만통치는 21년 만인 1683년 청나라 군대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된다. 토착 민족은 끊임없이 내륙 산간 지역으로 밀려나 수렵생활을 하거나 한족에 동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점차 생활의 기반을 잃어갔다. 청나라 통치를 받은 지 200여년이 흘러간 1894년 갑오년, 대만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하면서 패배한 청은 물러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 식민지 통치 50년 동안 일본은 대만을 일본 본토에 대한 식량 공급기지 및 일본 공산품의 소비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대만 주민들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 맞서 지속적으로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895년에는 대만 민주국의 수립을 선

¹ MK NEWS 2012,4,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10324>

포하는 등 식민지배 초기에는 일제에 대한 조직적 무장투쟁에 나섰으나, 1915년 타파니 사건² 이후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항일 무장투쟁은 약화되었고 점점 순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1945년 8월 일본이 대만을 연합국에 양도한 후, 국민당은 대만에 정부군을 파견하여 인수작업을 실시하였고, 1949년 5월에는 대만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30만명의 국민당 군대를 대만에 진주시켰다. 같은 해 10월에는 광둥(廣東) 등지의 대규모 접전에서 국민당이 공산군에게 패배하자, 12월부터 타이완으로 중화민국의 정부를 완전히 이전하였다. 그 이후 1995년까지는 국민당 일당독재 정부가 계속되었으나, 1996년 3월 23일 국민의 직접선거로 총통을 선출함으로써, 대만은 국민당 일당 독재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 2000년 총통 선거에서는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엔(陳水扁)이 총통에 선출됨으로써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야당이 된 국민당은 2008년 선거에서 국민당 후보인 마잉지오우(馬英九)가 당선되어 총통에 취임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³

이런 역사를 지닌 대만의 문화는 고대중국의 통치철학과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중원의 대표성을 띤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주(周)나라부터 역대나라의 통치철학에 따라 때로는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간편하게 개혁이 반복된 각종 민족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다양하며 또한 복잡하고 다원화된 각종 가치관과 세속의 변화로 진정한 문화의 본질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청대에 광둥지역과 복건성의 한족이 대거 대만으로 이주해 오면서 기존에 있던 원주민과 함께 이루어진 이민사회인 대만은 주나라의 주례를 근간으로 유교사상이 통치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대만은 17세기에는 네덜란

² 華夏經緯網, 2012-06-19 14:22:09, http://hk.huaxia.com/lasd/twzlk/zsjs/2012/06/2894893_3.html

1915年 余清芳等人이 오늘날 台南市의 “西來庵”이라 불리는 한 王爺廟에서 집회를 갖고 대규모 항일 운동을 주도한 사건으로 西來庵事件이라고도 함

³ <http://cafe.naver.com/002go/12922>

드 식민지에 이어 정성공(鄭成功)과 청나라의 통치로, 20 세기말에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황민화운동정책에 의한 영향을 받았고, 해방 이후에는 국민당의 패배로 들어온 국군과 함께 중국 각지의 여러 지방의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외부의 침략으로 접철된 역사의 공통점을 지닌 한국과 대만의 문화는 유교를 근간으로 하면서 각각의 종족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0 여년전 필자가 처음 대만에 왔을 때 한동안 이국의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은 바로 동일한 한자권 문화국가이고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의 다른 문화가운데 특별한 인상을 남겼던 것은 바로 묘지문화였다. 한국에서는 재력가나 세력가 혹은 가문에 따라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두가 획일적으로 둥근 형태의 봉분을 가진 묘지가 일반적이고, 국립묘지나 공동묘지에서도 묘지의 크기가 제한 되어 평장을 한 가운데 작은 비석을 세워 죽은이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묘지가 마치 사람이 사는 집과 동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고, 낮은 야산에는 마치 작은 아파트촌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였다. 외형은 분명 집인데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고 그런 반면에 치장이 상당히 화려한 모습이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동네 가까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곳에서 먼 곳에 매장을 해야 하고, 공원묘지나 공동묘지도 시내의 외곽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만은 촌락의 바로 옆에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사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대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집이 없어도 관계가 없는데 죽어서 집이 없으면 귀신이 돌아다녀서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어서는 반드시 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죽어서 편안한 집을 짓고 그 속에 안주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많아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즉 관재비(棺材費)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같은 유교 문화를 토대로 하는 한국과 대만의 장례문화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이 농후한 한·대만의 통과의례는 고대중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시간을 거쳐 변천되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통과의례는 각각 민족의 삶의 환경과 종교의 성향에 따라 변천 되는데, 한국과 대만은 같은 유교권 문화로서 여러 분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과의례 중 상장례의례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한 인생의 생을 갈무리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의례는 본인이 중심이 되지만 상장례의례는 본인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기 때문이며,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명론에 대한 관념은 물론 효도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례를 통해서도 양국간의 문화의 차이를 발견 할 수 있겠지만 종족과 지역 그리고 종교와 실생활 환경의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른 자기 고유의 방법을 보존해 가고 있는 상장례 의례가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 들어 한·대만의 상장례의례는 동일한 시기의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음으로써 일본의 문화말살정책과 황민국정책으로 전통적인 예(禮)를 나타내지 못한 가운데 제도적으로 변천 되어왔다. 해방 이후에는 서구의 간편한 의례가 도입되고 전반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천에 따라 개선 발전되거나 혹은 생략 축소되어 가고 있다. 예전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상장례 의례는 병원이나 전문 장의시설을 갖춘 곳에서 이루어 지고, 상기의 단축에 따라 예(禮)로써 죽은 이를 보내던 전통방식과 달리 단순한 유체처리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기능에 한정되고 있다. 그런 반면 기독교, 천

주교 등의 전래로 인해 전통적인 방법에 각 종교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혼합되어 조상 대대로 전승되어 오던 전통 상장례의 깊은 의미가 점점 쇠퇴하는 가운데 일부 새로운 세대는 전통문화를 배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장례 의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속에 동일한 유교권 문화이지만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한·대만의 상장례 의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대만의 사회구조와 민족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각 국가의 전통 상장례 의례의 장점은 전승하고,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한·대만의 상장례 문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러나 양국간의 상장례 문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대만 양국이 유교 문화권이라는 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달라 유교문화가 도입된 시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단군왕검(BC2333)으로부터 오늘날까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유교가 도입된 것은 13 세기 말의 고려시대 충렬왕때 원에서 전해진 주자학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국가교학으로 채용되고, 16 세기에는 이 퇴계(이황), 이 율곡(이이)의 2 대 유가(儒家)가 나타나서 조선인의 유교로서 뿌리를 내렸다.⁴ 반면에 대만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은 1624 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대만에 들어온 때로부터이고, 이후 청대에 중국의 한족이 대거 이주해 와서 원주민과 통합되어 이루어진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실제 유교가 전래된 것은 17 세기 중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양국간 상장례 문화 비교는 17 세기 이후부터 일제 식민지시대와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을 중심으로 한다.

⁴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소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 검토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구서로 한국의 고전 자료는 한국고전총서⁵에서 『사계전서(沙溪全書)』⁶의 「가례집람(家禮輯覽)」⁷과 「상례비요(喪禮備要)」⁸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2008년 10월 4일 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만의 고전자료는 「가례회통(家禮會通)」, 관련 법령은 민국(民國) 101년 1월의 내정부 「국민의례범례(國民儀禮範例)」와 「빈장관리조례(殯葬管理條例)」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외에 단행본으로 장철수의 『한국의 관혼상제』 외 관련 논문과 대만 李秀娥의 『台灣傳統生命禮儀』, 中國五術教育協會의 『台灣民間殯葬禮俗彙編』외 관련 논문을 참조 하였으며 본 논문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 1 장 서론부분에서는 연구동기와 목적, 연구방법 및 제한사항과 선행연구를 검토 한다.

제 2 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정의와 각 종교별 생명관을 조명하고 통과의례 중

⁵ 김장생 저 정선용 역, 『국역사계전서 27,28,29,30』, 한국고전번역원, 2004. 이 책의 국역대본은 광산 김씨(光山金氏) 문중에서 간행한 《사계·신독재전서(沙溪愼獨齋全書)》소재 사계전서(沙溪全書)로 하였다.

⁶ 조선 중기의 학자 김장생(金長生)의 시문집으로 원래 『사계선생유고(沙溪先生遺稿)』라는 이름으로 2회에 걸쳐 간행된 바 있다. 초간본은 1685년(숙종 11) 왕명에 의해 그의 문인 송시열(宋時烈)이 편집하여 1687년 교서관(敎書館)에서 간행했고, 재간본은 1792년(정조 16) 후손인 김희(金熹) 등이 이전의 판본을 개각하여 간행하였다. 이 해제본은 1923년 후손들이 저자의 저술을 총망라하여 간행한 것이다. 권두에 김수항(金壽恒)이 초간본 간행 시에 쓴 구서(舊序)가 있다.

⁷ 조선 중기의 학자 김장생(金長生)이 1685년에 『가례』를 증보, 해설한 예서 경전해설서로서 총 10권 6책으로 되어 있다. 저자는 『가례』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절의 내력과 후세의 여러 해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의 만년에 이를 완성하게 되었다. 1685년(숙종 11)에 송시열(宋時烈)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노력으로 간행되었다.

⁸ 조선 중기의 학자 신의경(申義慶)이 1648년 찬술한 상례(喪禮) 관계의 초보적인 지침서로서 원래는 1권 1책의 분량이었으나 친구인 김장생이 1620년(광해군 12) 여러 대목을 증보하고, 아울러 시속의 예제도 참고로 첨부하여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고 서문을 붙여서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그 뒤 김집(金集)이 이를 다시 교정하여 1648년(인조 26) 2권 1책으로 간행하면서 다시 서문을 붙였다. 『가례』의 상례관계의 본문을 중심으로, 『예경(禮經)』과 여러 학자들의 이에 관한 해석을 참고, 유취하여 초상(初喪)에서 장제(葬祭)에 이르는 모든 예절을 요령 있게 찬술한 것으로 사당(祠堂), 신주(神主), 의금(衣衾), 최질(衰絰), 오복제(五服制), 상구(喪具), 발인(發靚), 성분(成墳), 입비(立碑), 수조(受弔), 진찬(進饌) 등의 도설(圖說)을 책 머리에 실었고 책 끝에는 1621년에 쓴 신흙(申欽)의 발문이 있다.

상장례에 관한 부분을 논한다.

제 3 장에서는 한국 상장례에 관한 내용을 1). 한국 상장례의 시대적 변천과정, 2). 한국 전통 상장례 절차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현대 상장례의 절차와 내용을 기준⁹으로 고례 상장례에서의 절차와 내용¹⁰의 차이점 비교, 3).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례 관련 정책, 4).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 한국 상장례 문제점을 포함한다.

제 4 장에서는 대만 상장례 내용으로 1). 청 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대만 상장례의 변천 과정, 2). 현재 일반적으로 대만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통 상장례 절차, 3).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례 관련 정책, 4). 각계에서 제기 되는 대만 상장례 문제점을 거론한다.

제 5 장 결론에서는 한국과 대만 양국간의 상장례 의례의 변천 과정과 특징 및 상장례 관련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의 상장례 문화 중에서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하여 계속 전승하여야 할 부분과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 가능부분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한·대만의 상장례를 비교한다. 상장례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대상인 죽은 자가 있어야 하는데 죽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로 예측하지 못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노환으로 이미 가족들이 어느 정도 죽음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죽음도 있다. 노인이 수(壽)를 다한 죽음은 일반 장례절차를 거치지만, 너무 젊거나 불의의 사고로 예측하지 못한 죽음, 신체기증 등으로 장례 할 시체가 없는 경우는 단지 의식만 치를 뿐 유체처리 등은 생략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계사항으로 첫째,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죽음을 배제하고 수(壽)를 다하여 병으로 죽게 되는 정상적인 죽음에 제한한다.

⁹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 참조 (<http://www.ehaneul.go.kr/contentsS.do?id=M010202003> 2013,11,30)

¹⁰ 김장생 저 정선용 역, 상계서

둘째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이가 일어난 현대를 기준으로 하였다. 과거역사의 상장례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에 국한하고, 동일한 시기에 일본통치의 영향을 받은 한국과 대만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천되고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형성된 현대 상장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셋째, 모든 의례의 기본은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국과 대만에 형성되어 있는 많은 종교는 서로 다른 형태의 의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의례로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어떤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통의례라 할 수 있는 유교에 기반을 둔 상장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넷째, 한국의 상장례 의례에 사용하는 각종 전문용어가 고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순수한 한글표기로 했을 때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필자의 판단에 따라 순수 한글 표기로 정확한 의미 전달이 부족하거나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전문용어는 한글(漢字) 표기형태를 취했다. 역시 대만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의 한글번역이 의미 전달이 쉽지 않거나 간단한 용어로 번역이 안된 경우는 중문표기를 그대로 하여 한자(漢字)로 표기했다.

다섯째, 본 논문에서 한·대만 양국의 비교대상은 어떤 특정지역이나 가문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양 국가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대만의 내정부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1.3 선행연구 검토

한국과 대만의 상장례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죽음에 대해 금기 시 하던 풍조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가 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1990년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연구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 상장례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정민자는 노인복지 중심으로 「한국의 상장

례에 관한 연구」¹¹ 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로서의 상장례를 한국의 상장례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개략적인 해외 상장례 문화를 언급한 이후 한국 장례의 개선점을 제안 하였다. 현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장례가 의식의 간소화에 따른 전통장례의 본질이 왜곡되고, 묘지와 장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자택에서 치르던 장례가 병원과 전문장례식장에서 이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통 상장례의 이해부족, 시신의 비위생적 처리, 장례 및 묘지 서비스의 전문인력 부족, 매장위주의 장묘관습을 지적한 뒤, 발전방향으로 장례, 장묘 전문 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새로운 학문으로의 발전, 경영의 합리화 방안 모색 등을 제안 하였다.

황인호는 「한국 기독교 상장례문화 연구」¹² 를 통해 한국 상장례의 변화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기독교적인 상장례의 변화와 한국 기독교의 상장례 현실을 조명한 다음 한국 기독교 상장례 문화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독교가 성장 이후 예배순서와 동일한 형태의 장례의식의 정형화된 절차를 마련하여¹³ 시행은 하고 있지만 예식과 예식 중간의 대부분의 절차는 전통 유교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죽음의 사전 준비교육의 필요성, 호스피스 사역자 양성화, 교회내의 장례위원회 조직과 활성화, 전통 수의를 평상복으로 대체, 기독교 전문 장례식장 설립 및 교회 수양관 및 묘지를 자연장 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송현동은 「근대 이후 상장례 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¹⁴ 을 통해 근대 이후의 상례 정책과 장례 정책의 변화 과정을 조명하였다. 상장례 정책에

¹¹ 정민자, 「한국의 상장례문화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¹² 황인호, 「한국기독교 상장례 문화 연구-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¹³ 1924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13차 총회에서 "상례식서"를 채택

출판식; 개회-찬송-기도-성경- 설교-행술(죽은이의 약력 소개)-조사-찬송-축복-폐회

하관식; 찬송-기도-성경-축사(위탁의 말씀)-고별기도-찬송-축복

상기 논문에서 재인용

¹⁴ 송현동, 「근대 이후 상장례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민족학 제 14호』, 한국민속학회, 2002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허례허식 금지와 간소화를 명분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된 한국의 상장례 정책에 따라 의례의 의미가 상실되었고, 상장례 정책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각종 제한규정에 예외사항을 두어 불평등하게 적용함으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길현섭은 「우리나라 국립묘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¹⁵ 를 통해 국립묘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립묘지제도 및 운영에 관한 분석을 통해 안장제도, 관리, 운영측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으로 안장 차등문제 개선과 수급방안, 운영적 측면에서 접근의 편리성, 공원화,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대만의 상장례에 관해서는 呂應鐘은 「殯葬文化變遷與殯葬改革」¹⁶ 에서 일반 대만 장례의 연원과 특징을 살펴보고 서구 국가 장례와의 차이점, 각 종교별 장례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이행되고 있는 대만 상장례가 엄숙하고 죽은 이에 대한 추모에 역점을 두기보다 맹신적인 미신의 영향과 외적 요인 즉 경제조건, 비교심리, 보상심리 등으로 인해 치러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신타파와 厚養薄葬의 필요성,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적극적인 자연장 유도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타이베이 시정부의 示範禮堂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였다.

楊國柱는 「臺灣地區墓地管理制度之研究」¹⁷ 에서 타국의 묘지관리 및 공원화에 대해 고찰하고 대만의 사설묘지 난립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원묘지의 활성화와 사설묘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화장유도를 위한 시설 개선 및 화장비용 감면, 「국민의례범례」를 추진하여 喪葬禮儀 개선, 묘지관리 전문부서 설치를 제안 하였고, 吳樹欉도 「臺灣地區墓地計劃與管理之研究」¹⁸ 에서 묘

¹⁵ 길현섭, 「우리나라국립묘지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¹⁶ 呂應鐘, 「殯葬文化變遷與殯葬改革」, 新客星站,, 2013, <http://www.thinkerstar.com/lu/essays/funeral/reform.html>

¹⁷ 楊國柱, 「臺灣地區墓地管理制度之研究」, 國立政治大學地政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90

¹⁸ 吳樹欉, 「臺灣地區墓地計劃與管理之研究」, 國立政治大學地政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89

지관리 정책과 실제 이행 상황을 조사하여 적극적인 공원묘지 조성, 전면적인 묘지순환제도를 통한 토지 이용률 증대, 묘지 규모 축소, 정부차원의 묘지계획 개발 및 관리, 난립하는 사설묘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였다.

劉仲冬 외는 2005년 내정부의 「我國婚喪儀式性別意識之檢討」¹⁹에서 혼·상례에 있어 대만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남녀 평등사상은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대만은 고례의 의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유산 분배 및 상례에 치러지는 모든 의식에서 부권사회인 남성위주로 진행되면서 남녀가 구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나 현대에 와서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배양되면서 평등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과 대만의 상장례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자료로는 많지 않았다. 崔昌源은 「中韓社會文化中通過儀禮之比較研究」²⁰에서 중국과 대만, 한국의 전통 상장례 의례에 관한 고대 문헌 검토와 실제 민중의 이행 상황을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하여 구조와 특징 등을 논한 다음 한국과 대만 상장례의 역사적인 배경, 구조와 특징 등을 비교하였다. 기본적으로 상장례 의례는 각 국가의 민족성격과 독특한 문화에 따라 이행이 되며 시신의 처리, 죽은 이의 영혼의 처리, 전체적인 죽은 이 처리 이후 생자의 행위로 구분하였다. 또한 한국과 대만의 상장례의 출발점은 동일한 유교를 기반으로 그 위에 각종 종교의 의례가 덧입혀지면서 일부 변형되었으나 출발점이 기본적으로 같아 기본관념은 동일하나 단지 표현함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과 대만에서 각각 해당 국가의 상장례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각각의 종교별 상장례에 관한 연구자료, 상례 혹은 장례의 특정 의례에 관한 연구, 국립묘지를 포함한 묘지제도에 관한 연구, 각 국가의 상정례정책에 관한 연구

¹⁹ 劉仲冬 外, 「我國婚喪儀式性別意識之檢討」內政部報告, 2005,

²⁰ 崔昌源, 「中韓社會文化中通過儀禮之比較研究-以台灣與韓國喪葬儀禮結構變遷為例」, 臺灣大學校博士學位論文, 民國 85 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상장례 의례를 동시에 비교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중문으로 작성된 최창원(崔昌源)의 1996 년 박사 학위논문이 유일했다. 따라서 한글로 작성된 본 연구는 대만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물론 대만에서 한국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생명관

2.1 통과 의례 속의 상장례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과정을 지날 때마다 치르는 일정한 격식, 즉 통과 의례(通過儀禮)를 만들어 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단계를 거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생명을 얻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것, 서로 다른 가정과 환경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결혼하여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삶을 마치고 죽음에 이르는 단계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는 관혼상제만 해당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백일과 돌, 생일, 회갑, 진갑, 고희 등을 포함시켜 인생의례가 된다.

통상 이러한 단계를 통과 의례라고 하며, 이런 통과 의례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 민속학자인 반 겐넵(Van Gennep 1873~1959)으로 통과 의례를 구분하여 분리-전이-재통합으로의 과정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²¹ 특히 한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실시되는 상장 의례는 최후의 사회이탈 의식으로 인생행로의 종결을 의미하며, 인간의 죽음이라는 엄숙한 사태에 직면하여 그 죽음을 정중히 모시는 절차로 분리-전이-재통합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통과 의례와 달리 아래와 같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상장례는 이승과 저승 혹은 현세와 래세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의 이동으로 생존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 세계로의 진입이고,

²¹ 빅터 터너 지음/이기우·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1996, pp39~41. 반겐넵의 『통과의례』(Rites de Passage)에서 의례의 변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한다. 첫째, 분리단계에서는 제의적 주체들을 그 이전에 그들이 속해 있던 사회층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들을 포함한다. 둘째,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희미하게 하고 소실시키는 단계로서 획일성, 구조적 불가시성, 익명성의 특징이 나타나며 '가장자리' 혹은 '문지방'이라고 부르는 중간단계를 의미한다. 셋째, 통합단계는 제의적 주체들이 전체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분명한 위치로 되돌아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현상들과 행동들을 포함한다.

살아 있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세계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더 더욱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겨지는 가운데 시행되고 있다. 물론 출생의 경우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서 이세상에 태어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이지만 이는 출생 이후의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성인이 되거나 결혼 등은 모두가 동일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지 성격만이 변경되는 경우이다.

둘째, 다른 통과의례는 모두 당사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상장례는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정해진 격식과 다른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의례의 대상은 이미 생을 마감한 죽은 이 이고 이의 시행은 유족들 즉 제 3 자가 시행한다.

2.2 죽음과 생명관

2.2.1 죽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위해 달려간다고 할 수 있겠다. 이름 없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작은 미생물부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으며 거스를 수 없다. 따라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삶과 죽음이었을 것이다. 삶의 안정은 바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났을 때 극대화되고 인류는 오래 전부터 이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낳은 많은 영웅이나 권력자들이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약을 찾아 다니고 수많은 불사(不死)의 신화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겨낸 자가 없었으며 빈부귀천에 상관 없이 죽어서 인류가 만든 최초의 건축물인 무덤의 주인이 되었다.

의학적으로 죽음이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멎으며, 뇌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정의한다. 스페츨러 박사는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심장이 정지되고 뇌의 기능

이 정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기준으로 임사실험을 했다. 펠레이놀즈 사례를 통해 사람이 죽게 되면 자기 몸에서 통겨져 나가는 유체이탈 혹은 초능력현상이 나타나서 작은 불빛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이 작은 불빛을 따라가서 이미 먼저 돌아가신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며, 수술대 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 마음과 뇌가 분리됨을 암시한다는 작은 결론을 유추해 냈고, 시각장애인의 시험을 통해서도 육체적으로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빛을 볼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부르스 그레이슨(Burce Graysen) 정신과 교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시간의 흐름이 아주 빠르고 선명하여 사고과정이 다르고, 우주상태에 혼자 있거나 안정적인 모습의 감정상태 변화가 생기며, 심리적인 요소로 육체에서 통겨져 나가는 유체이탈을 통해 과거 또는 미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초자연적이거나 지구와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초월적인 요소를 갖는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사람의 죽음 뒤에도 삶이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다.²²

이러한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정신병리학자 퀴블러 로스(E.Kuebler-Ross)는 불치병환자 200 여명을 대상으로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심층연구를 한 결과,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죽음에 임박했다는 사실 앞에서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이는 통상 환자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일찍 환자에게 통보되었을 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가지게 되는 분노의 단계로서 자신이 죽어감을 인정하고 분노와 사나움, 시샘과 원망의 감정을 나타내며, 세 번째로는 분노나 거부의 단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후에 초월적인 신앙의 힘이나 의사에게 나를 살려 주면 어떻게 해 주겠다는 조건의 타협을 한다고 한다. 다음에는 더 이상 타협이나 부정, 분노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²² 2013,3,25 "BBC 사후체험-난 죽음을 보았다"

우울해지는 경향을 보인 다음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순응하면서 마지막 휴식기간을 가지면서 최후에 대한 기대감 속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 이때는 굳이 가족이 말을 시키는 것보다 묵묵히 지켜보면서 손짓이나 눈짓과 같은 무언의 대화를 통해 임종 시에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함께 있음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죽음의 시간이 결코 공포나 전율의 사건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모든 환자에게서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뒤바뀌거나 생략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임종에 임박하면 길고 짧든지 간에 사전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유족들은 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고 가족이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²³ 인간이 생명이 다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한국의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병으로 오래 앓지 않고, 중병 없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다가, 자손이나 배우자보다 먼저, 자손이 다 잘사는 것을 보고, 모든 자손들 앞에서 자연사하는 적절한 수명을 좋은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다.²⁴

인간은 죽음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죽음을 신성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혐오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삶의 공간을 이승, 죽음의 공간은 저승이라고 한다. 저승은 불안감을 주는 공간이면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저승의 세계를 질서적으로 정립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건함으로써 이승과 저승의 분리된 세계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두 세계를 연결해 주는 제사의식을 통해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고리의 역할을 해 왔다.

²³ 퀴블러 로스 저, 성염 역, 『인간의 죽음』, 분도출판사, 1997, pp58~156.

²⁴ 한나영 외,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논문집』, 2002, pp769~777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표인주는 공간인식 측면에서 이승과 저승이라는 다른 공간인식의 체계로 죽음관이라는 용어를 취하면서, 죽음관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 공간관과,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인격적 개체의 공간이동에 따른 의례적 질서 및 사후세계의 질서관을 포함한 세계관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⁵ 즉 인간이 세계를 보는 질서관을 세계관이라고 하고 이 세계관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흔히 신화나 의례, 관습과 같은 기타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실제의 생활경험을 토대로 표현된 이승과, 그것과 분리되고 대립되는 저승으로 나누어 정립된 공간인식의 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인식을 토대로 하면 인간이 죽어서 가는 곳은 저승이고 또한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의 공간도 저승이다. 따라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저승과 분리되면서 이승과의 통합이고, 죽음은 이승과의 분리가면서 다시 저승과 통합되는 과정으로 결코 분리 될 수 없고,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서로 이어져 있으나 하나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은 현상에 대한 세계관적인 이해의 표현일 뿐 다른 세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례의 의례 중 초혼이라는 의례를 통해 죽은 이의 옷을 지붕 위에 던져 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발인 전날까지 기다려도 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완전한 죽음으로 판단하여 이승과 분리되는 존재로 인정하고, 썩 물을 사용하여 목욕을 시켜 염습을 하는 것은 이승적 존재를 씻겨내고 저승적 존재로 변신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화의례이며 저승에서도 삶을 계속 영위하라는 취지에서 죽은이가 사용한 이승의 물건을 매장해 준다는지, 혹은 죽은 이의 신분을 밝혀주기 위해 생전에 사용한 물건을 매장해 주고, 오늘날에도 신분을 밝혀 주기 위해 명정으로 관 위에 덮어 주는 사례를 들고 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육과 혼이 분리되어 혼을 따로 모시는데 장례를 마치기 전까지는 혼백으로서 혼을 모시다가 매장이 끝나면

²⁵ 표인주, 「호남지역 상장례와 구비문학에 나타난 죽음관」, 『민속놀이, 축제, 세시풍속, 통과의례』, 민속원, 2008, pp379~391

신주로 바꾸고 탈상이 지나면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위치 변경을 하는 일련의 장례의식이 모두 공간인식의 체계로 보고 있다.

2.2.2 종교별 생명관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탄생된 종교는 추구하는 기본사상에 따라 죽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고대시대부터 자연스럽게 자연숭배를 토대로 가장 먼저 종교형태를 이루어 한국에 자리잡은 무속 신앙은 영계의 존재를 인정함과 더불어 한국인의 조상숭배 기초가 되었으며, 영계와 인간 사이의 중재역할자로 무당이 출현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돌아간다는 순환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내세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애매하지만 자연순환의 근원지이며 인간 생명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 죽음은 삶과 완전 단절되고 저승은 죽은이가 죽은 사람의 육체와 혼을 모두 저승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승에는 죽은 사람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유교는 춘추시대(BC 770-430) 말기에 공자가 체계화 한 사상인 유학을 종교적 관점에서 이르는 말로 수천 년 동안 중국, 한국, 일본을 지배한 사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는 고려 충렬왕 이후 부흥하여 한자문화권의 매체로 지식계급의 정신적 매개체 역할을 했음은 물론 정치적 파동에 따른 사화, 당파의 형성으로 고질적 당쟁의 터전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조선시대의 승유억불정책에 따라 정치, 경제 등등의 다각도에서 오늘날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조선왕조의 성리학 지도이념을 표방한 가례의 전례는 권선징악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그 본질이 도덕적인 가치규범과 유교적인 사회생활의 규범통제에 악용되기도 하였다. 즉 조선시대 가례의 강요로 권위적인 가부장 중심의 효와 충의 윤리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신흥국가 토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러한 유교는 인간을 기와 정선된 물질적인 힘의 결합체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힘은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하늘에 속한 생명력은 하늘로 올라가고, 대지에 속한 몸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으로 본다. 이러한 죽음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우주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사와 존재의 차이는 있지만 생이 계속된다는 계세사상에 힘입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엄숙하게 해야 하고 제사를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즉 죽음이 단절이 아니고 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죽음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하늘의 순리로 보고 받아 들이며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효 사상이고, 이러한 효 사상은 바로 조상숭배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불교는 최초의 세계 종교로 전래되어 1500 여년간 한국의 종교 정설을 지배하면서 특히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치세원리였으며 국교였다. 불교에서는 탄생과 죽음은 실체가 없고 인연에 의해 생겼다 사라지는 포말과 같다고 한다. 불교도는 죽음을 왕생(往生)이라 하며 원래의 생명형태가 사라지고 다른 생명의 형태 즉 사람이나 동물 혹은 곤충 등으로 다시 태어나는 육도윤회(六道輪廻)를 믿는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생전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다음 생명으로 태어나기까지 7 일에서 49 일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생명체로 변하지 못하거나 서방정도에 가지 못하면 18 층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매 7 일마다 49 일까지 주칠(做七) 의식을 통해 죽은 영혼이 다른 생명체로 거듭나거나 서방정도에 가도록 돕는다.²⁶ 또한 더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염원하기 때문에 죽음을 해탈(解脫)이라고도 하고, 공(空)이라고 하며, 세계관은 인간 중심으로 전개되며 존재의 특질, 무아(無我), 무상(無常), 고(苦)는 인생관의 출발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드는 것은 영원한 안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후세계는 광명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죽음에

²⁶ 呂應鐘, 위 논문, p9.

대한 공포와 슬픔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러한 세계의 실현이 불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독교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의 반역적이고 저항한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스올에 들어간다 하고, 예수가 탄생한 신약에서는 예수의 부활로 죽음의 세력은 깨어졌다고 본다. 즉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을 얻으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 신학적인 의미로 죽음은 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 육체로부터 영원히 떠난 것이고, 율법이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 도구가 되었으며, 죽음의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상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죽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즉 죽음이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정의한다.

도교는 도가(道家)를 연원으로 하고, 도가사상은 통상 노자(老子)와 장자(莊子)를 대표인물로 삼는다. 이들은 천하만물은 모두 최후에는 근원인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사에 관해 용감하게 대처하고 모든 것을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하며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것도 역시 자연의 법칙인 도(道)를 따라 간다는 자연론에 입각한다. 즉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대자연의 순환의 이치로 사람이 죽으면 대지의 한 구성요소인 진흙과 먼지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도교에서는 한 사람의 신체는 정(精), 기(氣), 신(神)으로 구성되어 있고, 몸통은 정(精)으로 사람의 형질을 나타내고, 기(氣)와 신(神)은 영혼에 속해 기(氣)가 모이면 신(神)이 되고, 기(氣)가 흩어지면 귀(鬼)가 된다. 영혼은 천지가 음양의 이원사상으로 되어 있으며 혼(魂)은 하늘에 속하고 양이며 정신을 지배하고, 백(魄)은 땅에 속하고 음이며 신체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혼과 백이 합하면 사는 것이고 혼과 백이 흩어지면 죽은 것으로 이해한다. 즉 사람과 천지만물은 하나라는 생각에서 혼백이 분산되면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가서 천지의 기로 복귀한다.

현재 한국이나 대만의 상장례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전통장례라 함은 유교를 기본 틀로 하여 각 종교에 따라 불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교리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2.3 상장례의 의미

2.3.1 상장례의 기능

옛 예서에 보면 “소인의 죽음은 육신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사(死)라 하고, 군자의 죽음은 도를 행함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종(終)이라 하는데, 사와 종의 중간을 택해 없어진다는 뜻인 상(喪)을 써서 상례라 한다.”고 했다. 상례란 사람의 죽음을 맞은 임종순간으로부터 주검(屍)을 갈무리해 땅에 묻고, 근친들이 슬픔으로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고 근신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상 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기간의 의식절차를 정한 예절이다. 이러한 상례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인 역할로 죽음을 확인한 후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호적 정리 및 상속실행이고, 둘째는 물리적 역할로 부패에 따른 유체처리 즉 매장이나 화장 등의 방법을 이용한 유체처리 역할이다. 셋째는 문화종교적인 역할로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전이와 죽은이와 생자간의 관계 재형성을 위한 종교의식, 장례예식 등 영혼의 처리이고, 넷째는 심리적인 역할로 죽은이 처리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와 비통함의 표출 및 위로 등을 포함한 비통의 처리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심리적 역할로 죽은 이의 영혼에 대한 진혼의례 및 부패에 따른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감정처리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²⁷

유교적 윤리 관념이 철저하였던 한국에서는 부모에 대하여 효도를 다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 생각 하였기에 부모에 대한 상장례는 최대한의 예를

²⁷ 정민자, 위 논문, pp32~33

갖추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주희(朱熹)의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의거한 상장례 절차는 돌아 가심부터 상복을 벗기까지 약 26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관례·혼례·상례·제례의 4 대 통과례 중 가장 중하게 여기는 의례이다.

상장례는 사람의 죽음을 맞고 그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 지내며, 근친들이 일 정기간 슬픔을 다해 죽은 이를 기리는 의식절차로 비록 생활여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옛날과 현대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상장례를 치름에 있어 요구되는 것은 엄숙하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이에 대한 마지막 모심이기 때문에 슬픔을 극진히 하며, 힘을 다해 장례를 치러야 하며, 특히 죽은 이의 자손은 자기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하는 자세로 근신 하는 가운데 치러져야 한다.

이러한 상장례의 원형은 주(周)대에 형성되었고 이후에 불교, 도교 및 각종 민간신앙사상이 결합하여 죽은 이의 삼별(三別: 신분고하, 혼인유무, 자손유무)에 따라 상례의 정도를 결정하였다.²⁸⁾

장례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등장한 의식행위로 시신을 처리하는 동시에, 죽음을 이해하기 위한 공동체의 종교적 활동이었다. 시신을 들판에 내버려두는 유기장에서 시작한 장례문화는 신앙이 발달하고 사회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오면서, 장례는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을 달래주고, 갑작스레 닥친 충격으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공동체의 통합과 유지라는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따라서 장례문화에는 각 시대의 신앙 형태, 정치적 지배구조, 외래와의 교류 등이 반영되어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해왔다.

미국의 인류학자 A. W. 멀레피트(A. W. Malefijt)는 자신의 저서인 『종교와 문화(Religion and Culture)』에서 죽은 자에 대한 의례를 사자의례(死者儀禮)

²⁸⁾ 包楨穎, 「한중전통통과의례문화비교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52

와 조상숭배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자의례에서는 장례절차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시신을 처리하는 데 머무른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죽은 자의 영혼을 육체와 분리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이승을 잊어버리고 저승에 머무르도록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자의례에서는 장례에 많은 돈을 들여 시신을 처리하는데, 이는 죽은자가 이승에서 쓰던 물건들을 빨리 없애고 그 이름이나 기억을 빨리 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반면에 조상숭배에서는 장례에서 일정한 격식과 절차를 통해 가급적 죽은 자와 산 자들을 연결 시키려고 한다. 죽은 자가 지녔던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함은 물론 그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또한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에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며, 그를 기념할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데 적잖은 시간과 돈을 들인다.

한국의 전통장례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시기에 따라, 때로는 사자의례의 모습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상숭배의 모습만 부각하기도 한 것 같다. 어떤 형태의 장례이든지 전통적인 장례는 주검을 처리하는 방법인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수반한다. 즉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의 변화를 일상의 평온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와 혈연의 가깝고 먼 정도에 따라 오복(五服)으로 구분되는 상복(喪服)제도가 있어 친족제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대만의 상장례에서도 영혼숭배와 조상숭배의 고대신앙이 융합되어 죽은 자도 영혼이 있다는 생각에서 상장례 의례는 시작된다. 영혼불사(靈魂不死)라는 믿음은 죽은 자에 대해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감정을 함께 나타낸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죽은 자의 귀혼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의 예를 다해 상장례를 치름으로서 죽은 이가 사후에도 계속적으로 후손들의 삶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유족은 친족의 죽음을 슬퍼하

면서 순서에 맞는 각종 예를 지키고, 각종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고, 매장 시에는 각종 명기와 부장품을 넣어준다. 이러한 의례활동을 통해 죽은 이로부터 생전의 잘못을 용서받는 한편 죽은 이에 대한 보은의 방법으로, 죽은 이의 영혼이 이세상에서 저승세계에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겨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에 이미 죽은 이가 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이의 영혼이 유족의 주변에 배회하며 유족에게 불리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귀귀음(引鬼歸陰)이라는 종교적 심리에서 출발된 것이다.²⁹

요즘에는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장례를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어 화장이나 자연장 등이 등장하였으나 인류 초기에는 유기장으로 시작하여 시체를 감추기 위해 버려진 시체 위에 나뭇가지 등을 덮었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땅속에 매장하는 무덤의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신앙과 정치가 생겨나고 사상과 철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개념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신처리의 주된 형태로 변해갔다.³⁰

2.3.2 종교별 상장례 특징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 장례 절차로는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 성복(成服), 조상(吊喪), 문상(聞喪), 치장(治葬), 천구(遷柩), 발인(發靱), 급묘(及墓), 반곡(反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喪), 대상(大喪), 담제(禫祭), 길제(吉祭) 등과 같이 여러 단계의 까다롭고 긴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절차는 제각기 엄격한 격식은 물론 일정한 의미까지 담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장례 절차는 대체로 고려 말 성리학의 함

²⁹ 呂應鐘, 위 논문, p2

³⁰ 박태호, 『장례의 역사』, 서해문집, 2006, p5

계 가례(家禮)가 유입된 다음, 조선 중기에 이르러 양반가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어 전통 상장례로 자리매김했으나 이후 일제시대에 제정 공포된 「의례준칙(儀禮準則)」과 1969년에 공포된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합리화’와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반강제적으로 굴절되고 축소되었다. 최근에는 도시의 핵가족화에 밀리고 상업주의에 오염, 퇴색되어 전통의례가 가지고 있던 조상숭배의 정신은 점차 희박해지고 단지 물리적 기능인 유체처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죽은이와 가족구성원의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상장례가 행해지고 있다. 현대에 행해지는 상장례를 종교 별로 전통 상장례와 차이 나는 특징적인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독교식 상장례는 채립과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의 뜻을 지닌 영결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운명부터 하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목사의 집례 하에 이루어 진다. 모든 절차에 곡을 하지 않고 음식을 차려 전(奠)을 올리지 않으며 우상숭배와 관련하여 절을 하지 않는 대신 찬송과 기도, 성경 낭독으로 그 예를 갖추고 있다.³¹ 전통장례에 비해서 간소하게 진행되는 기독교 장례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하며, 죽은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며, 성도에게는 이를 계기로 신앙에 대한 각성의 기회로 삼으며 또한 비 신자에게는 전도의 기회로 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³²

천주교는 의식과 절차를 성교예규(聖敎禮規)에 준하여 행한다. 환자가 임종이 가까워지면 성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신부가 도착하면 임종 전에 신부에게 고백성사(告白聖事)를 할 수 있도록 가족은 자리를 비워준다. 신부는 고백성사를 받고 나서 운명 시 행하는 종부성사(終傅聖事)를 하고 임종이 다가오면 임종경을 읽으며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숨을 거두면 가족들은 꿇어 앉아 연도(煉禱)

³¹ 정민자, 위 논문, p114

³² 황인호, 위 논문, p35

를 하고 염경이 끝날 때마다 시체에 성수를 뿌려준다. 본당 신부에게 연락하여 장례일정을 잡아 정해진 날에 본당으로 옮겨 연미사를 드리고 장지로 옮긴다. 천주교에서는 원칙적으로 화장을 금지하며 만약 화장을 하면 천주교 식 장례를 할 수 없고 교회묘지에 묻지 못한다.³³ 천주교에서는 사후세계를 천국, 연옥, 지옥으로 구분하며 사람이 죽으면 도착하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데 이를 연도라 한다. 이는 죽은 사람이 각자의 형벌에 따라 고통의 차이가 있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산사람의 연도로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이러한 연도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긴밀한 연대성을 형성해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희망의 감정과 함께 삶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불교는 왕생자가 불안해 하지 않고 불국(佛國)에 가도록 지속적인 염불을 해 주고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제사에 육류를 사용하지 않으며 가족들도 상기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화려한 부장품이나 무덤 축조가 불필요함은 물론 이승의 세계를 오염되고 더러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저승에 가기 위해서 이승의 형체를 없애는 방법의 예(禮), 즉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불교에서의 장례의례는 다비(荼毗)라 하고, 의식은 석문가례(釋門家禮)에 의하여 하는데 일반적인 절차는 전통 상장례 방법과 유사하지만 시신을 분구(焚口)에 넣고 다 탈때까지 염불을 한다. 시신이 다 타면 주례승이 유골을 받아 상주에게 주고, 상주가 쇠골한 후에 유골은 주례승이 있는 절에 봉안하고 제사를 지낸다. 장례 후에도 49 일제, 100 일제, 3 년상 제사를 절에서 치르는데 모든 제사는 염불(念佛) 위주이다.

도교는 대만의 전통종교라 할 수 있고 사람은 삼혼칠백(三魂七魄)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 있을 때는 함께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혼(魂)은 하늘로 가고 백(魄)은 땅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흩어져서 의지할 데

³³ 정민자, 위 논문 p116

없이 떠돌아 다니는 고훈(孤魂)이 되는데 도교의 제법(齊法)에 의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三跪九叩을 가장 공경스런 예로 보고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三柱香을 사용하며 크게 임종처리(목욕, 갱의, 차신 등), 입관, 拜飯, 作忌로 구분된다. 도교의 장례의식에서 도사는 명계(冥界)에 빠져서 떠도는 죽은 자의 영혼을 각종의식을 통해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업을 씻어주고 생명의 원천지인 하늘나라로 보내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³⁴

이슬람교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일시적이고, 죽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주인 알라 신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귀진(歸眞)’이라고 한다. 불은 일종의 형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도 불에 타는 것을 꺼려하며, 오로지 조물주만이 불로 형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화장을 하지 않고 토장(土葬)을 한다. 귀진(歸眞)은 생명을 알라 신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죽은 이의 몸에 있는 모든 물건(옷, 각종 액세서리, 의치 등)을 제거하고 머리를 동쪽, 발은 남쪽,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여 엎드려 놓고 “우리들은 주에게 속했으니 마지막도 진짜 주이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여러 차례 기도한 다음 시신을 청진사(淸眞寺)로 옮겨 모든 장례의 절차를 일임한다. 教長이 가족들과 함께 죽은 이를 위해 세례(洗禮)하고 따뜻한 물로 2~3 회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깨끗하게 목욕시킨 다음 묘지로 운반한다. 회교도의 묘향방향은 전부가 동일한 남북방향으로 머리는 동쪽, 발은 남쪽, 얼굴은 서쪽을 향하게 묻는다. 이슬람인의 장례는 신속, 절약, 위생을 원칙으로 대부분 사망 당일 매장하고, 반드시 유산의 삼분의 일은 빈궁한 자를 구제하고 나머지로 빛이 있으면 먼저 빛을 갚은 다음 남은 3분의 2의 유산을 친숙에게 분배함으로써 薄殮, 速葬, 求濟의 좋은 풍속을 지니고 있다.³⁵

³⁴ 呂應鐘, 위 논문 p10

³⁵ 呂應鐘, 위 논문, p9

Ⅲ. 한국 상장례

3.1 한국 상장례 변천과정

현재 한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전통 상장례는 고려 말 충렬왕 때 주자학이 도입된 이래 조선시대에 유교의 법제화를 통한 조상숭배 상장례가 보편화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학이 처음 도입된 조선초기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고위층 위주로 행해졌고, 16 세기에 이 퇴계(이황), 이 율곡(이이)의 2 대 유가(儒家)가 나타나서 조선인의 유교로서 자리매김을 해 왔다. 따라서 한국 상장례 변천과정을 조명하는데 있어서 시대적인 구분을 일제침략기를 기준으로 하여 일제시대 이전과 이후 그리고 현대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 본다.

3.1.1 일제시대 이전

선사시대의 상장례 의례에 관해서는 관련 서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고분 발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견해를 따르면 한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장례문화를 볼 수 있는 유적은 1983년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4 만 년 전의 ‘홍수아이’이다. 우리는 이 홍수아이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동굴에서 살았고, 가족이 죽으면 사람을 눕혀서 동굴에 묻는 동굴신전장(洞窟伸展葬)을 했으며, 이미 이 시대에 주검에 대한 상당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³⁶

빙하기가 지나간 기원전 1 만여 년 신석기시대에는 불을 사용하고 움집을 사용한 가족단위, 움집이 모여있는 씨족사회가 형성되며, 원시적이거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고, 그것은 불멸한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자연 신앙(애니미즘)이 장례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묘지 형태는 일정한 크기의 흙구덩

³⁶ 박태호, 상계서, p9

이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부장품을 함께 묻은 일종의 널무덤(土壙墓), 가까운 혈족의 무덤은 서로 가까운 장소에 두는 가족묘지, 부부를 한 무덤에 같이 묻는 합장, 한 무덤에 씨족이 차례로 묻히는 집장(集葬, 공동묘지)이 나타나고 있다.

서력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서기 300 년경까지의 약 3 세기는 우리나라가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전환되면서 이 시대의 장례문화에서는 고인들이 사라지고 돌덧널무덤이 발달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고구려 지역에서는 큰 돌무지무덤, 낙동강 유역에서는 판석이나 괴석을 이용한 돌널무덤,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독무덤이 유행하는 한편 이전 시기부터 축조되어 온 널 무덤 종류도 계속 이어진다. 고대의 우리 조상들에게 장례식은 이승의 삶을 마감한 죽은이의 영혼이 무사히 저승 세계에 도착하고 언젠가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기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영혼의 불멸을 믿고 장례를 후하게 치르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공통된 풍습이었다. 이러한 후장(厚葬)은 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조상의 영혼이 후손을 돌봐줄 것으로 믿었다.

부여에서는 장례기간이 보통 5 개월에 이르렀고, 여자들이 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복을 입는 풍습이 있었던 듯하며, 많은 물건을 무덤에 부장하는 후장풍습을 보이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 같이 묻는 순장(殉葬)까지 하였다. 이들 고분에서 사용된 장법으로는 한 무덤에 여러 사람이 같이 묻히는 다인장(多人葬)과 화장한 경우가 있었고, 묘제로는 널무덤과 나무널무덤, 나무덧널무덤, 화장무덤, 돌무지무덤, 돌널무덤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에는 유교와 불교라는 두 가지 외래사상이 전래 보급되면서 우리나라 생사관을 비롯한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외래사상과 같이 들어온 예법과 장제는 전통적인 장례 관습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에서 정립된 유교는 청동기시대부터 다수의 한족들과 한반도 북쪽 일대를 식민 통치한 한사군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직접 전파되었고, 삼국 시대에는 강화된 왕권을 뒷

받침하기 위한 중국과 외교 관계, 승려와 유학생의 교류를 통해 이어가면서 왕을 정점으로 하는 귀족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도덕으로서 유교를 중요시하였다. 유교와 함께 들어온 중국의 장례문화로는 삼년상이나 상복제도와 같은 유교식(중국식) 장례법이 있다. 또한 중국 무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흙으로 봉분을 만드는 무덤(封土墳)이 유행하기도 했다.

당(唐)나라와 연합한 신라가 백제(660), 고구려(668)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676) 이루어진 통일신라시대의 7세기 전반기에는 모든 제도와 관직을 중국식으로 고치는 등 중원문화의 영향을 많이 입었다. 불교의 확산으로 왕릉이 사찰 주변에 조성되었고, 하나의 석실에 같이 매장되는 사람의 수가 감소했으며, 화장 장례가 증가하면서 산골(散骨)에 따른 무덤의 수가 감소하고, 무덤의 부장품 수가 줄어들고, 무덤의 크기도 작아지면서, 실질적으로 거대한 고분이 사라져갔다. 불교에서는 화장을 다비(荼毗)라고 한다. 이것은 불교가 성립하기 이전의 고대 인도에서 원주민의 장례 법으로서 이미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경에 따르면 석가 모니께서 입적 한 후 유언에 따라 7일 만에 시신을 화장하고, 사리(舍利)를 수습하여 90일간 공양한 후 사리탑(舍利塔)을 세워 봉안했다고 전한다. 이후로 화장은 불교식 장례 법으로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교식 화장은 중국을 거치면서, 뼈를 가루로 만들어 자연에 뿌리는 산골(散骨)과 화장한 유골을 사리함이나 골호라는 유골 항아리 등에 담아 묘실(墓室)에 안치하는 장골(藏骨) 방식으로 변화하였다.³⁷

불교의 번성으로 불교의 장법인 화장문화는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나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시대의 왕이나 귀족, 승려와 일반 민중들이 모두 화장을 한 것은 아니고 각자의 믿음이나 경제력 등에 따라 전통적인 매장이

³⁷ 박태호, 상계서, p19

나 풍장 등의 다른 장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 통일신라의 장례법은 전통과 외래문화가 혼재된 가운데 다양성을 자랑하였으며, 이런 경향은 그대로 고려 시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태조 왕건이 멸망한 발해의(926) 유민을 받아 들이고 신라를 항복시킨 다음 후백제를 점령(936)함으로써 열린 고려시대는 유교원리를 바탕으로 한 통치체제에 통치이념은 불교가 중심이었고, 여기에 도교와 풍수지리설은 물론 상고시대부터 전해진 자연·무속 신앙과 같은 전통신앙까지 일정한 역할을 한 사상적으로 다원화된 시대였다. 따라서 장례문화에서도 사찰 중심의 불교적인 의례와 유교적 절차가 때로는 각각, 때로는 혼합되어 나타났다. 장례날짜 택일은 역술(易術), 묘 자리를 잡는 데는 음택(陰宅)풍수가 받아들여지고, 장법은 화장과 매장은 물론 풍장 등의 전통이 이어졌다. 고려 말엽에는 새로 집권한 무인집권 시대가 되면서 고려 전 시대를 거치면서 성행한 화장을 금지시키고,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교적인 장례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장례기간에 대해서 『고려사』에 “공후(公侯)이하는 3 일이 되면 장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 법률에서 “사망한 지 24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점과 같은 맥락으로, 조상들의 치밀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려 성종 4년(985)에는 상복 착용의 기간을 친친(親親)과 존존(尊尊), 명(名), 출입(出入), 장유(長幼), 종복(從服)의 여섯 개 원칙에³⁸ 의해 참취(斬衰), 자취(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總麻) 등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눈 오복제도(五服制度)가 새로이 마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모상을 당한 관리가 상주로서의 의무를

³⁸ ‘친친’은 친족 관계의 친소와 원근(遠近)에 따라 복상에 경중이 생기는 것이고, ‘존존’은 존속의 신분과 지위의 고하에 따라 상복의 경중을 정하는 것이며, ‘명’은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명의(名義)’ 때문에 복을 입는 것이다. ‘출입’은 여자가 혼인함으로써 시가와 친가의 친척들에 대한 상복의 경중이 생기는 것이고, ‘장유’는 죽은 사람이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인 경우에 따라 상복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이며, ‘종복’은 자기의 정복(正服)은 아니지만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을 따라서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원래 오복은 친족의 대상에 따라 참취는 3년, 자취는 3년과 1년, 대공은 9월, 소공은 5월, 시마는 3월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상복을 오래 입는 참취 3년과 자취 3년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자식이 입는 복제(服制)이다.

다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휴가를 주어 삼년상을 무사히 마치도록 배려했는데, 부모의 묘를 상주가 3 년동안 지키며 보살피는 ‘시묘살이’라고 하는 ‘여묘(廬墓)제도’가 있었고, 국가에서는 이러한 자에게 정문(旌門, 효자문)을 내리거나 벼슬을 높여 주어 그 효행을 기렸다.

조선시대 초기와 중기에는 주자가례에 의한 유교적인 상장례 문화가 정착하고, 불교의 장법인 화장이 금지되며, 돌방무덤에서 회격(灰隔)무덤으로 전환을 맞게 된다. 국영 장의사인 귀후서(歸厚署)의 설치도 이 시기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후기에는 묘비의 사용이 확산되고, 문중(門中) 단위의 집단 묘지가 성행하며, 풍수지리설이 팽배하여 이른바 명당자리를 놓고 다투는 산송(山訟)이 빈발하게 된다. 주자가례를 근본으로 하는 상장의례는 정책적 차원의 독려와 강요에도 불구하고, 왕실과 훈구세력이 지닌 종교와 사회적인 한계성과 뿌리 깊은 민간신앙과 팽배한 불교적 관습으로 인해 집권 사대부 계층에서도 잘 이행되지 않아 가묘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일부 사대부들의 술선수범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은 초상이 나면 무당과 중을 불러 요란한 가무로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천도제를 올렸다. 악성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들이나 산기슭 등에 놓고 풀로 덮어놓거나 나무에 매다는 등 풍장의 유습이 이어졌고, 지엄한 왕명과 대명률의 강력한 적용에도 불구하고 화장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부모를 화장하여 3년 동안 장사 지내지 않은 사람과 뼈를 태워 몰래 장사 지낸 사람 등이 지속적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화장이 비교적 널리 행해졌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 반면 승려의 다비나 먼 곳에 운구하기 어려워서 하는 화장, 버려진 시체나 전쟁에서 죽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화장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았다.

3.1.2 일제시대

3.1.2.1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

대한제국 끝 무렵에 일본이 침탈하여 우리 땅에 들어온 이후 장례문화에도 대 변혁이 일어났다. 19세기 후반 일본인 거류민단이 한성부에 설치된 후 약 20년 동안에는 화장하는 설비가 없었고 자신들이 필요한 화장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영사관에서 한성부와 교섭을 하여, 1901년 고양군 한지면 신당리 수구문 밖 송림 안의 땅 70여 평을 대여받아 처음으로 실내 화장장을 만들어 1902년 5월 10일에 완공하여 한국에 최초의 근대식 화장장이 만들어졌다. 물론 현재의 화장장과는 규모나 설비 등이 미흡하여 차이가 많겠지만 그 동안 화장을 하기 위해 양화진이나 한강 등 노천에서 장작을 때서 화장을 하던 것과 비교 하면 최초의 실내 화장장으로 의미가 있겠다. 이로써 조선 성종 때 국법으로 금지된 화장을 다시 일본인의 손에 의해 부활시켜서 근대적인 방식의 화장이 첫 선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어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12년에 조선총독부가 제정 공포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은 묘지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경무부장(경성의 경우 경무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묘지는 부, 면, 리, 동 기타 지방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한 것이 아니면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동묘지를 만들었고, 화장장의 신설, 개축 또는 증축, 화장장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는 경무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신설묘지 및 화장장의 주위에는 나무를 심어야 하고, 사체 또는 유골은 묘지 이외의 장소에서 매장 또는 개장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체의 화장은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전염병자의 사체 외에는 사후 24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없으며, 매장, 개장 또는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 또는 순사주재소, 헌병과건소, 동 출장소의 인허증을 받아야 하고 전염병자의 사체는 특히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경찰이 지정한 묘지가 아니면 이를 매장할 수 없도록 하

였다. 또한 타인의 점유지에 무단으로 사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거나 개장한 자,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사체 또는 사체를 넣은 관을 산림이나 들 관 기타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자 등은 3 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었다. 이 취체규칙은 한국에 현대적인 묘지와 화장장에 관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고, 아래와 같이 한국 장례 역사의 대전환을 가져온 의미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화장 및 화장장에 관한 규정을 담아 조선 성종 때 국법으로 화장이 금지된 이후 근 500 년 만에 화장이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으로 돌아오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둘째, 공동묘지와 화장장의 설치 허가, 시설주변의 나무 식재 의무화, 화장장의 위생관리 등 현대적인 시설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무연고 무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사람이 죽은 다음 24 시간 이내에는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으로 이런 강제적인 시간 제한 규정은 고려시대에 3 일 이내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 현행법까지 존속됨으로써 우리의 장례를 삼일장으로 일반화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체 또는 사체를 넣은 관을 들관 등에 방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당시까지 전통적인 풍장이나 유기장의 풍습이 이어져오고 있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공동묘지 설치권자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는 있지만 부, 군, 면과 같은 지방공공단체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누구든지 공동묘지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조선시대의 전통을 그대로 지니고 있던 당시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음은 물론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바꾸어 말해 이것은 고려 말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18 세기 말경 거의 완성된 ‘문중

묘지 또는 가족묘지'라는 조선의 전통적인 매장 관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아무 산에나 매장할 수 없고, 정해진 묘지에만 장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어 이 규칙은 곧바로 조선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것이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같은 식민지인 대만에서 묘지 「취체규칙」을 시행하였다가 큰 분쟁이 일어나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이 규칙에서 정한 묘지의 신설 제한이나 누구든지 공동묘지만 사용하도록 한 제도는 조선 사람들의 관습과 크게 달라 식민 당국자들도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조선에서 강행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이 규칙으로 묘지로 인한 다툼이나 범죄는 표면상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나 몰래 무덤을 쓰는 암장 등은 여전히 성행하였으며, 유림을 비롯한 많은 문중에서 조선인 고유의 풍속과 관습을 무시하였다 하여 계속 들고 일어나자 결국 식민 당국은 “민정(民情, 조선 사람들의 정서)과 관습의 실정에 맞춰서” 1919년에 「취체규칙」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완화되어 개정된 「취체규칙」에서는 무조건 공동묘지에 매장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지고, 자기 소유의 땅에 조상이나 배우자의 묘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 또는 바로 붙여서 사설(가족)묘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면적은 한 집안에 3,000 평 이하로 규정되었다. 사실상 공동묘지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였지만 총독부 당국의 “민정과 관습의 실정에 맞춰서”라는 개정 이유를 주목해보면, 한일합방 이후 무단 통치를 해오던 조선총독부가 1919년 3·1 운동이라는 조선 인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문화 정치라는 명분을 내걸고 조선인 회유책의 일환으로 이 개정안을 내놓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³⁹

개정된 취체규칙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멸시하고 백성들이 미워하는 귀족들에게는 넓은 면적을 사용하게 하는 점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반발은 있었지만, 이후에 공동묘지는 부족하여 계속 새로운 지역을 물색

³⁹ 박태호 상계서, p52

하고 전국적으로 화장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화장장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이 정치체제와 사회통제규범으로 삼아온 유학이 힘을 상실하고 때마침 밀려오는 서구의 신문화와 함께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래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영향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촉진 되었다.⁴⁰

3.1.2.2 의례준칙

1934년 조선총독부는 전통적인 사례(四禮)에 근거를 둔 간략화된 「의례준칙」을 들고 나와 담화문에서 일제 강점 이래 조선 사회가 다방면에 걸쳐 발달했다고 자찬하면서, 준칙의 그 제정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일반 생활양식 중 각종 의례와 같은 것은 구태가 의연하여 오히려 개선할 여지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 혼장례(婚葬禮) 세 가지의 형식 관례와 같은 것은 지나치게 번문육례(繁文縟禮)⁴¹하여 …… 엄숙하여야 할 의례도 종종 형식의 말절(末節)에 구니(拘泥)되어 그 정신을 망각하지 아니할까 우려될 정도에 이르렀다. 지금에 와서 이를 혁정개역(革正改易)하지 않으면 민중의 소실(所失)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진흥과 국력의 신장을 저해하는 일이 실로 적지 않을 것이다……⁴²

당시 「의례준칙」의 내용 중 상장례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전통적인 장례 절차를 무시하고 상주와 상복, 염습, 상기 등 복잡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새로이 20 항목의 상례 절차를 제시하였다. 의례준칙에서 변경 제한된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굴건제복 착용을 배제하여 성복 절차를 생략하고, 염습 이후 바로 상복을 입도록 했다. 상복은 전통적으로 입어온 굴건제복이 아니라 두루마기에 통두건을 착용하거나 상장을 달도록 제한하고, 양복을 입을 경우에는 완장을 차도록 했다. 장례 기간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최장 14일로 제한하고, 복제는 2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우제(虞祭) 역시 삼우제를

⁴⁰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p192

⁴¹ 번문육례: 번거롭게 형식만 차려서 까다롭게 만든 예문.

⁴² 안동 군, 『儀禮準則』, 1935, pp1~2

1 회의 우제로 단축시켰고, 상여로 운구할 때는 호창(呼唱), 즉 상여소리를 못하게 하고 정숙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⁴³

이러한 의례준칙은 그 동안 유교적인 관습에 의해 전통으로 내려오던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무시한 것이었고 시기적으로는 1931 년의 만주사변 이후 1937 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 조선 반도에 전시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물자를 절약하고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예정된 순서로 볼 수 있었다.

그런 반면에 일제가 어떤 의도로 이 정책을 폈든 간에, 일제침략기의 상장례는 우리나라 예속사에 있어 변동기로 볼 수 있다. 이 변동기의 주요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전통적인 상례에서 행해지던 초혼, 성복례, 상기 단축 등으로 전통의례 형식이 없어지거나 간소화 되어 ‘죽은이의 조상신으로의 승화’나 ‘공동체 구성원의 죽음이라는 위기 극복’ 등과 같은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의례의 의미가 상실되었다.

둘째는 기존의 유학의 힘이 상실되는 반면 새로이 들어온 서구문명과 천주교, 기독교의 전파로 인해 종교적 의례가 보편화 되었고,

셋째로는 공동묘지와 화장이라는 형식이 출현하여 전통장례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데 비해서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으로 싸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치르기 쉬워 선산이 없거나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없는 일반에서 많이 행해졌다.

네 번째로는 가족이나 친족 혹은 촌락중심에서 사회적 활동이 다양한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평가되면서 연합장이나 사회장이 출현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례준칙이 정립되면서 이 규정은 오늘날 우리의 통과의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⁴⁴

⁴³ 박태호, 상계서, p53

⁴⁴ 장철수, 상계서, pp249~250

3.1.3 현대 상장례

3.1.3.1 상례정책

1945년 해방 이후에도 한국의 상장례는 1945년 10월 2일자로 공포된 미군정 법령 제 21 호에 「취체규칙」이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이민족이 만든 풍속에 관한 법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등 계속되는 사회 혼란과 이후의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는 장묘 정책을 다룰 만한 여력이 없었다.

마침내 1961년 군사쿠데타 정부에 의하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는 재단법인에 의해 설립된 이른바 공원묘지가 등장하였고, 1973년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례예식장 영업이 등장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묘지를 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화장이 증가하면서, 납골문화라는 다소 이질적인 문화요소가 등장하여 좀더 본질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또한 혼시적인 법률에 머무르던 「가정의례준칙」이 실행에 어려움이 직면하자 1973년 이른바 유신정부는 기존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로 전문을 개정하면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 6552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 411호)를 제정하여 허례허식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법적인 강제성과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규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은 종전의 “이 법은 가정의례의 참뜻과 시대의 흐름에 알맞고 간소하고 건전한 의례절차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합리화를 기하며 미풍양속과 순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이법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 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변경하여 가정의례의 참뜻과 건전한 의례 절차 기준 마련을 통한 국민생활의 합리화 도모보다는 법적인 통제와 규제

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허례허식 금지조항은 계속 기본 틀을 유지해 왔으나 실제 법적 통제는 대부분 유명무실해졌다.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국가 역시 강제적인 방법으로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며 사적 영역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후 법개정을 통해서 벌금 금액 조정이나 예외 규정을 완화해 왔다. 그러던 중 1998년 헌법재판소의 “경조사시 음식접대 금지 가정의례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1999년 「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되고 「건전가정의례」와 이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 되면서 그 동안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청첩장, 음식 접대, 답례품, 조화진열 등 내용이 허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⁴⁵

3.1.3.2 장례 정책

1902년 일본 거류민단에 의해 처음 설립된 화장장은 1912년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으로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화장이 합법화 되었고, 일제 패망 이후 1961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 799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국가는 장묘제도의 개정을 통해서 묘지 설치장소, 묘지면적, 시설물, 분묘의 형태 등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1969년 4월 시행령이 대통령령 3886호로 공포되어 법률적 효력을 가지면서 묘지에 대한 구체적 규제를 강화했는데 주요 강화된 내용을 보면 1).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국방장관이 군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3). 도시계획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혼합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제 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도 보호지역, 4).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고속 교통구역, 5). 하천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하천지역, 6).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개간 예정지, 7). 산

⁴⁵ 송현동, 위 논문, PP201~206

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 국유림, 보안림 및 채종림, 8).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에서는 묘지, 화장장, 납골당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묘지는 물론 화장장, 납골당 등이 교외의 한적하고 외진 곳에 설치되어 이용률은 저조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더욱 가중 시켰다.

묘지 및 화장장 등의 설치 금지 구역이 명문화 되고 이후에 경제 발전에 따른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1977 년과 1981 년 개정을 통한 「장묘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위생적 측면 이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을 추가하였다. 제한 규정이 없던 가족묘지 및 개인묘지의 최대면적을 명시하여 기존의 종중, 문중 묘지규모를 축소 시킴과 동시에 묘지의 시설물을 묘지당 비석 1 개, 상석 1 개, 기타 석물은 2 개 혹은 한 쌍으로 제한하였고, 위반 시에는 각 위반 항목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마침내 2001 년 3 차 개정에서는 재단법인, 종중과 문중의 묘지, 가족묘지와 개인묘지의 면적이 축소 제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설묘지 제한에 대해 1969 년 법 제정 이후 2001 년 3 차 개정까지의 변화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⁴⁶

표 3-1) 사설묘지 면적 제한의 변화(시행령)⁴⁷ (단위; m²)

구분	1969.4.17 (제정)	1977.9.14 (1 차 개정)	1981.4.25 (2 차 개정)	2001.1.27 (3 차 개정)
재단법인	100,000 이상	100,000 이상	100,000 이상	200,000 이상
중, 문중 묘지	-	2,000 이하	2000 이하	1000 이하
가족묘지	-	-	500 이하	100 이하
개인묘지	2000 이하	150 이하	80 이하	30 이하

⁴⁶ 송현동, 위 논문 P210

⁴⁷ 국토개발 연구원, 『묘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87, P40,

개인묘지를 제외한 기타 묘지의 분묘 1 기당 면적은 10 m² 이하, 합장의 경우 15 m² 이하이다.

1993년 보건사회부는 매장문화가 계속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유림과 정치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되었고, 1996년 이후 재검토하였다. 마침내 1999년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화장 중심의 장래문화 전환에 극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화장하는 유족에게 장려금 지원, 묘지 관리, 납골당 사업자 등에게 부과세를 면제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서울시는 화장을 권장하고 화장문화 전체를 보급하기 위해 2002년 1월 벽제화장장에서 무료 화장을 실시해 주는 등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3.1.3.3 장례산업 태동

일제시대 경성부에서 처음 운영한 신당리 화장장에서부터 해방 후 서울시립 홍제동 화장장에 이르기까지 제장(祭場)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이곳은 화장하기 전 고별의식을 거행하던 장소였지 장례를 치르는 장소, 즉 장례식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집에서 임종하지 않으면 객사라고 하여, 시신을 집 안에 들여 장례를 치르는 것을 굶기 시 해왔던 전통은 1970년대까지도 지속되어 혹여 마을 앞에 있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으면 동구 밖에 차일을 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 반면에 우리의 미풍양속인 마을 공동체의 상부상조 전통과, 가족과 가까운 혈족 중심으로 장례를 치러온 관습은 마을의 원로나 일족 가운데 장례와 관련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어, 상주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별 문제 없이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 전문 직업인의 도움 없이도 장례라는 큰 행사를 치르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한 도시화 과정으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핵가족화로 인해 1960년대 초반에 아파트라는 전혀 새로운 주거문화가 등장하였고, 많은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의 특성과 건물 구조상의 제한으로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데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의사와 같은 직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

달로 중전의 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집으로 모시고 가 편안하게 보내드리십시오”라고 권해 오던 것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례가 점차 늘게 되었다. 병원에서 객사한 다음 집으로 모셔가 장례를 치르는 것은 전통적인 인식으로 볼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혹여 병원이나 밖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망인 경우, 병원에 부속된 시체 안치실 옆에 임시로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르던 것이 바로 병원 부설 장례식장의 태동이었다. 이런 사회적인 필요는 1973년 3월 13일자로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하고 규정함으로써 장례식장 또는 장의사가 처음으로 법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장례식장과 유사한 행위를 하던 병원 영안실들은 법률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장례식장 시설 기준에, “장례식장의 위치는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명시된 것이 문제되어 도심에 자리잡고 유사한 영업을 하던 병원 부설 영안실들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자, 이번에는 의료계 쪽에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므로 장례를 치르면 중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불법 장례식장인 병원 영안실을 엄단한다”라는 엄포를 계속 놓았다. 하지만 병원 영안실에서의 장례는 나날이 증가하였다. 그러다 1981년 3월 16일 시행 규칙에 규정된 장례식장의 시설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기며 예의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병원 부설 영안실이 사면 복권되었다. 이로써 장례식장이 도심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인정받은 것은 1994년 7월 7일 법 시행령에 「장례식장의 시

설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하는 장례식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다음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정부의 「전문 장례식장 육성 방침」에 따라 지방의 중소도시에 장례식장이 건립되었고, 병원 부설 장례식장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장례 산업은 꽃을 피웠지만, 동네 장의사들은 줄지어 퇴장하게 되었다.

3.2. 한국 전통 상장례 절차

상장례는 사람의 죽음을 맞고 그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 지내며 근친들이 일정기간 슬픔을 다해 죽은 이를 기리는 의식절차이다. 따라서 친족의 임종을 맞이했을 때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죽은이에 대한 마지막 모심이기 때문에 죽은 이의 자손은 자기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하는 자세로 근신하며, 슬픔을 극진히 하며, 힘을 다해 장례를 치른다. 모든 절차는 경제적 여건과 생업의 사정에 따라 사람마다 한결같을 수는 없으나 아무리 생활여건이 달라져서 형태는 변형된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옛날과 현대가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상장례는 전세계 각 민족의 고유풍속과 종교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하고 죽음의 형태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죽음을 배제하고 수를 다하여 병으로 죽게 되는 정상적인 죽음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 고대 당시의 형태와 현대의 변화된 내용을 살펴본다.

한국 전통 상장례는 크게 상례를 위한 준비과정과 시신처리방법 그리고 죽은이에 대한 유족의 의무와 행동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

예서(禮書)에 나타난 절차는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 성복(成服), 적상(吊喪), 문상(聞喪), 치장(治葬), 천추(遷柩), 발인(發靱), 급묘(及墓),

반곡(反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 길제(吉祭)로 모두 19 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을 렬습(斂襲)이라 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줄이고, 천추(遷柩)는 발인(發靱)에, 반곡(反哭)은 우제(虞祭)에 흡수하고, 문상(聞喪), 부제(祔祭), 길제(吉祭)는 없어지고 초종(初終), 렬습(斂襲), 성복(成服), 적상(吊喪), 치장(治葬), 발인(發靱), 급묘(及墓), 우제(虞祭),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등 12 단계로 줄여서 시행을 하고 있다. 여기서 초종은 상례를 위한 준비절차이고 습, 소렴, 대렴, 치장, 천구, 발인, 지묘는 시신 처리방법, 성복, 조상, 문상은 죽은 이에 대한 생자의 의무와 행동, 반곡, 우제, 졸곡, 부제, 소상, 대상, 담제, 길제는 죽은 이에 대한 유족의 행동으로 구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장례의 절차나 형태는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시대적인 변화, 다변화된 종교의 영향에 따라 전통 상장례의 모습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1973년 「가정의례준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허례허식의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져 점점 간소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가정의례준칙상 일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음식접대 등이 허용되면서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어졌지만 현대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3 일장을 하기 때문에 사망 당일 초종과 장례준비, 수시를 하고, 사망 다음날 습과 소렴, 대렴 까지 염습을 모두 마치고 3 일째 발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현대 상장례를 가정과 장례식장에서의 절차와 내용을 기준⁴⁸으로 고례의 상장례에서의 절차와 내용⁴⁹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⁴⁸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 참조 (<http://www.ehaneul.go.kr/contentsS.do?id=M010202003> 2013,11,30)

⁴⁹ 김장생 저 정선용 역, 상계서

3.2.1 첫째 날

3.2.1.1 초종(初終)

고례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맞는 상례의 처음절차로 사람이 병이 위독하여 숨을 거두기 직전부터 죽은 뒤 부고를 내기까지의 준비 절차를 초종(初終)이라고 하였다. 엄밀한 의미의 초종은 상례의 첫 절차를 말하는 것이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초종장례(初終葬禮)의 준말로 사용되어 운명할 때부터 졸곡(卒哭)까지의 상례 절차를 뜻하게 되었다. 본래 의미의 초종의 종(終)은 단궁(檀弓: 예기의 편명)에서 “군자는 마침이 있다(君子有終).”는 데서 따온 말로 초종은 곧 처음 죽었을 때를 뜻한다. 그러나 후대에 쓰이는 초종은 처음(初)과 끝(終)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 노릇 끝남의 시작으로 일정한 상례절차의 시종을 뜻한다.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군자는 종(終)이라고 하고 소인은 사(死)라고 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종(終)’이란 것은 시(始)에 대응하여 말한 것이고, ‘사(死)’라는 것은 다 없어져서 남은 것이 없다는 말이다. 군자는 행실을 이루고 덕을 세움에 있어서 처음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소인은 뜻 사물과 더불어 같이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한다.” 하였다. 황씨(黃氏)가 말하기를, “종(終)은 도(道)로써 말한 것이고 사(死)는 형체로써 말한 것이다.”⁵⁰

본래적 의미의 초종절차에는 임종에 대한 준비, 초혼, 수시, 상례 동안의 소임분담, 관 준비, 부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2.1.2 천거정침(疾病遷居正寢), 운명, 거애(殞命, 擧哀)

환자가 위독하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나 가능하면 평상시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평상시에 사용하던 방으로 모셔서 입고 있는 더러워진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눕힌 다음 환자가 보고 싶어할 사람이나 환자를 보아야 할 사람에게 연락하고 가족이 조용하게 결

⁵⁰ 상계서 권 27, 가례집람 초종

을 지켜서 환자를 혼자 두지 않도록 한다. 집의 안팎을 정돈하고 만일의 경우 연락해야 할 곳을 정리 기록하고 가족들이 하는 일도 죽음에 대비해 준비하면서 자손과 근친들이 환자 곁에서 엄숙하게 지키면서 임종을 기다린다. 이때 유언이 있으면 유언을 듣고 가능하면 의사가 환자 곁에 지키게 하여 사망을 확인하도록 하나 그렇지 못하면 깨끗한 탈지면이나 솜을 입이나 코 위에 올려 놓아 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임종에 대한 준비로는 운명이 가까우면 정침(正寢)에 모시고 속광(屬纊)을 한다. 여기서 속광이란 햇숨을 환자의 입과 코 위에 두었다가 숨이 끊어지면 입과 코를 막아 불순물이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설(禮說)에 남자는 여자의 손에 의하여 숨을 거두지 않고, 부인은 남자의 손에 의하여 숨을 거두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숨이 완전히 끊어지면 곡을 한다고 되어 있다.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만약 병세를 헤아려 보아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으면 먼저 정침(正寢) 안에 상(牀)을 놓아둔 다음 자제들이 함께 병자를 부축하여 상 위로 옮겨 눕히는데, 머리를 동쪽으로 두게 한다. 이미 병자를 옮겨 왔으면 내외 사람들로 하여금 조용히 하도록 신칙하여 시끄럽게 떠들어 대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어 사람들을 시켜서 그 곁에 앉아 있으면서 수족(手足)을 살펴보게 한다. 남자는 부인의 손에서 죽지 않으며, 부인은 남자의 손에서 죽지 않는다.

[보(補)] 병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가를 묻는다. 할 말이 있다면 종이에 쓰고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예는 『대명집례(大明集禮)』에서 나왔다. 예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 다음, 새 솜을 입과 코 사이에 대어서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 병자가 기운이 끊어지려고 하면 자리와 요를 땅바닥에 깔아 놓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 숨이 끊어지고 나면 부축하여 그 위로 옮긴 다음 이불로 덮는데, 젓가락 하나를 가지고 입 속에 가로질러 설치(楔齒)를 하여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반함(飯含)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에 이르러 부녀자들이 들어온다. 남녀가 곡벽(哭擗)을 하는데, 일정한 횟수가 없이 한다. 이상은 초상을 당하였을 때 하는 예식 절차인데, 보충해 넣은 곳 다음부터는 창졸간에 황급하여 다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오직 병자를 정침으로 옮기고, 솜을 대어 보고, 상을 치우고 땅바닥에 자리와 요를 깔고, 설치를 하고, 거애(擧哀)를 하는 다섯 가지 절차만 해도 된다” 하였다.⁵¹

⁵¹ 상계서 권 27, 가례집람 초종

이윽고 환자가 숨을 거두면 의사를 청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고⁵² 사망이 확인되면 지키던 근친들은 슬픔을 다한다. 옛날에는 큰소리로 소리 내어 우는 곡(哭)을 했으나 현대는 일부러 소리 내어 곡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음소리를 억제할 필요도 없다. 연락을 받은 가까운 근친들은 시간이 되는대로 와서 죽은 이를 보고 슬픔을 표하고 평소에 죽은 이를 보지 않았던 이성(異性)은 구태여 죽은 이를 볼 필요는 없으며 유족들은 죽은 이가 있는 방을 비우지 않는다. 요즘은 병원에서 운명하게 되면 의사가 사망확인 후 바로 안치실로 모시고 수시 후 냉장실에 모시며, 집에서 운명했으나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상례를 치를 경우 전문 장의차를 이용하여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바로 옮겨 안치실에 죽은 이를 안치하고, 상주는 죽은 이가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 키를 인수 받는다.

3.2.1.3 복·초혼 (復·招魂)

죽은 이의 사망을 확인하고 애도의 표시로 곡을 하고 나면 초혼(招魂) 또는 복(復)을 한다. 초혼은 죽은 이의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행위로 죽은 이의 직계 자손이 아닌 사람이 죽은 이가 입었던 위아래가 연결된 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왼손으로 옷의 목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옷의 허리 부분을 잡고서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죽은 이의 평소의 칭호를 세 번 부른다. (“누구 복, 누구 복, 누구 복”) 이때 모두는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하다가 북을 마치고 내려와 그 옷을 시신 위에 덮고 다시 울음을 시작한다. 『의례』에서는 복은 죽은 이의 몸을 떠난 영혼을 불러들임으로써 죽은 이를 살려 보려는 마지막 노력이면서, 이미 죽은 이가 된 사람이 살아올 수 없음을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살아나게 해 보려는 자손들의 극진한 효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대에는 주술적이고 미신에 의

⁵² 통상 7통 정도가 필요하다.

한 의식으로 생각하여 하지 않는다.

《의례》 사상례의 주에 이르기를 “‘복(復)’은 혼(魂)을 불러 백(魄)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사람의 몸을 출입하는 기(氣)를 혼이라고 하고, 귀와 눈의 총명함을 백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는 혼과 신이 백에서 떠나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혼을 불러서 백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복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도를 극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사(五祀)⁵³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윽하고 어두운 곳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귀신에게 구원하는 도이다. 그러므로 복면하여 초혼(招魂)하는 것은 그윽한 곳을 향하여 기구(祈求)하는 뜻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오사에 기도를 행하여도 살아나게 할 수가 없으면 또다시 복을 하는바, 이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도를 극진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은 오히려 복을 할 때에도 잊지 않는 것이다. ‘그윽하고 어두운 곳에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윽하고 어두운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산 자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귀신이 있는 곳은 그윽하고 어두운데, 북쪽은 바로 그윽하고 어두운 방향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곳의 귀신에게 무언가를 희구하는 자는 반드시 북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하였다.

《예기》 상대기의 주에 이르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은 만물의 자연적인 이치이다. 그런데도 죽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복을 한다. 이미 죽어서 끝내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도 성인께서는 이런 예를 제정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헛된 예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는 인정에서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효자의 마음에는 참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뼈에 다시 살이 붙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만분의 일이나마 다시 살아날 길이 있는데, 무엇을 꺼려서 이런 예를 만들지 않겠는가?” 하였다.⁵⁴

3.2.1.4 수시 (收屍)

수시는 주검을 갈무리하는 절차로 시기는 운명한 때로부터 너무 늦지 않은 약 1 시간이 지난 후가 좋고 남자는 남자 근친이, 여자는 여자 근친이 한다. 죽은 이가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을 쓸어내려 잠자듯이 감기고 주검을 머리가 남쪽으로 가게 방의 한쪽에 반듯하게 눕힌다. 발바닥을 벽이나 상자 등에 붙여 반듯하게

⁵³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는 다섯 종류의 신(神)으로, 궁중(宮中)을 맡은 신인 사명(司命), 문호(門戶)를 맡은 신인 중류(中霽), 성문(城門)을 맡은 신인 국문(國門), 길을 맡은 신인 국행(國行), 죽은 뒤에 후손이 없어서 여귀(厲鬼)가 된 자인 공려(公厲)를 말한다. 《禮記 祭法》

⁵⁴ 상계서 권 27, 가례집람 초종

한 다음 두 발끝을 모으고 무릎을 펴서 봉대나 백지로 묶는다. 두 손은 배위로 모아 흉사시의 공수를 시켜 봉대나 백지로 묶으며, 머리를 반듯하게 유지시키고, 입에는 나무젓가락 등에 솜을 말아 물려서 오므려지지 않게 하고, 솜으로 귀를 막고 가제로 코와 입 위를 덮어 곤충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 훌이불로 얼굴까지 덮는다. 시신(屍身) 앞을 병풍이나 장막(帳幕)으로 가리고, 그 앞에 향상(香床)을 차려 향을 피우며 촛대를 좌우에 세워서 촛불을 켜고 방안의 지저분한 것들을 치운다.

이러한 수시는 가족의 근친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에는 수시를 장의사(葬儀社)에 연락해 남의 손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동안 함께 모시던 죽은이의 마지막을, 특히 여자의 죽음에 외간 남자의 손으로 그 몸을 만지게 하는 것은 정성스러운 자손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일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2.1.5 입주상·주부 (立主喪·主婦)

주상은 상의 바깥주인이고 주부는 안주인으로 죽음을 슬퍼할 근친 중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는 아내의 죽음에는 남편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가 되고,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주상, 아내가 주부이나 삼우제가 지나면 큰며느리가 이어서 주부가 된다. 부모상에는 장남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가 되며 장남, 큰며느리가 없으면 장손, 큰손부가 주상 주부가 되는데 이것을 승중(承重)이라 한다.

큰아들이나 큰며느리가 죽으면 아버지가 주상, 어머니가 주부가 된다. 기타의 죽음에는 가장 가까운 근친부부가 주상, 주부가 되는데 처가나 친정사람은 주상, 주부가 되지 못하고⁵⁵ 만일 같은 촌수의 근친이 여럿이면 연장자 부부가 주상, 주부가 된다.

⁵⁵ 《예기》에 처의 집안은 친척일지라도 그 상을 주관하지 않는다. [妻黨雖親不主] 라고 하였고 《예기》 잡기의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부인의 경우에는 본족(本族)의 친척에 대해서 상복을 내려서 입는다. 이것은 이미 시집을 가서 외족(外族)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족에 대해서는 그 상을 주관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3.2.1.6 호상소 설치

호상소란 주상과 주부가 슬픔 때문에 상을 치르는 일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주상과 주부를 대신해 상을 치르는 사무소로, 집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들르기 쉬우면서도 주상과 연락이 수월한 곳에 설치한다. 죽은 이나 주상과 잘 알고 예절을 알면서 근친이 아닌 사람을 초빙해 주상을 대신해 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호상을 비롯하여 사서, 경리, 사회자인 집례자, 집사, 안내, 잡역 등을 두어 전반적인 장례 일을 치르고 호상소의 모든 인원은 모두 호상의 명을 받아 일하도록 한다. 한편 호상소에는 조문 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조문록, 조위록 및 부의록, 금전출납장, 물품수불부, 축철(祝綴)과 기타 메모지 책 등 기타 필요한 문서들을 비치한다.

3.2.1.7 역복·소식

주상, 주부 이하 모든 근친들은 화장을 지우고, 면도를 하지 않으며, 모든 액세서리를 떼서 옷을 단조롭게 바꾸어 입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남자 자손이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을 때는 부친상에는 왼쪽, 모친상에는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고, 주상, 주부, 아들, 며느리, 딸은 양말이나 버선을 벗고 방석을 깔지 않는다. 고례에는 아들, 며느리, 시집가지 않은 딸은 머리를 풀었으나 현대에는 쪽을 찌거나 땅지 않으므로 풀 머리가 없고, 이웃 마을 사람들이 미음과 죽을 쑤어 먹인다(隣里爲糜粥以食)라고 되어 있으나 현대는 술이나 고기 등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제한다.

《예기》 문상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처음 죽으면 가엾고 애달픈 마음과 아프고 절통한 생각에서 신(腎)이 상하고 간이 마르며 폐가 탄다. 그리고 물과 장(漿)을 입으로 넘기지 못하고 사흘 동안 밥을 짓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웃과 마을에서 미음과 죽을 쑤어 이를 마시고[飲] 먹게[食]-‘사(食)’의 음은 사(嗣)이다. - 하는 것이다. 아프고 절통한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므로 입으로 음

식을 먹어도 달고 맛있는지를 모른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미(糜)’는 걸쭉한 것이고, ‘죽(粥)’은 묽은 것이다. 묽은 것은 마시게 하고 걸쭉한 것은 떠먹게 한다.” 하였다.⁵⁶

조선시대 세종실록에는 일단 초상이 나면 아내, 아들, 며느리는 모두 관(冠)과 옷(深衣)을 벗고 머리를 풀어 뜨린다. 그리고 3 년상에는 사흘을 먹지 않고, 1년 또는 9 개월상에는 세 끼니를 먹지 않으며, 5 개월과 3 개월상에는 두 끼니를 먹지 않는다.⁵⁷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역복은 성복시에 입는 오복과는 다르며 아직 상복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을 당했음을 표시하는 복장이다.

3.2.1.8 장례절차 결정

근친과 호상이 상의해 장례절차를 결정한다. 발인일은 날씨와 기후, 반드시 참례해야 할 근친의 교통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3 일장으로 하고 다만 죽은이를 땅에 묻는 매장(埋葬)을 할 것인가,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매장할 경우에는 묘지 소재 토지의 소유권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토지 형질 변경(개간 및 주거지)이 되지 않을 곳으로 물에 잠기거나 침수되지 않을 곳, 묘지 보전에 지장이 없을 곳, 교통사정 등 관리에 편리한 곳으로 묘지 장소를 결정하고 화장할 경우에는 화장할 장소와 골분 처리 방법(소산 혹은 납골), 납골한다면 어디에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장례방법은 죽은 이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걸맞게 하되 가족장이 아닌 다른 방법은 관계 있는 직장, 단체분야의 관계자 혹은 장례 집행부서의 관계자와 절차를 사전 협의 결정하고, 죽은 이에게 입힐 수의와 관의 재질과 종류, 제조방

⁵⁶ 상계서 권 27, 가례집랍 초종

⁵⁷ 易服不食 王世子及大君以下<親子親孫> 皆去冠及上服 被髮着素服素鞋麕布襪 王妃及內命婦嬪以下 王世子嬪以下 及外命婦公主 及府夫人以下<親女親子妻及孫女孫妻> 皆去冠及上服 被髮着素服素鞋麕布襪 內外皆素服去華飾 <華飾謂錦繡紅紫 金玉珠翠之類> 王世子及大君以下 三日不食 [세종실록 권제 134, 10 장 앞쪽, 오례 흥례 의식]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3.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법, 주상, 주부 이하 근친과 기타 추모하는 이들이 입을 상복, 상장의 종류와 제조방법, 장지에 가는 교통편과 노제의 유무와 장소, 주관 자, 죽음을 사회에 알리는 부고(訃告)의 방법과 대상을 결정한다.

3.2.1.9 수의봉제 및 상복 준비

죽은 이에게 입힐 옷과 소렴, 대렴에 쓰일 이불 등을 수의라고 하며 남자 죽은이는 속바지, 바지, 허리띠, 버선, 대님, 신, 행전, 속저고리, 저고리, 토시, 두루마기, 도포, 도포 띠, 떡목, 복두, 악수, 소렴금, 대렴금, 주머니 5 개, 맬끈, 천금, 지요, 베개를 준비하고, 여자 죽은이는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버선, 신, 속저고리, 저고리, 활옷, 띠, 떡목, 복두, 악수, 소렴금, 대렴금, 주머니 5 개, 맬끈, 천금, 지요, 베개를 준비한다. 수의의 재질은 명주나 무명, 삼베 등 천연섬유가 좋고 겹으로 만들며 산 사람의 옷과 반대로 오른쪽 설이 밖으로 나오게 여미도록 짓는다.

또한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이 입을 상복을 짓는데 상복의 제도와 재질은 성복조에서 자상하게 적기로 한다.

3.2.1.10 치관

관(棺)은 죽은 이를 넣는 나무상자로 매장할 때 관까지 함께 묻을 것이면 좋은 나무로 두텁게 만들어 방부 칠을 하고, 매장할 때 관을 제거할 것이면 묘지까지 갈 때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 고대초기 상(商)나라 사람들은 흙을 빚어 구워서 만든 그릇인 와관이나 직주를 썼으나 이는 흙에서 나온 것이므로 오래 지난 뒤에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므로 흙이 시신의 살갓을 침범하지 않게 할 도리가 없어 은나라 시절에 관과 곽을 만들면서 드디어 나무로 바꾸었고 주 나라에 와서는 관에 치장을 꾸민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3.2.1.11 부고 (訃告)

미리 정한 방법으로 죽은이와 복인들의 친지에게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호상의 명의로 작성한다. 고례의 부고는 죽은 사실만을 알렸으나 현대는 호상의 명의로 내는 것은 고례와 같으나 부고를 주상, 주부 및 근친의 친지와 친구에게도 보내므로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근친을 아울러 쓰고, 발인 일시와 발인 장소 및 장지도 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신문 등에 부고 광고를 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화나 혹은 SNS 를 이용하여 문자로 대신 한다.

고례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부고(訃告)의 부(訃)는 원래 부(赴)의 뜻으로 달려가서 알린다는 뜻이었으나 부(訃)는 말로 서로 통지한다는 뜻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냈고, 부고를 내는 사람이 효자가 상을 당해 글로 쓸 수 없어 사서가 작성 했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현재에도 부고 작성 및 발송을 호상이 담당하는 것과 같다.

《의례》 기석례(既夕禮) 기(記)의 주에 이르기를, “부(赴)는 달려가서 고하는 것이다. 금문(今文)에는 ‘부(訃)’로 되어 있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부(赴)’라고 말한 것은 빨리 달려가서 알린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예기》 잡기에 ‘부(訃)’ 자로 되어 있는 것은 말로 서로 통지하는 뜻을 취한 것으로, 역시 같은 것이다.” 하였다.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가례》를 보면 사서(司書)가 있는데, 대개 효자가 초상을 당하여서는 비통하고 혼미하여 스스로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유사(有司)가 대신 쓰고서 애자(哀子)의 이름을 칭하여도 된다. 그 서식은 ‘아무개 친족 아무개가 아무 달 아무 날에 병을 얻었다가 불행스럽게도 아무 달 아무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사람을 시켜서 부고합니다. 아무 달 아무 날에 애자 아무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친족 아무개에게 고합니다. [某親某人 以某月某日得疾 不幸於某月某日棄世 專人訃告 月日 哀子某泣血某親某人]’ 한다.” 하였다.⁵⁸

⁵⁸ 상계서 권 27, 가례집랍 초종

3.2.1.12 영좌, 상차 설치

영좌는 손님이 죽은이에게 슬픔을 애도하는 장소이고, 상차는 주상과 상제들이 있는 장소로 대개 영좌와 상차를 붙여서 집이 좁으면 시신이 있는 방에 차리고, 집이 넓으면 시신의 방에 가까운 곳에 차린다. 고례에는 염습 후에 설치했으나 현대는 염습 전에도 조문을 받아야 하므로 일찍 배설한다.

사진은 죽은 이의 사진으로 상제들의 성복 전에는 사진에 검은 리본을 걸치지 않고, 주상, 주부 이하 상제들이 앉는 자리는 거친 자리로 하고, 조문석은 고운 자리를 깔아도 좋다. 고례에는 점석이라 해서 풀자리를 깔고, 피침이라 해서 흙돌베개를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짚베개를 곁에 두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죽은 자식들은 죄인이라 몸을 풀밭, 들판(草野)에 던진다는 뜻이다.

3.2.1.13 상가배비

상가배비란 찾아오는 손님이 찾기 쉽게 큰길에서부터 표시하고, 안팎에 조명 시설을 해서 밤샘에 지장이 없게 하며, 일하는 사람의 음식 조달과 손님에 대한 간단한 다과 대접을 위한 준비를 말한다. 목표 건물이나 큰길 정차장에서부터 상가까지 행로를 표시하고, 상가 문 앞에는 밤에도 식별이 용이하게 상가의 안팎에 불을 밝혀 상가(喪家) 표시를 한다.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게 좁지 않고 덥지 않게 냉난방시설에 유의하여 장소와 자리 등을 준비하고 조문객에게 간단한 다과를 대접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대접은 않아도 되나 대부분 3 일장으로 친구나 친척 등 조문객이 일과시간이 끝나고 조문을 오게 되므로 간단한 식사를 대접해야 하고 호상소와 잡역을 하는 사람들의 음식에 불편이 없게 해야 한다. 한편 현대에 와서는 전문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상가 표시는 할 필요가 없으나 부고를 할 때 장례식장의 위치, 연락처 등을 표기해 주면 된다.

3.2.1.14 설전

죽은 사람이라도 밥 먹을 때에 그대로 지나기에는 너무나 슬픈 일이어서 아침과 저녁에 시신의 오른쪽 어깨 옆에 상을 차려 올리는 것을 설전이라 한다. 밥이나 국, 반찬 등 상하기 쉬운 것은 차리고 잠시 후에 치우지만 과일, 포, 술은 다음 식사 때까지 두었다가 새로 전을 올릴 때 먼저 것을 치운다.

3.2.1.15 사자밥

현대에는 거의 하지 않고 고례에도 나타난 바 없으나 사자밥을 차리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대문 밖에 밥 세 그릇, 나물 세가지, 엽전 세 개, 집신 세 켄레와 간장을 상이나 채반 위에 차려 놓는다. 이런 관습은 죽은이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있다고 믿는 민간신앙적인 측면에서 저승사자에게 무엇이든 접대를 해서 죽은 자에 대해 잘 보살펴달라는 의미로 준비를 하고 또한 가능하면 더디게 데려가 달라는 의미로 쫀 간장을 준비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비위생적이고 물자 낭비이며, 죽은 이의 존재도 비과학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는 미신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준비하지 않는다.

3.2.1.16 무시거애 (無時擧哀)

고례에는 대곡(代哭)이라 해서 상제 대신 곡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으나 그야말로 허례허식이고 근친들은 언제든지 슬프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슬픔을 실토한다. 일부러 소리 내어 곡을 할 것도 없지만 저절로 나오는 흐느낌이나 소리 내어 울고 싶은 것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3.2.1.17 매장, 화장신고와 준비

의사에게서 발부 받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시,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이어서 매장 혹은 화장신고를 한다. 매장할 경우에는 현지에 미리

사람을 보내 묘지공사와 현장관리 일체를 준비하고 장일 당일의 묘지, 장지까지의 교통수단, 묘지까지 동행인원을 점검 현지에서의 음식준비를 한다. 화장을 할 경우는 화장장 위치와 거리, 경비 등을 감안 하여 인터넷으로 화장 예약을 신청한다. (e-하늘 장사정보, www.ehaneul.go.kr).⁵⁹

3.2.1.18 지석, 표석 준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묘지를 표시하기 위해 묘지 앞 땅속에 묻는 표지를 지석이라 하고, 묘지 옆에 세우는 표지 돌을 표석이라 한다. 지석을 묻을 예정이면 문안을 작성해 조각을 의뢰한다. 대개 두 장의 돌로 만들어 양쪽에 글을 새기고 글 새긴 곳을 맞붙여 묘지의 발치에 묻는다. 표석을 세울 경우 높이 120cm 이하의 돌에 전면에 지석 위 돌과 같이 새기고 좌우와 뒷면에는 지석 아랫돌의 내용을 새긴다.

3.2.1.19 신주 준비

죽은 이의 각종 제례에 죽은 이를 상징하는 표상을 신주라 하며 밤나무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뽕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신주는 분칠을 한 몸체(神主)를 덮은 뚜껑(韜), 신주를 세우는 받침(趺), 신주 밑에 까는 방석(籍), 신주를 넣는 상자(座), 상자를 덮은 덮개(蓋)로 이루어지는데 독좌와 독개는 까맣게 칠하고 글씨는 쓰지 않는다.

3.2.1.20. 명정 준비

⁵⁹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화장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시설을 허위로 다수·선점 예약하거나 무단 취소하여 실수요자의 이용에 막대한 불편을 야기하고 어렵게 설치한 화장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화장예약 창구를 e-하늘로 단일화하여 실수요자(유족)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예약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화장시설의 가동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명정은 죽은 이를 관에 넣은 다음 누구의 관인가를 나타내는 표지 깃발이다. 입관 후에는 관의 동쪽에 세우고, 관을 옮길 때는 앞에 먼저 가고, 묘지에 매장할 때는 관이나 시신 위에 덮는다. 명정은 빨간 천 온 폭을 길이 2m 정도로 잘라서 아래와 위에 가는 나무를 대고 꿰맨 것을 3m 정도의 장대에 매어 단다. 명정의 글씨는 흰 분가루를 접착제(아교)에 개어 붓으로 직명, 본관, 성명을 쓴다. 남자에게 직명이 없으면 ‘學生’이라 쓰고, 부인이 벼슬 있는 이의 아내이면 ‘夫人’이라 쓴다. 남자가 학덕(學德)이 있고 호(號)가 있으면 호를 써서 ‘念齋居士’, ‘梅軒處士’ 등으로 쓰기도 하고, 부인에게 당호(堂號)가 있으면 ‘師任堂夫人’, ‘雪軒夫人’ 등으로 쓰기도 한다.

3.2.1.21. 반함, 목욕준비

반함이란 죽은 이의 입에 물리는 것을 말하는데 저승에 가서 써야 할 식량과 재물이라 하기도 하나 사실은 시신의 빈(空) 곳을 채우는 것이다. 사전에 쌀 한줌을 물에 씻어 그릇에 담고 구슬이나 동전 몇 개를 깨끗이 씻어 접시에 담는다. 버드나무로 만든 손가락을 미리 준비한 이상의 반함물과 함께 조그만 쟁반에 얹어 놓는다. 목욕이란 죽은 이를 목욕시키는 것으로 목욕물은 썩을 삶은 물 20 리터 정도 따뜻하게 해 놓고, 쌀 씻을 때 나오는 뜨물을 10 리터 정도 준비하여 세수대야 3~5 개, 물수건 2 장, 마른 수건 2 장, 머리 빗 1 개, 가위나 칼 2 개, 너비 1m 길이 2m 정도의 비닐, 여자인 경우는 화장품 약간 등을 준비한다.

이상에서 죽은 이가 사망한 당일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절차 및 요령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는 예서에 보이는 엄밀한 의미의 초종절차이며, 실제의 관행은 예서와 차이가 있고 특히 현대에는 대부분의 장례를 가정이 아닌 병원 혹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관행에서 보통 임종은 본인이 사용하던 방에서 맞도록 하며, 이어서 속광을 한다. 숨이 끊어지면 곧 수시(收屍)를 하는데, 즉 눈을 감기고 손

은 배 위에 모아 엄지를 함께 묶고, 다른 한쪽 끝으로 엄지발가락을 함께 묶는 절차를 말한다. 이것은 염(殮)을 쉽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한편으로는 사자밥을 안마당에 차리며, 그 앞에서 죽은 이의 옷을 흔들며 주소와 함께 이름을 부르고 “복복복”하며 초혼을 한다. 이 옷은 시신 위에 덮었다가 뒤에 영좌에 둔다. 사자밥은 대문 밖에 차려 놓는데 지방에 따라 다르며, 밥·동전·짚신 등을 상이나 키에 세 개씩 놓는다. 그리고 마을이나 친척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으로 삼아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는 한편, 부고를 낸다. 남자 상제들은 머리를 풀고 흰 옷으로 갈아입는다. 시신은 시상판(屍床板) 위에 옮겨 움직이지 않도록 시상판과 함께 묶고, 창호지로 시상판과 함께 둘러 덮는다. 그 앞에 병풍을 치고 향상(香床)을 차린다. 향상 위에는 촛불과 함께 포(脯)를 올리고, 상주가 분향(焚香)하고 헌작(獻爵)하여 놓는다. 모든 상제들은 그 옆에 지키고 앉아서 조객을 받는다. 그리고 향과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객들은 상제들이 성복례를 하기 전까지는 향상(香床) 앞에서 분향과 헌작을 한 다음 곡만 한다. 밤이 되면 친지와 이웃사람들이 모여 안마당에 차일을 치고, 장작불을 놓아 밤샘을 한다. 여자들은 방에서 수의와 상복을 만든다.

이와 같은 예서와 관행에서의 초종의 절차는 현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다. 예전의 의학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사망 확인을 위해 속광을 했으나 지금은 모두 의학적으로 사망이 확인되기 때문에 속광의 본래 의미가 없어졌고 사망 이후 부패가 시작되면서 시신 내부의 불순물 혹은 병균의 유출과 외부로부터 시신 내부로 유입되는 각종 이물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학적이고 위생적인 소독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종의 장소는 병원이나 외부보다는 죽은 이가 평상시 주거했던 곳에서 임종을 맞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현대 도시화에 따른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사망 이후 장례에서 맞게 되는 손님 맞이 등에 대한 부담과 수명 연장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해서 대부분이 병원에서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병실에서 사망이 확인 되면 바로 병원 내 영안실로 옮겨지거나 전반적인 장례를 위한 전문 장례식장으로 옮겨져 사후 처리가 진행된다. 또한 고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초혼은 죽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살려 보겠다는 효심의 발로에서 출발하여 육에서 분리된 혼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여 혼백을 만들고 신주를 모시는 과거에서는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에서는 이미 의학적인 사망 판정 이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비과학적 의식이고 오래 전의 미신 혹은 주술적인 신앙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갓밥도 죽은 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 사자에게 죽은 자에 대해 잘 보살펴달라는 의미로 준비를 했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는 미신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외에 예제와 관행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상주가 여러 날 음식을 먹지 않는 고행의식과 오복(五服)의 복제 등 복잡하고 형식적인 예제와 의식이 모두 없어졌고, 초종례 전반에 걸쳐 크게 간소화되었다.

3.2.2 둘째 날

죽은 이를 목욕시켜 옷을 입히고 이불로 싸서 묶어 관에 넣고 성복의 절차가 진행된다. 고례에는 죽은 첫날 목욕과 습을 하고 소렴, 대렴을 다른 날로 바꾸어 했으나 3 일장을 치르는 현대는 동시에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로 숨을 멈추고 24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회생가능성이 있어 죽은 다음날 이 절차를 진행한다.

3.2.2.1 목욕 (沐浴)

일반적으로 습을 하기 위해 먼저 죽은 이가 임종 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시신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다. 이때 시상(尸牀)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안의 형편에 따라 바닥에 그대로 안치하는 것이 요즘에는 일반화되어 있다

죽은 이가 남자이면 남자 근친이, 죽은 이가 여자이면 여자 근친이 목욕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죽은 이의 험한 주검을 보면 놀라고 병환이 있던 경우 바로 부패가 진행되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전문 훈련을 받고 경험이 많은 장례지도사가 목욕을 시킨다. 험한 주검을 보면 놀랄 것이므로 목욕시키는 사람 외에는 밖에서 슬픔을 나타내며 대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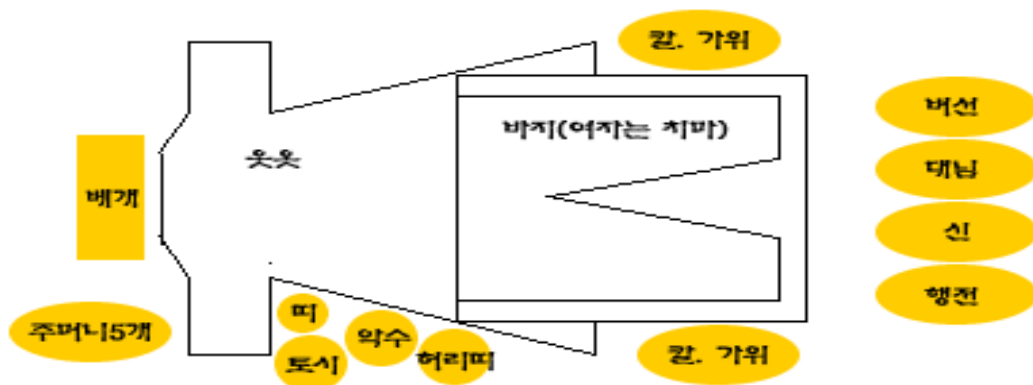
목욕을 시키는 절차는, 시자(侍者)가 먼저 자기 손을 깨끗이 씻고 향 탕과 물을 들고 들어가면 집상하는 사람들이 모두 휘장 밖으로 나와 북향하여 선다. 주검의 머리, 허리, 다리 쪽을 양쪽에서 들어 비닐위로 옮긴 다음 머리 쪽의 홰이불을 벗기고, 입에 물린 보침물을 빼고, 뜨물로 머리를 감기고, 마른 수건으로 닦은 다음 빗으로 곱게 빗기고 수건으로 닦아 상투를 트는데, 여상(女喪)인 때는 비녀를 쓴다. 끈으로 머리를 묶고 비녀를 옆에 가로놓은 뒤 떨어진 머리털을 거두어서 주머니 하나에 담는다. 죽은이가 평소 빠진 머리를 보관했으면 함께 담는다. 수시할 때 묶었던 끈을 풀고, 쭉 물로 세수시키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여자면 약간의 화장을 시킨 다음 홰이불로 얼굴을 덮는다. 죽을 때 입었던 옷과 복의(復衣)를 모두 벗기고 이불을 덮은 뒤 목욕시킨다. 만일 옷이 잘 벗겨지지 않으면 칼이나 가위로 잘라 낸다. 이때 칼, 가위, 수건 등 기구들이 시신의 위를 넘지 않게 한다. 그래서 2 개씩 준비한 것이다. 목욕의 순서는 먼저 얼굴을 닦고 다음에 손을 닦은 다음에 이불을 걷고 목욕을 시키는데, 상체로부터 하체에 이른다. 이때 상체와 하체를 씻는 물을 따로 쓰며, 수건도 상하를 따로 쓴다. 그리고 나서 명건으로 얼굴을 덮고 손톱과 발톱을 깎는다. 그 순서는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의 순이며 각각 다른 주머니에 담아 둔다. 이때에 빠진 수염이나 이가 있어도 따로 주머니에 담아 둔다.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 대렴(大斂)을 기다리며, 주머니 5 개와 칼, 가위만 남기고 모든 목욕 준비물과 벗긴 현 옷들, 목욕시키고 남은

물을 일정한 곳에 치운다. 구덩이를 파고 묻기도 하고, 묘지에 가서 태우기도 한다.

시자가 습상(襲牀)을 휘장(幃帳) 밖에 따로 설치하고 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놓은 뒤 들고 들어가서 시신을 그 위에 올려놓고 시상(尸牀)을 방의 중앙에 옮긴다. 처상(妻喪)일 경우 중앙에서 조금 옆으로 옮기고, 어린이는 가에 놓는다. 그리고 시신의 동쪽에 시령에 있던 음식을 전물(奠物)로 진설 하고 처음으로 전(奠)을 올린다. 집상하는 사람이 모두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에 서고 죽은 이와 친근관계에 따라 위치를 정해서 곡(哭)을 한다.

3.2.2.2 습(襲)

죽은 이의 목욕이 끝나면 습을 하는데 습은 목욕을 마치고 나서 죽은 이가 평상시에 입었던 새 옷으로 갈아 입히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죽었다면 존장부터 습을 하고, 하루나 이틀 사이를 두고 죽었다면 먼저 죽은 이부터 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도 목욕 시와 같이 죽은이가 남자면 남자 근친이 하고 여자면 여자 근친이 한다. 습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상석(牀席), 요, 베개, 탁자, 고인에게 갈아 입힐 옷, 충이(充耳), 명목(瞑目), 악수(幄手), 말(襪), 모(冒), 거포(擧布), 관분(盥盆), 세건(帨巾)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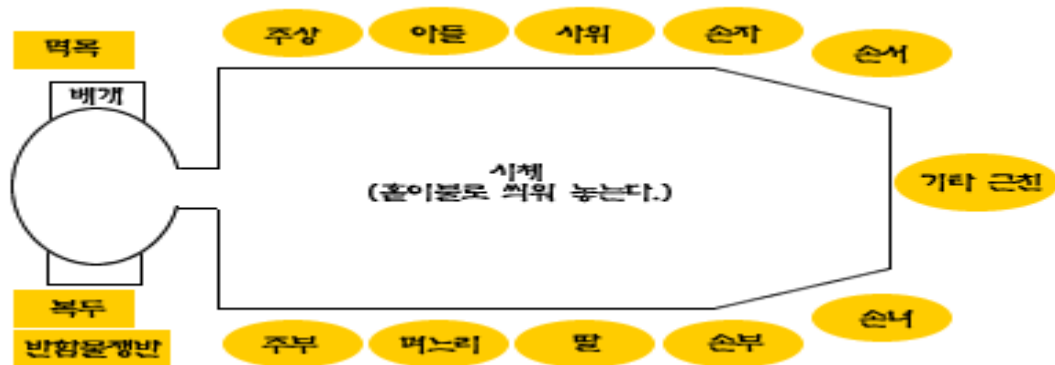
모든 옷을 단번에 입히기 위해서 옷옷은 속저고리부터 도포나 활옷까지 전부 겹쳐서 소매를 한데 꿰어 놓고, 아래옷은 속바지부터 치마나 겹바지까지 모두 겹쳐서 가랑이를 한데 꿰어 위의 그림과 같이 펼쳐 놓는다.

습의 순서는 시신의 머리, 허리, 다리 쪽을 좌우에서 조심스럽게 들어 펼쳐진 옷 위로 반듯하게 얹힌 다음 허리와 다리를 좌우에서 들고 훌이불을 떠들고 아래 옷 가랑이를 꿰어 입히고, 머리와 허리를 좌우에서 들고 훌이불을 떠들고 옷옷의 소매를 꿰어 입힌다. 옷옷이나 아래옷이나 섯을 여미는 방법은 산 사람과 반대로 왼쪽을 먼저 여미고 오른쪽이 위가 되게 나중에 여민다. 옷고름 허리띠와 띠를 매고 모든 끈은 다시는 풀 일이 없기 때문에 고(紐)를 내지 않는다. 손톱과 발톱을 깎아 주머니 5 개중 하나에 머리털을 넣고 남은 4 개에 좌우를 나누어 담는다. 만일 죽은이가 평소에 손·발톱을 모으던 사람이면 그것도 함께 넣는다. 버선을 신기고, 남자면 대님을 매고 행전을 치고, 신을 신긴다. 이어서 남자면 토시를 끼우고, 악수로 손을 싸서 묶은 다음 깨끗한 훌이불이나 천금(天衾)으로 시신을 덮는다.

3.2.2.3 반함(飯舍)

습이 끝나면 이어서 죽은 이의 입에 반함을 하기 위해 주상이 좌단(左袒)⁶⁰을 하고 손을 씻은 뒤 들어오면 모든 복인이 와서 아래 그림과 같이 정한 자리에 꿇어 앉는다. 이때 주부가 동전(貝) 3 개, 쌀, 구슬상자, 쌀 그릇, 버드나무 손가락 등을 담은 반함물 쟁반을 들고 발 쪽으로 돌아서 주상의 오른쪽에 꿇어앉으면 주상이 아닌 아들이 죽은 이의 머리를 들고, 주부가 아닌 며느리가 반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베개를 빼면 머리를 바닥에 놓는다.

⁶⁰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주인은 실(室)에서 나와 남쪽을 바라보고서 왼쪽 옷소매를 벗는데, 왼쪽 옷소매를 가슴 앞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띠에 끼운다.[主人出 南面左袒 扱諸面之右]”



그 뒤 주상이 반함 시에 얼굴에 쌀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길이와 폭이 같은 준비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반함을 하는데, 왼손으로 버드나무 손가락으로 쌀을 떠서 시신의 입 오른쪽에 쌀을 세 번 떠 넣고 구슬이나 동전을 넣으며, 왼쪽과 중간에도 똑같이 하여 입안에 가득 채운다. 남은 반함 준비물을 한쪽으로 치우고, 주부가 발 쪽으로 돌아서 왼 자리로 돌아와서 아들은 머리를 들고 며느리는 베개를 머리 밑에 베어준다. 손을 악수(握手)로 싸매고 깨끗한 솜으로 두 귀와 콧구멍, 아물지 않은 상처 등이 있으면 막아준다. 눈은 명목으로 싸맨 다음 머리는 두건, 복건, 방건으로 싰는다. 떡목(幘目)으로 얼굴을 덮어 끈으로 묶고, 신발을 신기며, 심의를 입히고 대대(大帶)를 맏으며 복두를 씌워 끈으로 묶은 다음 홀이불로 얼굴을 덮고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은 밖으로 나온다. 집상하는 사람이 습하는 곳에서 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영좌(靈座)를 만들고 혼백(魂帛)을 설치하면 습의 절차는 끝난다.

3.2.2.4 소렴(小殮)

소렴이란 작은 이불로 주검을 싸고 맏끈(束布)으로 묶는 것으로 죽은 뒤 습(襲)을 마치고 나서 뼈가 굳어 입관(入棺)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손과 발을 거두는 절차로 습을 한 다음날 즉 사망한 다음 날 아침에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집안이나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며 요즘에 와서는 당일에 하는 경

우도 가끔 있다.

소렴을 위해서는 먼저 시신에게 갈아 입힐 옷(수의)⁶¹과 이불 및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데 이때 옷은 죽은 이가 평소에 입었던 것을, 이불은 깃에 아무런 장식(紋)이 되어 있지 않은 다섯 폭의 홑이불⁶²을 사용하며, 장포(맬끈)은 가로 세 개, 세로 한 개를 쓴다.

소렴에 사용되는 기구는 상(牀), 자리, 요, 베개, 탁자, 이불, 장포, 상의, 산의(散衣), 명주, 새슴, 전판(剪板) 2 개, 장죽(長竹) 2 개, 이금(僕衾), 수건, 세숫대야 등이고 이 중 맬 끈은 울이 가늘고 다듬이질한 것을 쓰는데, 세로로 된 것은 한 폭의 길이가 약 열 자, 가로로 된 것은 약 넉 자 정도 되며, 각각 두 끝을 갈라 셋으로 다시 나눈다.

상의는 심의(深衣)와 같은 것이며, 내상(內喪)에는 단의(襜衣), 원삼(圓衫)같은 것이 있고, 산의는 도포와 저고리, 바지 등 잡의(雜衣)를 말한다. 작은 이불의 너비는 주검을 둘러서 쌀 수 있어야 하고(삼베라면 5 폭정도), 길이는 죽은 이 키의 배(약 4m)는 되어야 한다.

맬 끈은 끈의 너비에 따라 먼저 가로매는 몇 가닥을 놓던 폭을 연이은 길이가 죽은 이 키보다 약 50cm 는 더 길어야 하고(삼베라면 7 폭정도) 각 폭의 길이는 주검을 두르고서도 약 60cm 의 여유는 있어야 하며, 세로매는 죽은 이의 키의 배에 약 1m 정도는 더 길어야 한다. 먼저 가로매를 잇대어 깔고, 그 위에 세로로 세로매를 놓고 그 위에 작은 이불을 편다. 가로매와 세로매의 양끝을 모두 3 가닥으로 쪼개어 가로매가 7 폭에 21 가닥이 되도록 하고 그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⁶¹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모두 19 벌을 쓴다”[尊卑通用十九稱]로 되어 있으나 실제 옷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침구나 친척들이 소렴때 입힐 옷을 보내 왔다.

⁶²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홑이불은 5 폭으로 하되, 깃에는 아무런 장식[紋]·‘담(統)’의 음은 도(都)와 감(敢)의 반절이다. - 도 달지 않는다.” 하였다.



동남쪽에 탁자를 마련하고 안주와 잔을 준비한 뒤에 잔에 술을 따라놓고 세숫대야와 수건을 다른 탁자에 놓아 그 동쪽에 설치한다. 그리고 마승(麻繩), 면포(綿布), 포건(布巾), 잠(簪)을 준비한다. 시신이 있는 방의 동쪽 벽 아래에 탁자를 설치하여 소렴할 상을 준비하는데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깨끗한 돛자리와 요를 서계(西階)의 서쪽에 펴며, 장포와 이불과 옷을 들어서 시신의 남쪽에 놓고, 먼저 가로로 된 장포를 아래에 펴고 그 위에 세로로 된 장포를 깎다. 그 위에 이불을 펴고 다음에 상의, 그리고 산의를 편다. 이때 바르게 펴야 되며 고운 옷이 중간에 가야 한다. 장포(長布)를 편 다음 그 위에 지금(地衾: 시신을 쌀 겹이불)을 펴놓고 수의를 입히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겹옷 속에 속옷을 끼워서 펴 놓는다. 집사자가 영좌(靈座)의 서남쪽에 새로운 전물(奠物)을 설치하고 습할 때 사용한 전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소렴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모두 6 인으로 손을 씻고 이불을 걷은 뒤 주검을 조심스럽게 들어 작은 이불위로 옮기고 베개를 뺀 다음 구겨진 옷을 반듯하게 펴서 왼쪽을 먼저 여미고 그 위로 오른쪽을 여민다. 이때 남녀 모두 잡아준다. 시신을 옮겨 놓고 베개를 받쳐 주고 수의는 아랫도리를 먼저 입힌 다음 윗도리를 입힌다. 옷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미고, 고름은 감기만 할 뿐 매듭은 짓지

않는다. 두 손은 배위에 모아 흉사시의 공수를 시키고 주머니 5 개를 각기 주머니에 담은 내용물(머리털, 손·발톱)의 위치에 놓는다. 이불을 먼저 발 쪽을 여미어 이불 끝이 배 위에 오게 하고, 다음에 머리 쪽을 여미어 이불 끝이 배 위에서 발 쪽의 끝과 맞닿게 하고, 다음에 왼쪽을 여미고 끝으로 오른쪽을 여미어 썬다. 세로매를 배 위에서 모아 세로매 끝의 3 가닥 중에서 아래와 위의 왼쪽 가닥을 먼저 묶고 다음에 오른쪽 가닥을 묶고 끝으로 가운데 가닥을 묶는다. 가로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묶어 내려가는데 첫째 가닥은 목지 않고 왼쪽을 여미고 오른쪽을 다음에 여며 머리를 보기 좋게 싸고, 이어서 둘째 가닥도 왼쪽을 먼저 여미고 오른쪽을 다음에 여민 다음 셋째 가닥을 위 두 가닥을 여민 위의 중앙에서 고를 내지 않고 새끼 꼬듯이 비틀어 꼴으면 된다. 이때 턱밑, 어깨 위, 팔과 몸 사이, 두 다리 사이, 발등 위 등 빈 곳을 헌 옷, 황토를 썬 창호지, 솜 등을 끼워 넣어서 시신을 반듯하게 하고 묶을 때 몸이 상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하여 계속해서 묶어 내려가는데 마지막의 발 쪽도 일곱째 폭의 3 가닥중 제일 아래 2 가닥은 머리 쪽 같이 여미기만 하고 묶지 않고, 3 째 가닥만 묶는다. 전체 7 폭에 21 가닥인데 머리와 발쪽 2 가닥씩, 합해서 4 가닥은 묶지 않고 여미기만 하므로 묶은 매듭은 모두 17 매듭이 되고 모든 매듭은 다시 풀 일이 없기 때문에 고(紐)를 내지 않으며 매듭이 위에서 아래로 일직선이 되고 고르게 묶는다. 이렇게 묶는 이유는 나중에 관 속에서 시신이 썩어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수의를 입히는 동안 상제들은 곡을 하지 않는다. 염이 끝난 뒤 상주와 주부는 시신의 옆에서 곡(哭)을 하는데, 상주는 시신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곡을 하고 주부는 시신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곡을 한다. 죽은 사람의 자식은 부모를 더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신에 기대어 울고, 손아랫사람은 집안 어른이 돌아 가셨으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는 의미에서 시신을 붙들고 울며, 손윗사람은 이제 자신이 이 끌어 가겠다는 의미에서 시신을 잡고 운다. 죽은 사람의 며느리는 시신을 받들어

잡고, 시어머니일 경우에는 시신의 가슴 언저리를 어루만지며 곡을 한다⁶³. 그러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한다.⁶⁴ 남자로 참쇠(斬衰)에 해당하는 상주는 한쪽 어깨를 벗고 머리를 풀며, 자쇠(齊衰)를 입는 복인은 머리만 푼다. 부인도 머리를 푼다. 옛날의 예법에 의하면 부모가 처음 죽었을 때 비녀를 노출시키고 염이 시작될 때 비녀를 뽑고 소관(素冠)을 썼으며 염이 끝나면 소관을 벗고 삼끈으로 묶었는데, 지금은 두건을 벗고 마면(麻冕)을 쓴다. 한참 곡을 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시상(尸狀)을 방 한가운데로 옮긴 뒤 준비해 두었던 전상(奠床)을 영좌 앞에 놓고 분향한 뒤 잔에 술을 따르고 모두 재배한다. 이때부터 대렴(大殮) 때까지는 곡이 그치지 않아야 한다. 옛날에는 대곡이라 해서 유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곡을 했고 최근 일부 가정에서는 외부로부터 곡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기도 했으나 이는 효의 표현이 아니고 형식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어 자연스럽게 슬픔을 표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에는 습과 소렴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렴, 습의를 동시에 준비하여 한꺼번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가로매 7 폭을 놓고, 그 위에 세로매 1 폭을 길게 놓고, 그 위에 소렴금을 펴고, 소렴금 중앙에 수의를 펴고, 시신을 옮겨 습의를 하고, 반함을 한 연 후에 그 자리에서 소렴을 하면 시신을 옮기는 회수가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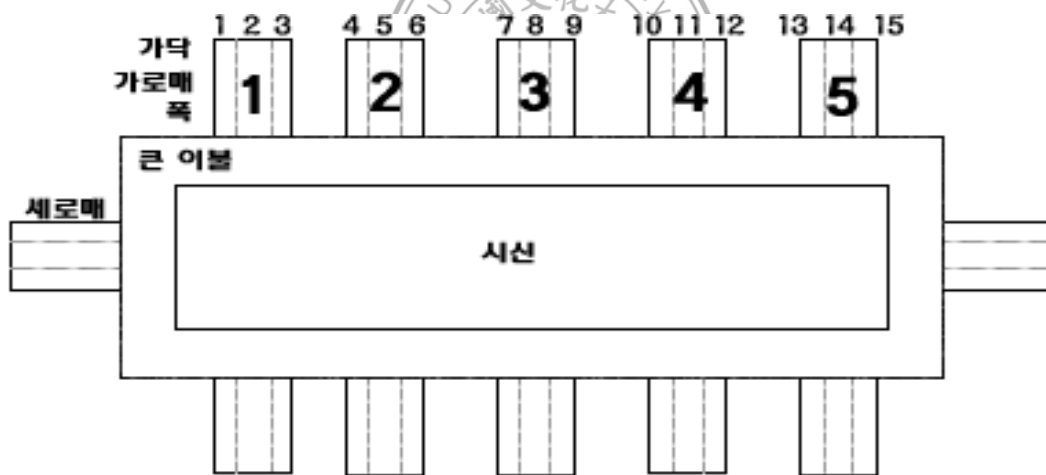
⁶³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임금은 신하의 시신을 어루만진다. 부모는 자식의 시신을 부여잡는다. 자식은 부모의 시신에 기댄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시신을 받들어 잡는다. 시부모는 며느리의 시신을 어루만진다.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잡고 끈다. 남편은 아내나 형제의 시신을 부여잡는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어루만진다’는 것은, 시신의 가슴 부근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부여잡는다’는 것은, 시신의 옷을 부여잡는 것이다. ‘기댄다’는 것은, 몸을 구부려서 시신에 기대는 것이다. ‘받들어 잡는다’는 것은, 시신의 옷을 받들어 잡는 것이다. ‘잡고 끈다’는 것은, 시신의 옷을 살짝 잡고서 고는 것이다. 이상은 모두 가슴 주위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틀어서 말하면 모두 ‘시신에 기댄다’고 한다.” 하였다.

⁶⁴ 《예기》 잡기에 또 이르기를, “형수는 시동생의 시신을 만지지 않고, 시동생은 형수의 시신을 만지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혐의스러운 것을 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3.2.2.5 대렴 (大斂)

대렴은 장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소렴을 한 시신을 입관하기 위해 큰 이불로 주검을 싸고 맬 끈으로 묶는 것으로 큰 이불의 크기와 맬 끈의 길이 등은 소렴 때와 같다. 먼저 맬끈 가로매 5폭을 깔고, 그 위에 세로매 1폭을 깔 다음, 그 위에 큰 이불을 편다. 각 맬 끈의 3 가닥을 쪼갠다. 그러면 가로매는 5 폭에 15 가닥이 된다. 예전에는 소렴을 한 다음 날, 즉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당일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치르도록 한 것은 대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점도 있으나, 행여라도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사흘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것은 옛날 사람들의 사망의 확인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대렴을 위한 준비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대렴의 절차로는 먼저 관을 들고 시신을 안치한 방에 들어가 방 가운데서 조금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놓고 집사자는 먼저 영좌(靈座)와 소렴전(小殮奠)을 관 옆에 옮겨놓는다. 만약, 죽은 자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든지 어린이인 경우 별실에서 따로 행한다. 종사(從事)하는 사람과 자손, 부녀자들은 모두 손을 씻고 시신을 대렴상(大殮床) 위에 옮긴 뒤 베개를 빼고 이불을 걷은 다음 큰 이불을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순으로 여미고, 세로매를 배 위에서 왼쪽 가닥, 오른쪽 가닥, 가운데 가닥 순으로 묶는다. 가로매는 머리 쪽 첫 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닥은 묶지 않고 왼쪽 오른쪽의 순으로 여미기만 하고 세 번째 가닥부터 중앙에 모아 묶는 것은 소렴 때와 같이 하여 전체 매듭 수는 가로매 5 폭 15 가닥중에서 4 가닥은 여미기만 했으니까 모두 11 매듭이 된다. 주검의 상중하에 삼베나 무명은 폭을 길이 4m 정도씩 잘라 들 끈을 3 가닥 만들어 놓으면 입관이나 묘지에서 시신을 하관할 때 편리하다. 시신을 옮기거나 널을 움직일 때와는 달리 염할 때에는 곡을 그쳐야 하고 염은 주인과 주부가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

3.2.2.6 입관(入棺)

입관은 대렴까지 한 주검을 관에 넣는 일로 먼저 발의 높이가 3~4 치 정도로 관을 올려 놓는 받침대, 벗짚을 태워 만든 재 또는 숯가루, 백지, 칠성판, 물 들인 명주로 길이와 너비는 칠성판에 맞추어 만든 지요(地褥), 물들인 명주로 만든 베개, 말아서 관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한 옷가지, 물들인 명주로 만든 이불, 관을 덮기 위해 무명베로 겹은 검정색, 속은 붉은색으로 만든 구의(柩衣)등을 준비한다.

대렴이 끝나면 상중하에 받침대 위에 관을 위가 북쪽이 되게 올려놓고, 뚜껑을 열어 마른 수건으로 널 안을 닦은 뒤에 벗짚 재나 숯가루를 고루 펴고 사방에 백지를 빈틈없이 덮는다. 그 위에 칠성판, 지요를 깔고, 머리 쪽에 베개를 놓은 다음, 들 끈을 들어 주검을 관 안에 모신다. 이 때는 매우 조심하여 시신이 모로 되거나 조금이라도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살아 있을 때 모아두었던 머리털과 이 [齒], 그리고 소렴 전에 목욕시킬 때 빠진 머리털이나 깎은 손톱과 발톱도 함께 관의 모서리에 넣어둔다. 그리고 틈이 나거나 빈 곳은 죽은 이의 옷을 말아서 채워 시신을 고정시킨다. 이때 본인이 사용하던 패물이나 금붙이 같은 것을 관에

넣는 일이 귀족사회에서는 흔히 있었는데, 예(禮)에서는 이를 금하고 있다. 만약, 금은과 보배를 넣은 사실이 밖으로 알려져 도둑들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면 시신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입관의 절차가 끝나면 천금(天衾)을 덮고 들 끈을 천금 위에 서려서 놓고 흰 종이로 덮은 다음 빈 곳을 흰 옷 등으로 보침(메움)한다. 상주와 주부가 들어와 관을 잡고 슬피 곡을 마치고 부인들이 상차(喪次)로 돌아가면 장인(匠人)을 시켜서 뚜껑을 덮고 은정(隱釘 : 나무못)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틈은 옷칠을 해서 메운다. 그 뒤 상을 견어치우고 옷으로 관을 덮는데, 먼저 두꺼운 종이로 싸고 끈을 꼬아서 관을 묶는다. 그것도 계절에 따라 다르게 하는데, 겨울철에는 두꺼운 가죽이나 솜 같은 것으로 두껍게 싸며 기름종이나 밧줄을 가지고 묶은 뒤 다시 이불을 덮는다. 든든한 끈으로 관의 상중하를 묶은 다음 역시 들 끈을 상중하에 만든다.

방의 동쪽에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관을 안치하고, 관 앞에 병풍을 둘러친 다음 발치 쪽에 명정을 세우며 사진에 검은 리본을 걸쳐 영좌를 다시 설치한 다음 상주는 막차(幕次)로 돌아오고 부인 두 사람을 그 곳에 머무르게 하여 관을 지키게 한다. 시신을 옮기고 관을 들 때는 모두 소리 내어 슬피 통곡하여야 하지만, 소·대렴을 할 때는 곡을 그치고 시신과 소·대렴의 절차를 자세히 지켜본다.

3.2.2.7 혼백(魂帛)

혼백이란 죽은 이의 혼령이 깃들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삼베, 모시, 명주 온 폭으로 약 70cm 정도로 혼백을 접는다. 접은 혼백의 중앙부분에 3 cm 너비의 백지로 이음매 붙이는 곳이 뒤에 가도록 띠를 두르고 앞의 중앙에 ‘上’자 표시를 하여 언제든지 ‘上’이 서쪽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혼백이 완성되면 백색 두꺼운 종이로 상자를 만들고, 복·초혼(復·招魂)을 한 죽은이의 옷(복을 안 했으면 죽

은 이의 위 속옷)을 흰 종이로 싸서 상자에 담고, 그 위에 혼백을 얹고, 뚜껑을 덮는다. 혼백 상자를 영좌의 사진 앞에 모시고 뚜껑을 열어 놓는다

3.2.2.8 성복(成服), 성복례(成服禮)

성복이란 주상·주부 이하 모든 복인들이 상을 당한 뒤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 등을 마친 뒤 상복으로 갈아입는 절차로 고례에는 반드시 대렴을 한 다음날에 성복을 한다고 했으나⁶⁵ 3일장을 치르는 현대는 대렴과 입관한 즉시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은 다른 방에서 정해진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망건을 벗고 두건(孝巾)을 쓰며 중복 인은 머리와 허리에 짚과 삼으로 만든 테를 띠고 지팡이를 짚는다. 그 동안 풀어 내렸던 머리는 걷어 올리고 맨발이었던 발에도 버선이나 양말을 신는다. 한복을 입은 경우 한쪽 팔을 뺐던 소매도 제대로 꿰어 입는다.

복인들이 정해진 상복을 입고 나면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슬픔에 젖어서 조문하지 못했으므로 복인들이 조문하는 절차인 성복례를 실시한다. 고례에는 아랫사람이 차례대로 웃어른 앞에 조문했으나 현대는 남녀 복인간에 조문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집례(集禮)가 영좌 앞의 제상에 술, 과실, 포, 젓갈 등 제수를 차리고 남자는 영좌 앞에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여자는 서쪽에서 동향해 서는데 이때 서는 순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오복제(五服制)의 참취, 자취, 대공, 소공, 시마 순으로 영좌에 가까운 위치에 차례대로 선다. 집례가 분양하고 술을 따르면 남자는 서고 여자는 꿇어 앉아 극진히 슬픔을 표한 다음 윗대 어른이 북쪽에서 남향해 서고, 손 아래 복인들이 남쪽에서 북향해서 큰절로 겹 절을 한다. 남자는

⁶⁵ 《예서(禮書)》에 의하면 상복은 대렴한 다음날, 즉 죽은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은 상을 받드는 기간을 단축하여 3일장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대렴이 끝나면 곧바로 상복을 입는다. 전통 상복을 입는 대신 간소한 옷을 입는데, 남자는 검은 양복에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고, 여자는 흰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흰색 버선과 고무신을 신는 경우가 많다.

서쪽의 여자를 향해 두 번 절하고 여자는 동쪽의 남자를 향해 네 번 절한다. 고례에는 절을 하지 않고 곡을 했으나 현대의 도시생활에서는 곡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절하는 것이고, 엄숙 경건한 의식이므로 겹 절을 한다. 고례에는 성복례를 지낸 다음에나 외부의 손님을 맞았었다.

이때 망인보다 서열이 위가 되는 어른이 생존해 있으면 모든 자손들이 그 어른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곡하고 부인 어른에게도 이와 같이 한다. 이때 부녀자들도 남자의 예에 따라 바깥 어른과 안 어른을 찾아 뵈고 슬피 울면서 곡을 한다.⁶⁶

옛날에는 신혼곡(晨昏哭)을 하는 이른 아침에 성복을 하기 때문에 절은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풍속이 크게 변해서 대부분 아침 상식(上食) 때 성복을 하게 되므로 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의 본래의 뜻과는 어긋난다. 그런데 상중에 또 상을 당할 경우 죽은 이와 관계에 따라 또 다른 상복을 입어야 한다.

3.2.2.9 상복

상복은 죽은 이를 기리고 애도하며 근신하는 근친들이 상장례 기간 동안 입는 옷으로, 고대에는 죽은 이와 친소관계, 존비관계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 복식을, 정해진 기간동안 입었다.

현대에는 상례 간소화를 위한 가정의례준칙에 의해 고례에 입었던 상복 착용을 금지시키고, 한복 또는 검정색 양장을 기본으로 죽은 이와 친소원근에 따라 상장(喪章)으로 표시를 하고 있으며 상복기간도 장례일 까지만 하고 있다.

⁶⁶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여러 자손들은 조부의 앞과 제부(諸父)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그런 다음 다시 조모의 앞과 제모(諸母)의 앞에 나아가서도 앞에서와 같이 곡한다. 여자들은 조모와 제모의 앞에 나아가서 곡하며, 조부와 제부의 앞에 나아가서 남자들이 한 예법대로 곡한다. 주부 이하는 백숙모의 앞에 나아가서 곡하기를 역시 위와 같이 한다. 이를 마치고는 자리로 돌아온다.” 하였다.

현대생활에는 적합하지 못해 이미 자취를 감춘지 오래 되었으나 고대문헌에 나타나 있는 상복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고례의 『예기』 삼년문에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3 년의 상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불초한 자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고, 어진 자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하였고⁶⁷ 공자의 말씀에 “자식이 태어난 지 3 년이 된 뒤에라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떠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답으로 3 년의 상을 천하의 달상”이라고 하였다.⁶⁸

기타 친족들은 죽은이와의 친함 정도, 준비의 차등, 이름과 출가여부, 장유 및 종복의 관계에 따라 여섯 가지 방도로 구분하고 종복은 또다시 관계에 따라 여섯으로 구분 하였다.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상을 당하여 복을 입는 데에는 여섯 가지 방도가 있다. 첫째는 친족의 친함 정도에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준비의 차등에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어머니나 처의 친족일 경우 그 이름의 차이에 따르는 것이고, 넷째는 여자로서 아직 집에 있느냐 이미 출가하였느냐의 차이에 따르는 것이고, 다섯째는 장유의 차등에 따르는 것이고, 여섯째는 종복이기 때문에 정식 상복과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다. [服術有六 一曰親親 二曰尊尊 三曰名 四曰出入 五曰長幼 六曰從服]”⁶⁹

⁶⁷ 《예기》 삼년문(三年間)에 이르기를,

불초한 자는 정이 너무 박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아침에 죽었는데도 저녁이 되면 이미 잊어버린다. 그러니 만약 그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서 그가 미치지 못하는 점을 예로써 권면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아 새나 짐승만도 못하게 된다. ... 중략 ... 이에 반해 어진 자는 정이 너무 후하여서 25 개월이란 상기(喪期)가 지나가는 것을 천리마가 좁은 틈 사이를 지나가는 것보다도 더 빠르다고 여긴다. ... 중략 ... 그러므로 선왕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중도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미치지 못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도록, 상복을 입는 연월의 한계를 제정한 것이다. 만약 이 예법보다 더 지나치게 하면 불초한 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바가 있게 되고, 이 예법에도 미치지 못하게 하면 어진 자가 마음에 차지 않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 하였다.

⁶⁸ 삼년문에 또 이르기를,

“9 개월 이하로 정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것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 년을 용후한 것이라고 하고, --- 중략 --- 위로는 하늘에서 형상을 취하고, 아래로는 땅에서 법을 취하고, 중간으로는 사람에게서 법칙을 취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자식이 태어난 지 3 년이 된 뒤에라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떠난다. 대체로 3 년의 상은 천하의 달상(達喪)인 것이다.’ 하였다.”

⁶⁹ 김장생 저, 정선용역, 상계서, 성복(成服)

《예기》 대전에 또 이르기를,

“종복에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친속 관계에 따라서 입는 속종(屬從)이고, 둘째는 괜히 따라서 입는 도종(徒從)이고, 셋째는 상복이 있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상복이 없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있는 것이고, 다섯째는 상복이 중한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가벼운 것이고, 여섯째는 상복이 가벼운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중한 것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속(屬)’은 친속(親屬)을 이른다.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친족의 상복을 입고,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 친족의 상복을 입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아내 친족의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속종’이다.

옛 상례의 복상제도에서 상제가 입는 상복의 종류에는 참취(斬衰), 재취(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總麻)의 5 복(五服)⁷⁰이 있어서 형태와 옷감의 재료, 죽은 이와 관계에 따라 상복 입는 기간(오복종류에 따라 가장 무거운 3년에서 3개월까지), 먹고 주거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달리 하였다.

참취는 3년, 재취는 친족, 인척의 친소에 따라 3년, 1년, 5개월, 3개월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공 9개월, 소공 5개월, 시마 3개월 등으로 각기 다르고 보통 같은 고조에서 현손까지, 또 일가친척에서는 8촌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상복을 입는다.

참취복은 거친 베로 만들고 아래 단을 꿰매지 않으며 대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3일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며 출상 시까지 침고침피에서 자면서 3년동안 복을 입는데 정상적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 모든 자녀가 입었고,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 할아버지나 증조부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장손이 입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 할아버지의 상을 당한 장손이라 하여도 나쁜 병이 있어서 사당에 제사 지내지 못하거나 서손(庶孫), 서자(庶子)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한 사람 등은 참취복을 입지 못했다. 또한 시부모가 죽었을 때 며느리와 아버지가 안 계신 남편이 할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을 때 그 부인도 참취를 입

⁷⁰ 5복제도는 고려 초기인 985년(성종 4)에 법제화되었다가 말기인 1391년(공양왕 3)에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본떠 일신하여 국법으로 엄격하게 지켜져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경국대전》에 그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었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의 지위를 따라 입은 중복이고 이처럼 정상적인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 즉 의리로 맺은 성(姓)이 다른 친족에 대한 복상으로 입는 것을 의복(義服)이라고 한다. 아들이 아버지상을 당하여 상복을 입다가 나쁜 병에 걸려 상주 노릇을 못하거나 초상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소상(小祥) 전에 죽으면 부득이 그 아들이 상복을 받아 입고 주상(主喪) 노릇을 하는데, 이것을 대복(代服)이라 한다.

재취(齊衰)복은 굵은 삼베로 만들고 참취와 달리 아래 단을 꿰매고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고 3 끼를 먹지 않으며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 모든 자녀, 조모, 증조모에 대하여는 장손이 3년 복을 입었다. 이 외에 지팡이를 짚고 식사는 2 끼만 먹지 않으며 죽은 이의 배우자, 아버지가 살아 계신 상태에서 모친상의 자녀, 아들 딸, 며느리 상의 부모가 입는 재취장기(杖菴) 12 개월, 지팡이를 짚지 않은 채 죽은이의 손자, 조카, 형제들이 입는 재취부장기 12 개월, 지팡이 없이 증손자가 입는 재취 5 개월, 현 손자가 입는 재취 3 개월등이 있다.

대공(大功)은 보통 삼베로 만들어 9 개월을 동안 죽은 이의 2 촌 존속과 3 촌 비속 및 그 배우자, 4 촌 형제자매들이 입으며, 소공(小功)은 죽은이의 3 촌 존속과 4 촌 비속, 6 촌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5 개월동안 입고, 시마(總麻)는 고운 삼베로 만들어 죽은 이의 8 촌 이내의 존, 비속 형제자매, 사위, 재당질, 이종, 내외종 및 그 배우자와 기타 죽은이를 애도하는 사람이 3 개월 동안 입었다.

장기(杖菴)는 상제가 지팡이를 짚는다는 뜻으로 대체로 직계에 해당되며, 부장기는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는 뜻으로 방계(傍系)가 이에 따랐다. 머리에는 효건(孝巾: 두건) 위에 상관(喪冠: 굴건)을 쓰고 수질을 매며 발목에는 행전(行纏)을 치고, 짚신을 신으며, 일년 이상 복을 입는 사람의 경우 지팡이를 짚는다.⁷¹

⁷¹ 상복(喪服)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둥근테 삼과 짚을 꼬아서 테를 만들어 남자는 두건, 굴건과 함께 쓰고 여자는 수질만을 쓴다. 수질에 다는 끈은 참취(斬菴)에서는 승영(繩纓), 재취(緘菴)에는 포영(苞纓)으로 하되 소공 이하는 없다. 종류로는 참취의 수질과 재취의 수질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질 [首經] [모발학 사전, 2003.5.22, 광문각]

지팡이는 참최복을 입는 사람은 대나무로 된 것으로 짚고, 재최복을 입는 사람은 오동나무로 된 것을 짚는다. 여자도 깃 치마와 깃 저고리에 중단을 입고 제복을 입은 위에 수질과 허리띠를 매고, 짚신을 신는다. 어린아이는 건을 쓰지 않으며 수질도 없다. 《가례 (家禮)》에는 어린아이라도 3년복을 입을 경우에는 상장을 짚는다고 하였다.

성복을 하고 나면 아침저녁으로 빈소(殯所)에 전(奠)을 올리며 정식으로 문상을 받기 시작한다.

3.2.2.10 조문-조상·문상(弔喪·問喪)

고례에는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상복을 입고, 서로 조문하는 성복례를 치르기 전에는 외부손님의 조상이나 문상을 받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3 일장에 따른 장기단축으로 인해 죽음을 알면 즉시 조상과 문상을 한다. 특히 가까운 친척, 친지 가운데서 상을 당한 연락이 오면 가급적 빨리 상가에 가서 상제를 도와 장의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상가에 가면 우선 상제들을 위로하고 장의 절차, 예산관계 등을 상의하고 할 일을 서로 분담하여 책임감 있게 수행해 준다. 그러나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일 저일에 참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영위에 분향재배하며, 상주에게 정중한 태도로 예절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상(弔喪)은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으로 손님이 영좌 앞에서 죽은 이에 슬픔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자가 죽은 상(喪)에 인사하는 것을 말하며(弔客錄에 기록) 문상(問喪)은 근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묻는다는 뜻으로 손님이 죽은 이에 대해서는 인사하지 않고 주상, 주부 이하 복인에게만 죽음을 위문하기 때문에 여자가 죽은 상(喪)에 인사하는 것을 문상이라 한다(弔慰錄에 기록). 성복례를 하기 전에는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슬픔으로 경황이 없어 조상, 조문을 하지 않고 호상소에만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현대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죽음을 알면 즉

시 조상도 하고 문상도 한다. 따라서 조상과 문상을 합해서 슬픔을 나타내고 위문도 한다는 뜻으로 조문(弔問)이라 한다.

조문을 위해 상가에 도착하면 외투는 대문 밖에서 벗고 호상소로 가서 조객록이나 조위록에 자기의 주소 성명을 기록하고 호상소에서 인사하고 영좌 앞으로 안내를 받아가면 상제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다.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의 신위 쪽에서 볼 때 왼편으로 상주가 늘어서고 안상주들은 오른편으로 서는데 장소가 좁다면 상주의 뒤쪽에 서서 조객을 맞이하고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일어나서 흥사시의 공수⁷²를 하고 슬픔을 나타낸다.

조문객은 영정 앞에 애도를 표하고 나서 약간 뒤로 물러나서 상제가 있는 쪽을 향해 서면 상제가 먼저 경례 또는 절을 하면 손님이 맞절 또는 답배를 한다.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오는 것이 더욱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되나 굳이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또는 “뭘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가 좋고 상주도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올릴) 말씀이 없습니다.”하여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된다. 조문할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공손한 자세로 물러나고, 만일 한가하면 잠시 다른 위문의 인사를 할 수도 있다. 상제는 영좌를 모신 방을 지켜야 함으로 조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3.2.2.11 부의(賻儀)

사람의 죽음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즐지에 상을 당한 상가를 돕기 위해 상장절차에 소용되는 물품이나 돈을 형편에 맞게 부조하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고, 그것을 부의라 한다. 부의는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앞서야 하므로 깎듯한 예를 차려야 한다. 물건이나 돈을 불쑥 내놓기 보다 일정한 격식을 차리는데

⁷² 공수(拱手·손을 앞으로 모으는 것)는 흥사이므로 남자는 오른손이,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포개 잡는다.

그것이 물목기(物目記)이다. 조위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賻儀)’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밖에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臺)’라고 쓰기도 한다.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또는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한다. 조위금 봉투 안에는 부조하는 흰 종이에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단자(單子)를 쓴다. 부조하는 물품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 쓰고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하며, 단자의 마지막 부분에 ‘○○택(宅) 호상소 입납(護喪所入納)’이나 ‘○상가(喪家) 호상소 귀중’과 같이 쓰기도 하나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물품이면 ‘賻儀品 麻布壹疋’등 사실대로 품명과 수량을 쓴다.

부의금품은 주상이나 복인에게 영좌 앞에서 주지 않고 반드시 호상소에 내놓아야 한다. 최근에는 영좌에 부의함(賻儀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수 있는데 부의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큰 잘못이다.



3.2.3. 셋째 날

셋째 날은 일반적으로 장례의 마지막 날로 치장(治葬)을 한다. 치장이란 주검을 땅에 매장하든지 아니면 화장하여 납골하든지 죽은 이에 대한 마지막 갈무리를 하는 절차로 시기는 고례에 의하면 죽은 때부터 치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지위가 낮은 선비가 죽으면 유월장(踰月葬)이라 해서 죽은 달과 장례 치르는 달 사이에 한 달을 두어 2월에 죽었으면 3월을 건너뛰어(踰月) 4월에 장례를 치렀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3월장(三月葬)이라 해서 죽은 달을 빼고 3월, 그러니까 2월에 죽었으면 5월에 장례를 치렀으나, 현대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 3일장을 강제한 이후 현재는 강제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3일장이 보편화 되어 죽은 다음 다음날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

나 3 일장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사망 시간이 밤 늦은 시간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해외에 있는 자손의 참석을 기다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3 일을 초과해서도 하고 있다. 현대의 3 일장에서 마지막 날에는 발인과 운구, 그리고 매장 혹은 화장 이후 납골을 진행하고 귀가한 후 각자의 종교나 집안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반혼제를 드린다.

3.2.3.1 발인

영구(靈柩)가 집을 떠날 때 영구(靈柩)앞이나 영구차 앞, 혹은 장례식장에서 행하는 의식으로 유교적인 전통방식 이외에 각 종교방식에 따른 의례가 진행된다. 종교에 따라 제물을 생략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제물을 차려 놓고 개식, 각 종교에 따른 의례, 약력소개, 종교 의례, 추도, 분향, 헌화, 폐식의 순으로 진행한다. 발인에 앞서 가문에 따라 죽은이가 묘지를 향해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조상을 뵈는 절차로 주상 이하 모든 복인들이 관 앞에 차례대로 서고 집례가 천구고사(遷柩告辭)를 아뢰는 조우조(朝于祖)⁷³, 사당 앞으로 명정, 혼백, 관, 주상, 주부, 복인의 순으로 옮겨 배설하고 집례가 영좌 앞에 꿇어앉아 조조(朝祖)고사⁷⁴를 아뢰면 주상 이하 복인들이 극진히 슬픔을 나타낸 다음 본래의 자리로 옮겨서 다시 영좌 앞에 상을 차리고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어 죽은 이가 살던 집에서 마지막으로 대접받는 절차인 조전(祖奠)⁷⁵을 지낸다. 조전을 마친 다음 영구차에 죽은 이를 모시기 위해 조전상을 물리고 집례가 천구고사⁷⁶를 아뢰고 관을 조심스럽게 영구차에 싣는다. 그러나 현대에는 거의 사당이 없거나 통상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례에 행해졌던 대부분의 제례의식은 생략이 되고 바로

⁷³ "이제 장례를 뒤흔 날이 되었사옵기 관을 옮기고자 감히 아뢰나이다."

⁷⁴ "청하나이다 조상 신위 앞에 떠나는 예를 드리소서."

⁷⁵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행하겠나이다. 혼령께오서 오래 머무실 수 없으시기에 이제 영구차에 받들어 모시고자 하나이다."

⁷⁶ "이제 옮겨서 관을 영구차에 모시겠기에 감히 아뢰나이다."

영구차에 시신을 옮긴 다음 영구차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상을 차린 후 주상 이하 모두가 정한 자리에 서면 집례가 술을 올리고 견전고사⁷⁷를 아뢰면 장지에 가지 않고 남아 있을 사람만 절한다.

3.2.3.2 운구(運柩)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로 종교와 지방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영정(사진), 영구, 상주, 친척, 문상객의 순으로 뒤를 따른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 요즘의 장례행렬은 영구차에 함께 타고 가지만 고례에는 현대의 선도차(先導車)에 해당하는 방상씨(方相氏)가 맨 앞에 서고 누구의 장례행렬인가를 나타내는 깃발인 명정(銘旌), 혼백(魂帛), 여러 가지 색깔의 천에 죽은 이를 기리고 슬퍼하는 글을 쓴 깃발인 만장(輓章), 장내에 2m 거리의 삼베천을 매달아 길이 좋고 나뭇을 알리는 신호기 역할을 하는 공포(功布), 관을 실은 영구차, 주상, 복인, 호상과 손님이 차례대로 따른다. 요즘은 거의 행하지 않으나 장례행렬이 죽은 이의 연고지나 친지가 사는 곳을 지날 때는 멈추어 사실을 고하는 제례의식을 치르는 것을 노제(路祭)라 하고 노제의 제주는 주상이 아니고 노제 지내는 곳의 연고자가 된다.

3.2.3.3 구지(柩至), 매장 및 화장 신고

가. 구지(柩至)

장례행렬이 묘지에 도착하면 묘지의 남쪽에 관의 상(上)이 북쪽을 향하게 모시고, 관의 서쪽에 북쪽을 향해 영좌를 설치하고 명정으로 관을 덮는다. 장소가 마땅치 못하면 관의 상이 서쪽을 향하게 모시고, 그 앞에 영좌를 차린 다음 주상

⁷⁷ 혼령을 이미 영구차에 모셨사오니 이제 가오시면 영면하실 묘지이옵나이다.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올리오니 이제 가시면 영원하시나이다.”

이하 남자 복인들은 묘지의 동쪽에서 서향 해 서고, 주부 이하 여자 복인들은 묘지의 서쪽에서 동향해 서서 슬픔을 나타내고 이어서 영좌 앞에서 손님을 맞는데 이것을 구지(樞至)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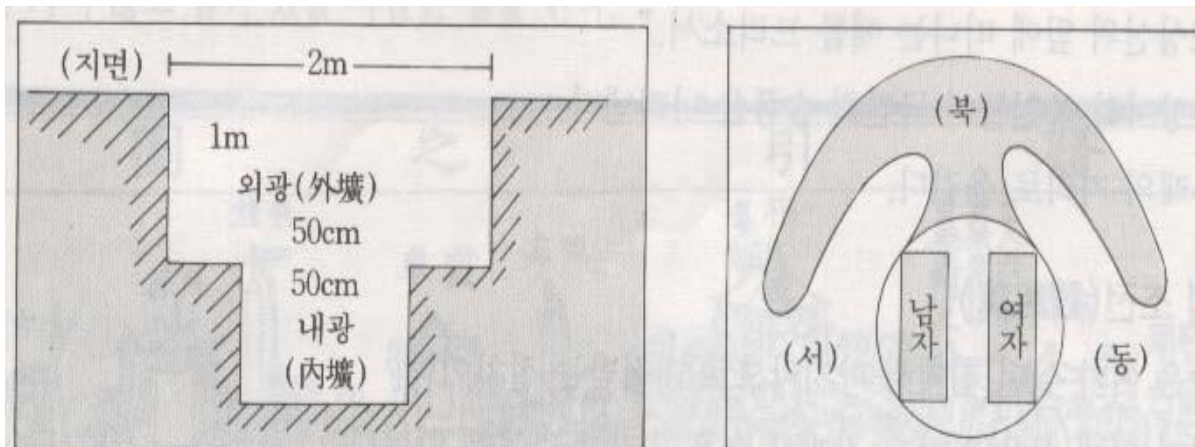
나. 매장 및 화장 신고

매장을 위해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 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공원묘지 비치) 1부, 죽은 이 증명사진 1매 등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을 하도록 하고 화장장일 경우 사망진단(시신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화장 서류를 접수한 후 화장로로 운구하여 필요 시 종교 별 위령제를 실시한다. 단 상기 서류는 각 공원묘지 및 화장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다. 묘지의 규모

고례에는 신분에 따라 묘지의 규모가 달랐다. 가장 높은 신분이라도(一品官) 묘역의 주위가 135m 를 넘지 못했고, 작은 규모(七品官 이하)는 묘역 주변의 길이가 45m 이하여야 했다. 현대는 정부에서 전체 넓이를 6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묘지의 규모는 토지의 효용성과 관리능력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라. 묘지조성



먼저 묘역주변을 표시하고, 그 중앙에 외 광은 너비 2m 길이 3m 정도, 깊이 1m 이상을 파고, 내광은 외광의 중앙에 너비 50cm 에 길이는 죽은 이의 키보다

20cm 정도 더 길게 50cm 정도 깊이로 파고 곱게 다듬는다. 부부를 합장할 때는 남편의 왼쪽(東)에 아내를 묻는다.

3.2.3.4 하관 및 화장

하관이란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으로 하관시(下棺時)는 관 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한다. 하관을 할 때 상주와 상제,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명정을 걷고, 관 묶음을 풀고, 관까지 매장할 때는 들 끈으로 관을 들고, 광중 내광 안에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 상제, 주부 순으로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린다 (취토한다). 관을 벗길 때는 뚜껑을 열고 시신만을 들 끈으로 들어 주검을 묘지 광중에 모시고 광중 안의 빈 곳을 흙으로 채우고, 명정으로 덮은 다음 횡대(橫帶)로 덮는다. 주상이 시신의 가슴 부위에 청색 폐백을, 다리 부위에 홍색 폐백을 횡대를 들고 었는다. 주상은 절하고 모두 금진히 슬픔을 나타낸다. 먼저 고운 흙으로 외광을 채우고, 시신의 발치에 지석을 놓고, 봉분을 지어 때를 입힌다.

화장의 경우 사전 e-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

3.2.3.5 성분, 봉분 및 분골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은 다음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봉분이 끝나면 후일에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 묻는다. 화장한 경우는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뿔아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 자연장 용기는 생분해성 수지,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하고 굵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사용하고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3.2.3.6 산신제(山神祭), 사후토(祀后土), 평토제(平土祭)

매장 시에 묘혈 조성 이전에 토지의 신(山神)에게 아뢰는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은 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평상복으로 향과 모사 없이 묘지 예정지 내의 동북(東北)쪽에서 북쪽(위쪽)에 제단을 차려 술, 과일, 포를 진설하고 남쪽에서 북향해 지낸다. 토지신은 지하에 있을 것이니까 분향은 않고 뇌주(酌酒) 재배만 하고, 참신(參神), 헌주(獻酒), 정저(正箸)하고 독축(讀祝), 낙저(落箸)한 다음 사신(辭神)하는 순서로 지낸다.

만일 이미 조성된 부인의 묘지에 합장할 경우에는 먼저 묻힌 이에게도 주상이 묘지의 정면 앞에서 묘지를 향해 산신제와 같은 제수를 진설하고 분향, 뇌주, 참신, 헌주, 정저, 독축, 낙저, 사신의 순서로 지내며, 만일 조상묘지의 근처(先塋)에 묘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같은 곳의 조상묘지 중 가장 윗대 조상의 묘에서 주상이 합장할 때와 같은 상차림과 절차로 지낸다.

묘혈을 조성한 다음 하관 이후 봉분하기 전에 사후토를 지내며 하관을 마치고 난 다음 달구질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나서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평토제⁷⁸라 한다. 평토제는 성분제(成墳祭)라고도 하는데 가족에 따라 산신제,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한다. 화장의 경우 화장이 완료되면 화장필증을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3.2.3.7 제주(題主) 및 제주제(성분제·반혼제)

제주는 신주에 글씨를 쓰는 일로 영좌의 동남쪽에 탁자를 놓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서향하고 앉아서 ‘顯考⁷⁹ ○○郡守⁸⁰ 府君 神主’와 같이 쓰고 신주를

⁷⁸ 평토제 축문 예; 이제 2013년 5월 22일에 幼學 金吉童은 土地의 神에게 감히 아뢰나이다. 이제 ○○고등학교 교장 金敬培의 아버지 ○○군수 金海金公의 무덤을 지었사오니 神께서는 보살피사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삼가 술과 음식을 차려 정성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어여빠 여기서 흠향하시옵소서.

⁷⁹ 어머니는 ‘顯妣’, 할아버지는 ‘祖考’, 할머니는 ‘祖妣’이다.

⁸⁰ 관직은 사실대로 쓰는데 어머니나 할머니는 ‘孀人(夫人)’이라 쓰고 성씨를 쓴다.

보아서 왼쪽 아래에 ‘孝子○○奉祀’라 쓴다. 주상 이하 복인들은 탁자의 앞에서 북향해 선다. 요즘은 혼백도 없고 신주도 없이 사진만 덩그러니 모시기 때문에 남이 보면 누구의 사진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격식대로 신주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종이에 써서 위패함에 붙이기라고도 해야 그 영좌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정을 땅에 묻었으니 위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신주가 준비 되면 묘지 앞에 혼백을 모시고 혼백 앞에 신주를 모신 다음 상을 차리고 제주제를 지내는데 모든 절차는 차례(茶禮)를 지낼 때와 같게 하고 축문서식이 다르다.⁸¹

3.2.3.8 반곡(反哭)

반혼(返魂)이라고도 하는데 주상과 주부 이하 복인들이 신주와 혼백 또는 사진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로 묘지로 갔던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 돌아오면 영좌를 궤연(几筵)⁸²에 모시고 극진히 슬픔을 나타낸다. 실제의 관행에서는 혼백을 묘 앞에 묻기도 하고 모시고 반곡하기도 한다.

3.2.3.9 답 조장(答弔狀)

삼우제를 지낸 다음에 조문 왔던 손님들에게 인사장을 보내는 것으로 조문에 대한 답장이나 사례문으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쓴다.

⁸¹ 제주축문 한글서식 예

"이제 2013년 5월 22일에 외로운 아들 敬培는 아버님 ○○군수 부군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남기신 몸은 무덤에 묻히셨사오니 혼령께오서는 집으로 돌아가사이다. 신주를 이미 이룩 하였습니다 오니 혼령께오서 옛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좇으시어 신주에 깃드시고 신주에 의지하소서."

⁸² 궤연은 주상이 상복을 입는 기간 동안 영좌를 모시는 장소로 조용한 방에 병풍을 치고, 교의를 놓고 교의 위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그 앞에 제상 향안을 배설하여 죽은 이가 평소에 쓰던 물건들을 궤연에 배설한다.

"저희 집안의 흥화로 아버지께서 홀연히 이승을 버리시고 떠나시니 끝없는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러러 어지신 은혜로 위문의 말씀을 내리심을 받아와 슬픈 마음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첫여름이라 답사운데 형께서 존재만복하심을 빌면서 삼가 글월로 사례하고자 하오나 다 퍼지를 못하겠나이다.

서기 2013년 5월 27일

중대복인 김경배 아뢰

李吉純 존형좌하”

3.2.3.10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신고

개인, 가족, 중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법인,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를 대행하기도 한다. 화장의 경우 사전에 준비된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봉안장소에 봉안 하거나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수목장립)를 이용하여 자연장을 한다.

3.2.3.11 상중 제의(喪中祭儀)

상중 제의란 사람이 죽어서 상복을 입기 시작한 때로부터 상복을 벗고 통상 생활을 할 때까지의 사이에 죽은 이에게 올리는 추모행사이다. 현대는 사당을 모신 경우가 많지 않고, 궤연을 모시지도 않거나, 모신다 하더라도 복상기간이 2년까지 입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49일 혹은 100일만에 모두 탈상을 하기 때문에, 현대의 복상관행은 전통의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상중 제의는 고례의 의례를 적절하게 원용하면서 가정의례준칙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많은 부분의 제의가 생략되거나 간소화 되어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는 반혼제나 초우제, 재우제 그리고 삼우제를 지낸다. 최근에 삼우제는 장례를 치른 후 3일째 날에 행하며, 이후 졸곡, 소상, 대상, 담제, 길제가 행해지기도 하나, 최근에는 49일나 100일에 탈상을 하여 3년에 걸친 상례기간이 대폭 간소화되고 있어 상례보다는 장례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통 3일간의 장례와 삼우제로 상례의 전 과정이 5일로 간략화 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례에는 장례를 치르는 날 집에 돌아와서부터 탈상을 하는 날까지 많은 제의를 갖추어 조상에게 효를 극진하게 표시했다. 여기에 각각의 제의에 대한 의의와 내용을 간략히 알아 본다.

가. 상식(上食), 삭망(朔望)

상식은 궤연을 모시는 동안 조석으로 상을 차려 올리는 것이고 삭망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상식보다 후하게 상을 차려 올리며, 출입 시 살아계신 것처럼 아뢰는 것이다.

나. 우제 (虞祭)

장례를 마친 다음 혼백을 받들어 집으로 돌아와서 지내는 제사로 죽은 이의 시신을 매장하였으므로 그의 혼령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위안하는 의식이다. 우제의 종류에는 장일 당일 돌아와서 지내는 초우제(初虞祭), 초우제를 지내고 처음으로 맞는 유일(柔日-일진에 乙丁巳辛癸가 드는 날)의 아침에 지내는 재우제(再虞祭), 재우제를 지낸 다음에 처음으로 맞는 강일(剛日- 일진에 甲丙戊庚壬이 드는 날), 즉 재우 다음날 아침에 지내는 삼우제(三虞祭)등 세가지가 있다. 우제의 절차는 강신(降神), 참신(參神),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閤門), 계문(啓門)의 순으로 제를 올린다. 축문은 주상의 오른쪽에서 읽고, 삼우제를 지내고 혼백을 정갈한 땅속에 묻고 궤연에는 신주만 모신다.

다. 졸곡(卒哭)·부제(附祭)

졸곡은 삼우제를 마친 3 개월이 지난 뒤 강일(剛日)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글자의 뜻과 같이 곡을 그친다는 의미이며, 무시(無時)로 하던 곡(哭)을 마친다는 뜻으로 실제의 관행에서는 삼우제 이튿날이나 100 일쯤 되는 때에 지낸다. 졸곡부터는 길사(吉事)이기 때문에 축문을 주상의 왼쪽에서 읽는다.

부제는 신주를 그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로 졸곡을 마친 뒤 다음 날 아침 죽은 이가 남자이면 할아버지, 여자이면 할머니 신위와 죽은 이의

신위 앞에 제상을 같이 놓고 지내는 제사로서 제물을 각각 두 상을 차려놓고 지내는데 죽은 이가 장자가 아니거나 사당이 없으면 지내지 않는다.

라.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초상을 마친 뒤 만 1 년이 되는 날, 즉 1 주기에 지내는 제사이나 남편이 주상인 때는 10 개월만에 지내는 제사를 소상이라 하고, 상주는 기일 전날 오후에 제물을 진설 한 후 순서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대상은 소상으로부터 25 개월째 되는 날, 즉 2 주기에 지내는 제사로 탈상(脫喪)제라고도 하며 남편이 주상인 때는 일년 만에 상복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고 지내는 제사이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과 같고, 그날 자정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원칙적으로 대상을 탈상이라 해서 상주들이 상복을 벗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제사이다.

마. 담제(潭祭)와 길제(吉祭)

담제란 그 동안 입었던 상복을 완전히 벗은 뒤 3 년 상기를 마쳤음을 알리는 제사이다. 우리가 흔히 ‘3년 탈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대상을 마치고 계절의 중월(仲月-음력 二, 五, 八, 十一月)에 날을 잡아 상복을 벗고, 입었던 소복도 벗고, 평상복으로 환원하는 제사이다.

길제란 죽은 이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처음으로 지내게 되는 제사를 일컫는다. 담제를 지낸 다음 다음달에 일진의 정, 해(丁, 亥)가 드는 날을 골라 죽은 이가 장자손(長子孫)일 때 윗대 신주를 고쳐 쓰는 제사로, 할아버지의 신주가 죽은 아버지의 봉사(封祀)로 ‘顯考’라 쓰여진 것을 ‘顯祖考’로 고치고, 4 대(고조까지) 봉사를 하는 가정에서는 고조 내외분의 신주를 다른 현손(玄孫)에게 옮기거나, 현손이 다 죽었으면 친진(親盡)이 되었으므로 신주를 없애며, 다른 신주는 죽은 이를 기준으로 쓰여진 것을 새로 제주, 봉사자가 된 사람을 기준으로 고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죽은 이가 장자 손이 아니거나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지낼 필요가 없다. 길제 후에 죽은 이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궤연을 철폐한다.

3.2.3.12 사망신고

시, 읍, 면의 장에게 30 일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등 사망사실 증명 서류, 신분확인서류(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를 제출하여 사망신고를 한다.

3.2.3.13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3.3. 한국 상장례 정책

3.3.1 상장례 정책 변화 과정

고대사회의 상장례 문화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지 발굴된 고분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육체적 변화에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의 상징행위로 생활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의례를 평생의례라고 했을 때,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과 사회의 생활이나 문화 속에서 발달된 생사관이 반영된다. 이러한 생사관은 당시 시대의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정 사회의 종교문화 현상은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각 시대별로 평생의례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 전통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신앙 혹은 종교는 무속,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기독교 등이 있다. 상장례는 미시적으로 가족과 친족에 의해 주도되지만 거시적으로 공동체 혹은 국가와도 관련을 맺으면서 죽은 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유족들이 죽은 이에 대한 기억, 구성원의 상실이 지닌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따라서 상장례가 사적인 차원뿐만 아

나라 공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의 가장 큰 힘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상장례의 형성과정에 중차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⁸³

이런 측면에서 상장례에 영향을 크게 끼친 각 시대별 주요 정책변화를 살펴보면 고려 말 성리학과 함께 도입된 유교문화는 조선시대 말까지 이어졌고, 일제 침략기에 들어 일본인의 정책으로 변화를 맞기까지는 중국의 주자가례가 도입되고 정착하여 한국형 유교가례를 만들어 지키게 된다. 우선 고려시대에는 1290(충렬왕 16년)에 안향에 의해 성리학이 도입되어 주자가례가 소개되면서 성리학적 평생의례가 등장하였고,⁸⁴ 1389(공양2년)에는 통치이념으로 성리학을 채택하였으며 가례에 따라 가묘제를 장려하였고, 최초로 가례를 평생의례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에 권근에게 명령하여 관혼상제례를 상정하여 1398년 예조의 건의에 따라 불교식 제례가 폐지되어 그 동안 절 중심에서 집 중심으로 의례의 장소가 변경되면서 혈연집단을 중시하게 되었다. 1401년(태종 1)에 가묘의 법제제정으로 생활공간이 살림공간과 의례공간을 공존시켰고, 1403년(태종 4)에는 분묘의 크기를 제한하여 가족의례가 사회제도로 정착하였다. 1470년(성종 1)에는 불교 장례의 화장 풍습을 금지시켰고, 1709년(숙종 35)에는 서민의 상례를 제한시켰으며, 1791년(정조 15)에는 천주교도가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폐지하여 처형당한 신해박해가 발생하였다. 1846년(헌종 12)에 김대근 신부가 순교함으로써 특정 종교집단을 부정하였고, 1895년(고종 32) 단발령 시행으로 그 동안 유교사상으로 점철되었던 신체관념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성리학 의례 체제가 종결되었다. 한편 1897년(고종 34) 천도교 제례의 向我設立法제정으로 주자가례와 완전 상반되는 새로운 조상관념이 형성되었다.

⁸³ 송현동, 위 논문, p198

⁸⁴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12년에 일본의 임야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묘지 화장장매장 및 화장취급규칙 24 조」가 공포된 이후 1973년 기존의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가정의례준칙」과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인 강제성과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인 1972년까지는 상례의 간소화와 허례허식을 금지하는 형태로 바뀌었다.⁸⁵ 1912년 일본의 임야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된 「묘지 화장장매장 및 화장취급규칙 24 조」에서는 화장을 권고하고 공동묘지의 매장을 권장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1934년에는 「의례준칙」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 동안의 장기간의 장례기간을 기본 5일 최대 14일로 제한하였고, 상복을 입는 복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였으며, 제사도 그 동안의 4대 봉사에서 2대 봉사로 단축시켰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의례준칙을 지키지 않아 1940년 묘지규칙을 개정하여 그 동안의 매장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광복 이후 1956년 제건국민운동본부는 「표준의례」를 제정하여 상례의 간소화와 장례기간을 3일로 단축하였으며, 1969년 보사부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 법률화 하여 성복제, 굴건제복착용, 남장, 음식접대 및 조화를 폐지시키고 장례는 3일장으로 제한하였으며 탈상 기준을 100일로 대폭 간소화시키고, 제례는 2대 봉사의 기제와 년시제로 제한하였으나 실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지켜지지 않았다.

1973년에서 1998년, 헌법재판소의 허례허식금지를 위한 음식접대가 위헌으로 판명되기 이전까지는 상례에 대한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한 시기였다. 1973년 기존의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신규로 「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6552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 411호)을 제정하여 법적인 강제성과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상례의 간소화와 허례허식 금지의 취지는 동일한데

⁸⁵ 송현동, 위 논문, p201

국민들이 법을 이행하는 정도가 낮자, 법률 1 조의 목적에 “이 법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가정의례의 참뜻과 건전한 의례절차 기준마련을 통해 국민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보다는 법적인 통제와 규제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고, 특히 법률 4 조에 1).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 2). 화환, 화분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 또는 사용, 3). 답례품의 증여, 4). 굴건제복의 착용, 5). 만장의 사용, 6).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등 ‘허례허식’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고 이를 어겼을 경우 50 만원이하(1973 년 기준)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⁸⁶ 이후 기본적인 큰 틀의 변화 없이 1980 년에는 벌금을 50 만원 이하에서 200 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1981년에는 허례허식이 아닌 범위가 다소 완화되었고, 허례허식 적용 제외조항이 이전의 국가기관에서 확대되었으나 일반 개인의 상례는 그대로이던 것이 1985 년, 1994 년에 걸친 시행령에서 허례허식이 아닌 범위를 좀더 구체화시키어 명문화시킴으로써 법의 적용을 완화 시켰다.

그러던 중 1998 년 헌법재판소의 “경조사시 음식접대금지 가정의례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허례허식 행위 시 200 만원 벌금형에 대한 조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⁸⁷ 이에 따라 법은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은 1999 년 8 월 31 일 「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되고 「건전가정의례」와 이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로 제정된 이 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권고사항에 불과함으로써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 허례허식으로 규정되었던 모든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이상의 평생의례 정책변화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결론 사항으로는 첫째, 평생의례는 주로 혼·상·제례를 중심으로 당대의 지배적 지배적 종교 이념에 의한 의례 체계 강요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⁸⁶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3,3,13 대통령령 제 6552 호 보건사회부), 제 4 조

⁸⁷ “헌재 ‘경조사 때 음식물 접대금지 법조항 위헌’”, 『중앙일보』, 1998.10.16

둘째, 14 세기 말에 들어온 주자가례가 한국에서 관혼상제라는 네 개의 평생 의례로 권장되어 조선시대의 지배적인 중추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18 세기 말 천주교의 전래로 신주를 부정함으로 조상관에 변화가 일어났고, 뒤이어 동학과 개신교 전파에 따른 계속되는 변화로 평생의례 형식과 의미가 다양화 되면서 19 세기 말 단발령으로 성리학적 의미가 전면적으로 상실되었으며 조선왕조의 의례 정책 포기 현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20 세기 초 일제의 의례 준칙에 따라 공동묘지와 화장 제도가 권장되었고 봉사 대 수도 2 대로 한정되면서 사생관 및 생활공간 관념의 변화와 함께 도시형 상장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장의사가 출현하였다.

다섯째, 광복 후 6·25 전쟁으로 사당제도가 소멸되면서 신주가 없어지고 조상 관념에 대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여섯째, 1970 년 대 중반 가정의례준칙으로 의례 절차를 통해 형성된 인간 및 사회관계가 해체되었고 전통문화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일곱째,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사회 계층의 심각한 분리현상은 사회 문제점을 동반하였다. 고대의 상장례 목적은 조상숭배와 영혼의 돌아감, 죽은이와 유족 간의 관계개선, 혹은 감사행위와 의례활동을 통해 영혼을 저승세계로 평안하게 인도하는데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간소화, 편리성에 의해 단순한 물리적인 기능인 유체처리 위주로 진행되고 죽은이와 유족의 사회적인 기능에 따라 체면유지와 자기과시 등으로 많은 불합리적인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3.3.2 건전가정의례준칙 요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상례 관련 법률은 「건전가정의례준칙」⁸⁸과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⁸⁹ 및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⁸⁸ [시행 2008.10.14] [대통령령 제 21083 호, 2008.10.14, 전부개정]

관한 법률 시행령」⁹⁰이 있고 장례에 관한 법률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⁹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⁹² 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⁹³이 있다

3.3.2.1 「건전가정의례준칙」과 관련법률 및 시행령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전체 6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수연례등 모든 통과의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상례에 관한 내용은 제 4장 9조에서 18조에 이른다.

주요내용으로는 제 2조에서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로 정의하고 제 3조에서는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종교의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상례의 의식 부분은 제 9조에서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靚祭)⁹⁴와 위령제⁹⁵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 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폭 간소화 시켰다. 제 12조에서는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제 13조 상기는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고 하여 전통의 3년상등 장기간에 걸친 상기를 대폭 단축 시켰다. 제 14조는 상복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⁸⁹ [시행 2012.2.1.] [법률 제 11282 호, 2012.2.1. 일부 개정]

⁹⁰ [시행 2012.5.1.] [대통령령 제 23766 호, 2012.5.1, 일부 개정]

⁹¹ [시행 2013.2.2.] [법률 제 11253 호, 2012.2.1. 일부 개정]

⁹²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 25050 호, 2013.12.30. 타법개정]

⁹³ [시행 2014.1.1.] [보건복지부령 제 228 호, 2013.12.31. 타법개정]

⁹⁴ 제 10 조 ①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하며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⁹⁵ 제 11 조 위령제는 매장과 화장의 경우로 구분하여 매장의 경우는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화장의 경우는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쓰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도 가능하며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규정하여 전통 상례에서 입었던 오복은 완전히 배제 되었다. 제 15 조에서는 상제(喪制)의 기준을 죽은이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주상(主喪)은 배우자나 장자가 되며, 죽은이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제 16 조는 부고에 관한 내용으로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례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이나 업무와 관련된 자들의 무분별한 조문 등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제 17 조에서는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로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호화 장례행렬이 되지 않도록 제한 하였다. 제 18 조에서는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체 8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포함하고 이법의 시행주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들이 술선수범하여 지키도록 명문화시켰고, 목적달성을 위한 민간단체에게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의례에 관한 내용을 지도·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건전가정의례의 정

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전체 2 조 와 부칙으로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위촉방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3.3.2.2 「장사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 제 11253 호(2012.2.1)로 일부 개정되어 2013.2.2부터 시행 적용되고 있으며 총 7 장 43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 총칙에서는 장사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국립묘지)의 적용예외조항을 두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장·봉안 및 자연장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는데 매장 및 화장의 시기를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라도 다시 소생하는 자를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 시켰고, 매장 및 화장의 장소를 명문화시켜 불법매장이나 화장을 금지 시켰으며, 매장은 매장 후 30 일 이 내, 화장 및 개장은 사전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무연분묘(無緣墳墓)정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방법을 규정하였다.

제 3 장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관한 규정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公設墓地·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 조성 및 관리하도록 의무화 했고, 이외에 사설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등), 사설화장시설, 사설자연장지 설치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제 17 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묘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었다. 제 18 조에서는 분묘 등의 점유면적으로 公設墓地,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 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 m²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m²), 개인묘지는 30 m²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 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m²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 19 조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15 년으로 하고, 한 번에 15 년씩 3 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 21 조에서는 70 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 22 조에서는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하였고, 公設墓地· 공설화장시설· 법인묘지 등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러한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제 4 장은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타인의 토지 등에 허가 없이 설치된 분묘나 무연고자의 묘지는 적법절차와 과정을 통해 개장 후 화장하여 유골을 일정기간 동안 봉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5 장은 장례식장영업자의 사업자 등록과 시설기준, 장례식장 임대료와 관련된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장례지도사⁹⁶ 자격,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 6 장에는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 등은 필요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장례식장영업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정해진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해당하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제 34 조에서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국가·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36 조에서는 국가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

⁹⁶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운영」(보건복지부지침 제 2012-1 호, 2012.8.2 제정, 시행)

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자연장 문화를 촉진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상기에 정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정화 하였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통령령 제 25050 호(2013.12.30. 타법개정)로 개정되어 2014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되며 총 41 조의 조문과 부칙 및 서식 등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적 성격을 띤 내용이다. 제 2 조의 연고자 중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다. 제 7 조의 매장의 깊이는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화장한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30 cm 이상으로 규정했다. 화장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하며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지 못하도록 하였다.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문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에서는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 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되고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으

로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센티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제 9 조에서는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10 년으로 하고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도록 하며, 무연고 시체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도록 하였다. 제 15 조에서는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형태와 장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 18 조에서는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기준, 제 21 조에서는 사설 자연장지 설치 기준, 제 23 조에서는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 기당 설치하는 시설물로 비석 1 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 미터이내, 그 표면적은 3 제곱미터 이하), 상석 1 개, 그 밖의 석물 1 개 또는 1 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 미터 이내)으로 하되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으며 이런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외에 제 38 조, 39 조, 41 에서 법령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둘째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항목으로 주로 법령의 적용 예외조항이다. 제 5 조에서는 “24 시간 이내 화장 또는 매장을 할 수 있는 시체기준”으로 전염병 환자와 뇌사판정을 받은 시체가 있으며, 제 6 조 “화장시설 외의 화장”으로 사찰 내에서 다비식으로 화장하는 경우와 화장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제 12 조, 13 조, 19 조에서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등의 면적, 시설물 변경에 관한 내용과 제 14 조 입목벌채허가 등의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의 면적(80 m²), 제 16 조의 사설 화장장 신고 등의 변경신고 내용, 제 17 조의 공공법인의 범위, 제 22 조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과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제 25 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 등 사전매매가 가능한 경우”로 70 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질병 등으로 6 개월 이내

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칭,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설자연장지 고시 의무와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 묘지소유자가 보존묘지신청을 하면 이의 지정을 위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임기(2년), 위원장의 직무, 간사, 국가 및 시·도 보존묘지 지정과 지정서 발급, 해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2228로 2013년 12월 31일 타법개정에 따라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체 26 조와 부칙 및 서식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장 및 화장신고 등 각종 장례관련 모든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양식, 각종 장례관련 시설물의 관리관련 기준, 장례지도사의 교육과정, 검정기준, 자격증기준 및 교육기관설치 및 변경, 국가보존 묘지 지정기준, 규제의 재검토 내용을 담고 있다.

3.4. 제기되는 문제점

3.4.1. 의례의 의미 상실

일반적으로 의례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일정한 법에 따르는 예식을 가리킨다.⁹⁷ 문화적으로 규정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성격을 포괄하는 모든 상징적인 인간행위로써 상장례의례는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을 다루고 있고, 이를 통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상장례는 문화, 지역, 국가에 따라 서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죽은이를 보내는 의례이면서, 유족들로 하여금 구성원을 잃은 슬픔에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통해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으로 단순한 죽은이의 시신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⁹⁸ 그러나 한국에서는 처음 유교가 도입된 이래 조선시대에는 너무 형식위주의 복잡한 의례절차로 인해 조정에서는 상장례 의례문제로 당파가 갈라지는 등 과도하게 집착하였고 일반 서민들을 너무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상장례로 가문이 망하는 등 많은 폐단이 있었다. 그런 반면 일제식민지 시대의 의례 준칙을 토대로 1973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 제정과 이후 법에 의한 상장례의 통제는 상례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킨 상태에서 죽음의 문제를 ‘합리화’, ‘간소화’, ‘허례허식 일소’라는 상징적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면서 상례를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보다는 단순히 시신만을 처리하는 일 혹은 행사로 그 의미를 축소시켜 왔다. 이러한 의례의 과도한 축소 및 생략은 전통적인 조상신을 배제하여 시신처리 이후에는 죽은 자와 산 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3.4.2. 상장례 정책에 대한 국가의 이중적 태도

⁹⁷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소)

⁹⁸ 신광철, 「죽음, 그리고 남은자들의 삶-영화 <축제>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 20 집, 한국종교학회, 2000

근대 이후 한국에서 실시한 상장례 정책에 대한 것은 일반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국가 및 이와 관련된 공공의 영역에서 치르는 상장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1973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준칙이 제정되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항상 국가가 행하는 국장과 국민장, 사회장, 각 기관장의 상례에는 허례허식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예외로 하였다. 장례부분에서도 1969년 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묘지면적과 설치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국가가 행하는 국장과 국민장 대상자는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켰고 이러한 규정은 1997년까지 계속 되었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이중성에 대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국립묘지이다. 동작동, 대전과 수유리에 있는 국립묘지는 1970년 제정된 「국립묘지령」에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국가원수의 묘는 80평(264㎡),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장관급 장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는 자는 8평(26.4㎡), 영관급이하 군인, 군속 및 이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의 묘지를 1평(3.3㎡)으로 크기를 제한하고 있어 살아 있을 때의 신분에 따라 묘지크기를 달리해 죽은이에 대한 불평등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묘지 크기뿐만 아니라 묘비의 크기와 높이 모두 름들은 물론 장군급 이상은 시신을 매장이 가능하나 영관급 이하는 화장 이후 유골을 안장하게끔 하고 있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급 신분에 따라 화장과 매장이 결정되며 묘지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를 부여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보여지나 죽어서까지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의 장례문화 개선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명당을 추구하고 묘지의 크기와 상례의 호화스러움이 곧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굴절되어 오늘날의 호화장례를 부추기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3.4.3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전통사회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상장례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종교라고 할 수 있겠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화장이 도입되어 고려시대까지 일반화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아 법적인 통제를 가하면서 화장을 금지하였다. 근대 이후 일제시대에는 조선시대의 화장금지 제도를 폐지하고, 화장권고와 공동묘지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의례준칙」을 제정하여, 상례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도모하였는데 이런 정책기조는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화장권고는 전통의례와 상반되어 기피하였으나 2000년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2001년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매장중심의 장례문화가 화장중심의 장례문화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과거 신라시대와 고려의 화장문화 도입 배경인 불교와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증가와 결합된 매장문화의 폐단으로 묘지 점유면적의 급증, 그에 따르는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환경훼손, 호화 분묘문제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 ‘근대화’, ‘합리화’ 그리고 ‘산업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가운데 국가는 상장례 정책 실행과정에서 사적인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관여 및 통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런 사적 영역에 대한 통제가 박정희 10월 유신 이후 제4공화국에 해당하는 1973년과 5·18 광주사태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권인 제5공화국전후에 강화되었음은 국가가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시기에 특정의 형식과 내용으로 한 개인의 죽음과 그에 따르는 상장례를 통제했음을 볼 수 있다.

3.4.4 사회지도층의 매장 문화 선호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매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제시대의 「의례준칙」을 시점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화장을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죽은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 화장문화 정착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은 SK 최종현 전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고 최종현 회장은 좁은 국토를 잠식하는 우리의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1998년 타계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화장하고 수준 높은 화장시설을 지어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보다 먼저 타계한 부인의 장례도 화장으로 치렀다. 그의 유언은 신선한 화제를 뿌렸고 장묘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에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회가 결성되고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당시 고건 서울시장, 구 본무 LG 회장 등 지도층 인사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20%대였던 화장율은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그리며 2005년 52.6%로 매장율을 상회하였고, 2011년에는 71.1%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⁹⁹ 그러나 아직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19세 이상 선호 장례방법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14.7%가 매장을 선호하고 83.6%가 화장 후 봉안 혹은 자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가장 높은 39%에 이르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¹⁰⁰ 이는 고령의 노인들이 아직 매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유교적인 관념이 강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친환경 상장례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특히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의 적극적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참여가 필요하다.

⁹⁹ 보건복지부 2013년 장사업무 안내, p6

¹⁰⁰ Kosis 2013 선호 장례방법(19세 이상), 2013.12.31 기준

3.4.5 장례식장의 횡포와 상조회사의 부실경영

현대 한국 상장례의 특징은 대부분의 장례식이 전문 장례식장 혹은 병원에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장례식장은 모든 비용의 투명성을 요구 받고 있으나, 모든 상장례 용품과 조문객 접대용으로 사용되는 음식과 술을 포함한 음료를 외부로부터 반입을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때로는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는 명목으로 고가의 불필요한 용품 구매를 강요받거나 외부에서 구매할 경우에 비해 터무니 없이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어 장례를 마치고 나서 계산을 하는데 업자와 상주간의 불협화음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정된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유족들이 예상한 숫자보다 많은 조문객이 래방하거나 조화가 당도하면 비좁은 장소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은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을 함으로 인해 갑자기 집안에 상을 당하게 되면 예전처럼 시골에서 상부상조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되어 최근에는 이러한 갑작스런 상사에 대비하여 집안에 노인이 계시면 사전에 상조회사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고 상을 당하면 장례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상조회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비합법적인 상조회사 또는 영세 상조업체의 난립과 상조회사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불투명하여 내가 필요한 때 적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V. 대만 상장례

4.1 대만 상장례 변천 과정

4.1.1 일제식민지 이전

만물의 영장으로 불리는 인류는 서로간의 사랑으로 인해 죽고 난 이후 시체를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는 없다. 인류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약 5 만년전의 원시인들부터 사람이 죽으면 고인에게 추도한 의식이 시작 되었다고 하며, 전세계의 모든 민족은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죽은 자에 대한 추도의식을 행해왔고 일찍부터 고유의 문화로 자리매김 하였다. 전 인류의 공통성에 따라 각 민족의 상례에는 일정부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형 농경사회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었던 조건 등으로 인해 상장례에서도 자체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주(周) 나라 이전부터 완전한 상례문화가 형성되었는데 공자의 “死葬之以禮·祭之以禮”로 표현되듯이 상장례를 통해 바로 효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隆喪厚葬 또는 簡喪薄葬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주례(周禮)의 상당부분은 상례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주례는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이 되었고, 상례 역시 사회를 다스리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유가(儒家)는 주(周)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계통을 이루었고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유교정신은 2000 여년의 중국 상장례의 기초가 되었고, 동시에 종법제도와 조상숭배는 물론 거대한 농경사회 구축 및 고도의 중앙집권체제 발전 유지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상례의 총 원칙, 즉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을 만들어 냈다. 중국 고대 상례의 기본특징은 “重孝道, 明宗法, 顯等級, 隆喪厚葬”이다. 즉 상례는 효도의 중요 덕목으로 효는 禮의 시작이고, 부모가 사망 시 관원은 3 년 동안 사직하고 집에 돌아가 상례를 치렀으며, 고전 논어의 여러 곳에서 효에 대해 설명하고 있듯이 효는 국가통치의 중요한 덕목이었

다. 소위 “慎終追遠，民德歸厚”로 표현되는 이러한 유교사상은 계속 전승되어 중국의 특징적인 공리주의의 ‘孝道資葬文化’를 만들어 냈다.

대만사회의 상례문화도 아주 오래 전부터 농후한 혼령숭배와 조상숭배신앙이 융합되어 남들이 불효자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악습이 그대로 전승되는 과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의식형태로 나타나면서 인류와 우주, 사회와 자신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는 반면 종족범위 내 혈연관계의 원근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달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대한 장례문화가 형성되었다.¹⁰¹

대만은 청나라시절에 광둥성과 복건성에서 많은 동포들이 이민을 와서 대만의 원주민과 결합하여 형성된 하나의 이민사회이다.¹⁰² 이민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현지주민 여자들과 결혼하여 생활하면서 원래 고향의 문화를 이 땅에 이식하여 점차적으로 대만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후에 일본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황민화운동정책에 유린 당하고, 해방 후에는 국군이 후퇴하여 대만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다른 문화가 유입되어 오늘에 이르면서 다양한 종족들이 풍부한 문화를 형성하였는바 빈장 문화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청나라시절에 대만으로 이민 온 대다수 사람들은 대부분 한곳에 모여 살면서 자기 고향의 생활습관을 유지하면서 살아 왔다. 당시의 불편한 교통으로 유체(遺體)를 고향으로 돌려 보낼 수 없어 우선 타향에 먼저 매장 하였고, 청나라 시절에 남자들은 권속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 올 수 없다는 법령으로 인해 대다수 사람들은 친척이 없어 대만에 온 동향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 간 것이 대만의 빈장 문화 형성의 근간이 되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우선 어느 지역의 사

¹⁰¹ 呂應鐘, 위 논문, p3

¹⁰² 萬安生命科技股份有限公司, 『過去現在未來台灣殯葬產業的沿革與展望』,威仕曼文化, 2012,p6

람인지 확인하고 원래 고향의 풍습에 맞게 처리하였는데 이는 동향 사람만이 자기들의 풍습을 알고 이에 맞게 처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가 도우며 장례를 치르면서 서로 온기가 넘치고 향기로운 장례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같은 동네에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친척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가 자발적이고 의무적으로 나서서 도와,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어떤 이는 상복을 만들고, 혹자는 좋은 날과 묘지를 잡아주는 등 서로가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상을 당해 비통함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유족들로 하여금 비통함의 처리와 상례의 행정적이고 노동을 함께 하여 부담을 덜어 주었다. 한편 부모상을 당했을 때 웅색하고 궁핍하여 상례를 치를 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 여명 혹은 많은 인원이 서로 ‘부모회’를 조직하여 회원 중에서 누가 부모상을 당하면 회원들이 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또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원만하게 상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 풍습은 청나라시대는 아주 보편적이었고 일제시대와 광복 초기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

4.1.2 일제 식민지 시대

청대부터 일제 식민지시대에 이르면서 대만의 각 민족은 이미 서로 융합되었고, 형성된 촌락의 구성인원도 단일 종족이 아니라 여러 이민족이 합해져 이루어졌다. 일제식민지가 시작되면서 원활한 식민정책을 펴기 위해 비교적 호소력이 있는 인사를 찾아 위에서부터 아래 계층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제도와 풍습을 따라 하게 하고 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지역에서 호소력이 있는 사람들을 향신(鄉紳)이라 하고 부분적으로 이런 향신은 일본 정부를 위해 향리 주민을 교육하는 책임을 맡아 현재 이장과 같은 기능의 업무를 맡았다. 일제시대부터 광복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가 각종 문화와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러한 향신의 힘을 많이 이용했는데 당

시의 향신들은 비교적 경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런 향신을 이용하여 일반 민중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위에서 모범을 보이고 아랫사람들은 본을 받도록 하였고 이런 문화는 빈장문화 역시 같았다. 향신들의 말은 호소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으며 민중들이 이들의 말을 믿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번잡스러운 빈장 관련 일이 있으면 대부분의 민중들은 향신을 찾아가 도와주기를 청하고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향신은 빈장 과정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전체 상기간을 통해 필요한 인원조정에서부터 전체적인 의식절차를 조절하고 진행하였으며 현대의 사의(司儀) 역할인례생(禮生)도 향신이 담당하였다. 당시의례생(禮生)은 전체적인 제사와 절차 등을 결정하는 지휘자로서 현재의 사의(司儀)를 도와 주는 기능의례생(禮生)과는 달랐다. 상을 당한 상가와 장례를 도와주기 위한 이웃 친지 친구들은 모두 예생(禮生)의 지휘를 받았으며 그의 지시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빈장용품을 구매하는 등 모든 일들에 대해 향신의 지시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이런 향신들은 세습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 세대의 향신이 나이가 너무 많거나 사망하여 더 이상 계속해서 일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아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 하게 되는데 이는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높았고, 부친이 다른 상례의 일 처리 하는 것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빈장의식과 진행부분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았고, 일반민중들이 그에 대한 신임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전통의 향신은 일제시대 대만 빈장의식의 주도자가 되었다.

일본 정부가 대만에서의 사회제도 개혁을 추진할 당시, 정책명령을 지방행정 집행단위로 하달하는 경우 외에 향신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 법령이 민중에 전달됨에 있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는 향신이 해당 지역의 문화와 풍속을 이해하고, 전통관습이 일반민중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변경을 요하는 정치 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향신이 집행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체처리에 있어서 일본에서 사용하던 관목은 목통(木桶)를 사용, 시신을 목통에 얹혀서 매장하는 좌장(坐葬)을 하는 반면 대만의 전통 장례방식은 이와 달랐고, 장례 의식에 있어 일본정부의 대만 통치 기준은 엄격하지 않아 장법과 장지에 관한 확실한 기준이나 법령이 없어 당시의 분묘는 난장(亂葬)현상이 조성되었다. 특별한 제한을 둔 유일한 부분은 유체 처리기간으로, 유체는 반드시 지정기간 내에 완료할 것을 명령하였는바 이는 일본이 대만의 공공위생적인 측면에서의 공헌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또한, 일제식민지시대부터 이미 미흡하나마 장의사 조직이 생겼는데 이 조직은 전문적으로 死後업무를 처리하였다. 당시 타이베이시에는 약 10 여개의 장의사가 있었는데 이중 절반은 일본인, 나머지 절반은 대만인이 운영하였고 이들은 빈장업계의 대선인(大善人)이라 불렸다. 일본 통치시대의 빈장업 영업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특히 모든 장례의 과정과 의식을 일본식을 참조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당시 대만 민간 습속의 영향이 커서 향신이나 장의사는 이를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시기에 대만에서는 민간신앙과 각종 새로운 종교가 혼합되어 장례의례도 각 종교에 따라 갈수록 복잡해져 간 가운데 일본정부가 이를 통제함에 따라 실제 종교적인 의식은 내놓고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 숨어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신과 장의사의 역할이 컸다.

일본이 대만을 50 년동안 통치하는 동안 대만의 경제, 교육, 사회분야의 모든 제도 면에서 깊은 영향을 받아 상장례분야에서도 당시의 일본 전통과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식에서 전례(奠禮)라고 불리던 의례를 고별식(告別式)이라고 하거나, 외부에 상중임을 표시하는 표지에도 대만 방법인 상중(喪中)이라는 표현 대신 기중(忌中)이라는 표현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일제시대말기 일본정부가 실시한 황민화정책을 통해 일본정부는 종교와 사회풍습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사찰을 정리하고 일본식 상례예속을 주창하여 대만인으로 하여금 전에 하던 방법은 하나의 습속으로 간주하고 일본식민지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문화풍습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일제식민지의 황민화정책은 일본의 패망으로 일본인이 철수하면서 같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고별식(告別式), 기중(忌中), 타통(打桶), 답지(答紙), 회례품(回禮品)등의 용어는 아직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4.1.3. 광복 이후

4.1.3.1 광복 초기

광복 초기에 들어오면서 대만의 상장례 풍습은 일본의 영향은 받았지만 대부분 예전의 문화특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을 당하면 지역의 향신을 찾아가서 처리를 부탁해 전통방식의 상례를 치렀다. 그러나 광복 이후 많은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올라가면서 그 동안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향신의 권위는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村·里長이 취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촌·리장이 죽은 사람의 입관을 직접 확인하고 사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런 절차는 오늘날과 사뭇 다르다. 사실 광복 초기 민선으로 선출된 촌·리장은 당시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명망이 있었던 사람으로써 과거의 향신과 같은 부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제시대에 향신이 하던 역할을 광복초기에는 촌·리장이 담당하게 되었다.

광복 당시와 현재의 장례는 여러 부분에서 다르지만, 아직도 전통적으로 내려온 몇 가지 습성이 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 임종 시 필요한 관목이나 수의, 부장품을 준비하는 노인가장(老人嫁妝)이다. 옛날에는 대부분 임종이 임박해서 관을 준비하지 않고, 평상시 자신이 돈을 모아 좋은 수관(壽棺)을 준비하여 나뭇간

이나 기타 공간에 아래에 깔 판을 대고 뚜껑을 분리하여 관목을 세워 놓았다. 이러한 관습은 장수를 기원함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을 준비하여 붉은 종이 위에 자신의 사주팔자를 기입하여 관 바닥에 깔아놓으면 저승사자가 와서 보고 대러갈 사람이 이미 죽은 것으로 오해하여 그를 데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한편으로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많은 장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요즘의 생전계약(生前契約)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가장에는 관목 외에 수의(壽衣)가 있다. 수의는 통상 60 세 생일부터 이후 매 5 년 마다 한번씩 부모의 생일에 출가한 딸과 며느리들이 부모를 위해 준비한 새 옷이나 고급 천으로, 원래는 생일선물로 드린 것이었으나 사실은 사후에 입기 위한 옷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사후 부장품인 각종 금붙이나 패물 등도 老人嫁妝의 한 부분으로 이런 배장품(陪葬品) 역시 평상시에 자식들이 부모 또는 조부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준비해 준 선물 중 일부 물품이다. 이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관 내에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소위 장례 용품 판매점을 老人嫁妝店이라 한다. 이러한 자신의 사후 준비 계획은 일제시대에서부터 광복을 거쳐 오늘날까지 대만의 여러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풍습이다.

당시의 상장례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웃이 서로 상부상조하여 상례를 도운 것이다. 광복 초기의 생활형태는 비교적 보수적인 농촌생활을 하였다. 도시에서는 일부 장의사들이 생겨나서 상장례를 치르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례 시 친지위주로 진행하였고, 상을 당하면 주변 이웃들이 주동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를 요청,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상을 당한 자로 하여금 슬픔을 풀어주고 죽은이에게는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체처리와 접관(接棺) 등 친지가 반드시 직접해야 하는 일 외의 기타 잡일은 이웃이 도와주었다. 특히 당시의 풍습으로는 상가에서는 불을 지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웃들이

음식을 준비하여 상을 치르는데 협조하였다.¹⁰³ 또한 지방에 따라 현재까지 전래되는 풍습으로 상례를 마친 당일 인근 주민과 지인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회식(回食)이라 하고, 이러한 회식은 상가를 청결히 한 후 상례를 도와준 자들을 불러 음식을 접대하는 것으로 상 기간에 사용한 흑백위주의 물품들을 홍색으로 준비하여 상례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와 일상 생활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 상장례에도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이 있다. 60 세가 넘는 경우 장수라 하였으며, 전통적으로 부고에는 1 세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죽은 이가 70 세로 승천 시 71 세로 기록하는데 이런 관습은 후손의 효심을 반영한 것이고 착효복(着孝服)과 대효(帶孝)라는 관습에서도 효를 중시하는 사상을 엿볼 수 있다. 효복을 입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지은(養育之恩)을 보답할 길이 없음을 비통하여 마의(麻衣)로 몸을 싸서 내심의 고통을 표현하였는데 후에 이 마의를 효복이라 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효도중시 사상에 따라, 부처간, 또는 형제간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도 상복과 상장을 단다. 즉, 상복과 상장은 가족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징표이다. 상장례 시, 많은 친지 가족이 참가하는데, 마을 주민들은 상가의 비통함을 걱정하여 가족들이 스스로 상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상복을 만들어 준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 현상에 의해 이루어진 상부상조의 상장례 문화 특징의 일부이다.

광복 이후 대만의 상장례문화는 광복 이전과 동일한 모습을 띠었으나 1961년부터 서서히 변경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혁신적인 새로운 공공정책의 추진과 함께 사회구조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장례문화도 변경되었다. 첫째로 9년의 의무교육 시행은 전체적인 지식수준을 향상시켰고, 성적이 좋은 사람은 상급학교에 진학 함으로서 전통 상례에 종사하던 인구가 줄어들게 되었다. 두 번째로 국내의

¹⁰³ 이러한 음식을 조탁(粗卓)이라 한다

각종 공공건설 추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설현장에 취업하였고, 관리인원이 필요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증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아가 취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래 대만의 전통산업인 농업 종사자는 줄고, 농촌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아가 도시에서 일하여 대만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셋째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많은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이러한 상업은 더 많은 사람을 도시로 유입시켰으며, 대만 산업은 상공업화되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화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도시 사람들은 사방 팔방에서 서로 다른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농촌시대에 가가호호 독립된 정원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살던 때와 달리 아파트라는 주택 형태가 나타난다. 한 건물에 수많은 가구가 살게 되면서 인간관계는 소홀해지고, 냉담해지며, 장례 산업에도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생활품질을 끌어 올리면서 더 많은 시골의 젊은이들이나 재력가들이 지속적으로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재력가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농촌에는 지식수준이 낮은 자만 남게 되면서 장례 산업에 변경이 생겼다.

전통 대만 상장례 방식은 전형적인 농업사회 생활방식에서 파생된 것으로, 도시화 사회와는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례의식 중 주도자는 동족의 연장자나 시골의 유명인사 혹은 이장(里長)이 담당하여 전래되어 왔으나, 도시화에 따라 농촌인구 이탈이 생기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장례의식의 계승자가 줄어들어 따라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상업적인 기회가 발생하였다. 즉, 상복을 만들고 각종 장례 용품을 대량 제작하여 상을 당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장의사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급속하게 발전한 공업사회에서는 업무적인 효율성이 우선시 되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고 서로간에 경쟁하여 업무 스트

레스는 커지고 긴장된 생활이 지속되며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황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생활을 하는 도시인들은 서로간에 깊이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옆집에 살아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누군가가 상을 당하는 경우 농촌사회에서 주변이웃들이 도와주던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짐에 따라, 도시에서는 자연스럽게 비공식적인 형태로 1960년대 이후 장의사 조직 및 제도가 활성화 되었다.

4.1.3.2 사회변천에 따른 장례문화의 난립.

재력가와 명망 있는 시골사람들이 공업사회의 영향으로 도시로 이주하면서 시골에서 장례문화를 이해, 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도시 사람들의 다양성과 서로간에 소홀해 짐에 따라 도시에서도 빈장문화를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이러한 문화의 상실과 상장례 생태의 전환계기가 되었다. 빈장문화는 전반적인 인구의 이동, 친족간의 흩어짐, 상공업의 부흥 등이 요인이 되어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회형태를 변경시킴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당시의 변천은 미래에 대한 고려 또는 어떠한 구심점이 없이 이루어지면서 몇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첫 번째로는 장례 관련 비용의 불투명성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망은 금기되는 것 중 하나로 사람들은 빈장과 관련된 일을 꺼려하여, 주동적으로 본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과 이웃을 도와 행하는 사람이 줄고, 빈장(殯葬)을 하는 경우 비통함과 슬픔에 쌓여 빈장예식 습속을 알려 하지 않아 빈장물품의 용법이라던가 뒤에 숨은 의미를 아는 사람이 적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갓집은 빈장산업의 관계물품을 전혀 모르면서 빈장을 진행하게 되고, 빈장업자 역시 이에 대한 용법과 의미를 설명할 의무를 느끼지 않아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빈장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빈장례가 끝난 후 상주는 어떤 비용이 빈장비용이고 어떤 비용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고, 또 장의사 역시 이를 설명하지 않아 사리(私利)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빈장문화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예로, 전통 빈장관습에는 빈장을 도운 친지와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 과거에는 반가왕생(返家往生)하는 것을 선종(善終)으로 여겨 집 밖에 천막을 치고 상례를 치르고, 상 기간의 탁자 보는 백색으로 하여 상갓집에서 음식을 제공하여 도움을 제공한 지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고, 상례 완료 후 홍색 탁자 보를 깔았다. 당시 대만성에서는 상장의식이 완료된 당일에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감사의 표시를 표현하였으나, 섬 지역인 진먼(金門)이나 평후(澎湖) 및 아주 오랜 전에는 대만섬에서도 상장례를 마친 날뿐만 아니라 상을 당한 당일부터 상을 치르는 기간 내내 음식을 준비하여 1 일 3 식을 모두 상가에서 부담하였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례라고 생각했다. 장의사는 당연히 상주에게 장례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야 한다. 옛날 방식의 장례에서는 장례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일부는 음식접대로 또는 멀리서 온 친지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장의사가 상주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러한 비용이 모두 혼합되어 상주의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게 마련이다. 또한 상 중 방문객에게 수건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멀리서 조문 온 손님과 노동력을 제공한 이웃에게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땀을 닦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의례히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장의사가 별 다른 설명 없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예품(禮品)이라 소개하니 이 또한 추가 비용을 가중하게 된다. 이러한 몇몇 사익을 탐하는 장의사로 인하여 전반적인 장의사에 대한 인식은 나빠지고 장의사의 신분이 상승할 기회는 줄어들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불량 범죄조직의 유입이다. 1970~80년대 대만 정부가 범죄조직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조직의 간부들이 대부분 뤼다오(綠島)에 감금되고 자금원이 부족해지자 남은 자들은 차 집, 술집, 지하 도박장 등의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는데, 장례업 역시 그 중 하나이다. 당시 장례식은 종교적인 색이 강하기 때문에, 신비스러움이 더해졌고,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남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여기에서 기회를 찾은 범죄조직은 잔류 세력들이 장례산업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불량 배경을 업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하고 강제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장례산업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들 중에서 일부는 개과천선한 자들도 있고, 대부분의 장례산업 종사자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본업에 뛰어들어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무섭거나 행패를 부리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홍빠오(紅包)문화이다. 원래 홍빠오는 장례업무를 도와준 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악을 물리치고 죽은이의 사후 세계의 평안을 기원하던 것이 현재에 들어 장례업무 수행자들의 추가 보수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존 종교의 법규상에서 보았을 때 홍빠오를 지급하는 것은 보다 자세히,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죽은이가 사후세계를 보다 수월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말을 들으면 홍빠오를 지급하나,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상주의 입장에서는 장의사에게 불만이 추가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빈장업무 담당자는 이를 감독하고 빈장의식에 사용되는 금액의 표준을 공개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홍빠오는 예로 지급하는 것으로, 죽은 이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고 생자에게 안위를 얻을 수 있는 매체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장례의식의 출현이다. 경제발달과 발을 맞춰 빈장예식에서도 새로운 방식들이 생겼는데 그 중 다섯 가지를 예로 들자면 오자곡묘(五子哭墓), 효녀백금(孝女白琴), 규진두(叫陣頭), 전자화차(電子花車), 견망가(牽亡歌) 등이다. 이러한 의식들도 초기에는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후대로 전해져 오면서 의미는 퇴색되고 갈수록 호화스런 물건들을 사용하여, 시끄럽게 진행되면서 몇몇에 의하여 오해되고, 장의사들에 의하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가고 있다. 아직도 시골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전자화차의 경우 의식의 내용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 퇴색되고 원래 교화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현재의 유행하는 춤이나 노래들을 사용함으로 원래 교화목적은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장래업체들이 술선하여 이런 행위를 피하도록 교화하여야 한다. 장례의식에서의 교화목적은 아픔을 달래고, 효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생활풍속의 전승과 친 가족의 상을 당했을 때 상실감 혹은 과대한 정신적인 압박으로부터 오는 아픔을 달래지 못해 앞에 전술한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서를 분출하는 것으로 효녀백금의 경우 상제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울면서 함께 마음속의 슬픔을 달래는데 있다.¹⁰⁴

4.1.3.3 장례문화의 변화

현대에 와서 대만의 상장례의 특징은 간소화와 다원화라고 할 수 있다.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 현상과 상공업화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치의 사회풍습이 생겨나면서 빈장문화도 이에 영향을 받아 49 일에 걸쳐 치르던 상장례 기간은 점점 단축되어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에 복귀함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행하던 복잡한 의식은 단축되고 있다. 또한 인구가 밀집된 도시생활로 인해 집 앞 정원이나 길가 혹은 동네의 넓은 장소에서 천막을 치고 모든 장례를 치르

¹⁰⁴ 상계서, pp26~32

던 과거와 달리 전문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공공기관인 빈의관(殯儀館), 병원의 往生室(太平間), 혹은 개인이 설치하여 임대하는 전문 빈의관이 별도로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빈의관 또는 병원의 왕생실은 도시 민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도시화가 빈장예식에 가져온 변화는 이 뿐 아니라 장례식을 주관하는 당사자 역시 변모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시화가 됨에 따라 장례의식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이가 줄어들어 따라 장의사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1970 년대의 초기 장의사는 장례 물품만 제공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장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반하는 생명례의업체(生命禮儀業體)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임종 전에 준비하던 절차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 노인가장의 경우 도시생활로 협소해진 주거환경에 따라 관을 사전에 준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지게 되었고, 예전에는 잠자다 임종을 맞게 할 수 없어 임종이 임박해지면 반드시 수상(水床)이라 불리는 곳으로 옮긴 다음 목욕을 시키고 수의를 갈아 입힌 다음 곁에서 임종을 기다렸으나 1970~80 년대 이후에 들어서 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다. 전통신앙에 따르면, 사람은 사후에 그곳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든지,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입고, 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효심을 나타내고 또한 죽은 이가 사후에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명목의 종이돈 등을 태워 죽은 이에게 바쳤으나, 1980 년대말부터 정부에서 환경적인 문제로 이를 거론한 이후, 이러한 행위 역시 많이 줄고 있다. 또한 이전에 전례(奠禮)시 모든 가족이 장유순서에 따라 각각 삼례구고(三跪九叩)하여 큰 예를 다하였던 것과 달리, 빈의관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함에 따라 시간 및 장소의 제한으로 간소화 하여 진행되고 있다. 공공 빈의관의 경우 2 시간안에 모든 장례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는 도시화로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장례시설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부족현상에서 온 것이다.

그런 반면 도시화와 함께 상장례를 치르는 장소, 지도자, 장례과정도 새롭게 변경되고, 예절들이 많이 간소화되었으나 일부 부분은 개개인의 개성화, 특수화의 요구에 따라 오히려 다양해 지고 있다. 상주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의 상장례예식에서 현재 예의의 의의를 중시해야 하며, 예전의 종교적, 그리고 상업적인 요구에 따라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이전의 정수(淨水)는 가족들이 죽은이의 신체를 정결히 하기 위하여 직접 몸을 닦아 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가미되면서 종교인들이 가족을 대신하여 정수 또는 성수를 죽은 이의 몸에 뿌려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는 죽은 이의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효를 다할 방도를 없애서 아쉽기 이를데 없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유체정신(遺體淨身)은 이러한 전통적 의미를 다시 살려 가족이 직접 죽은 이를 만지고, 죽은 이의 정신 철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가 발전되고 도시화 진행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장례산업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있어 갈수록 장의사는 많아지고 이에 따라 의식도 각각 장의사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화 되고 있다. 많은 이윤이 발생할 것 같지만 갈수록 치열한 경쟁으로 이윤은 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당시 눈앞의 이윤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의 친환경 장례정신에 입각하여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좋은 제도와 품질은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변화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적극적 의의를 지닌 빈장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¹⁰⁵

¹⁰⁵ 상계서, pp35~38

4.2. 대만 전통 상장례 절차¹⁰⁶

4.2.1 임종 전 준비- 併廳, 搬舖, 遮神

4.2.1.1 併廳, 搬舖

한 사람이 병이 위독하여 임종이 임박한 위험한 상황이 되어 병원에서 가족에게 통지를 하면, 가족은 통보를 받은 후에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천지신명에게 제사한 다음 조상들이 모셔진 正廳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임종할 장소를 준비하는 것을 ‘併廳’이라고 한다. 고례의 ‘壽終正寢’에서 寢은 正廳을 말하고, 正廳은 천지신명과 조상에게 제사하는 곳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는 이곳에서 임종을 맞음으로 조상들과의 고별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 가정의 구조가 각기 다르고 일반적으로 正廳은 위층, 혹은 맨 위층에 있어 불편한 경우 죽은이의 유체는 가족의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위치를 정하여 통상 1 층의 입구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환자가 집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온 정신이 돌아오거나 호흡곤란, 인중 축소, 남자의 경우 발목이 붓거나 여자의 경우 얼굴이 부어 오르는 등 사망의 징조가 나타나면 임종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침대에서 죽으면 영혼이 하늘에 오르지 못한다는 속설에 따라 임종 전에 正廳에 자리를 준비하여 옮긴다. 고례에 의하면 ‘男徙正寢, 女徙內寢’으로 구분했으나 현재는 모두 正廳으로 옮긴다.

병원에서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 죽은이는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옛말에 ‘死人有出無入’이라 하여 외부에서 죽은이는 시신을 집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밖에 천막을 치고 시신을 보관하거나 사원, 殯儀館¹⁰⁷에 보관하였다가 택일하여 장례를 치른다. ‘冷喪不入莊(社)’의 폐습으로 인해 타지에서 병사 혹은 횡사한 모든

¹⁰⁶ 대만 전통 상장례 절차는 陳瑤塘, 『臺灣殯葬流程禮俗』, 『台灣民間殯葬禮俗彙編』, 高雄復文圖書出版社, 2005 를 참조 번역하였다.

¹⁰⁷ 殯儀館은 한국의 장례식장과 같은 기관으로 시체 보관 및 영결식을 마치고 화장장을 비치하고 있는 전문 장례식장이다.

시신과 영구는 莊園이나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에 천막을 치고 보관 하였다가 상을 치르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들은 환자가 병원에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집안에 준비된 자리에 옮긴 다음, 산소호흡기를 뽑아 마지막 임종을 하게 하는데 사전에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에는 사전에 준비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다.

환자가 임종이 임박해서 대청으로 옮길 때 미리 준비한 길이 여섯 척, 폭이 세척 정도 되는 널빤지나, 부챗살이 되어 있는 문짝을 2 개의 낮은 결상 위에 올리고 위에는 초석이나 하얀 천을 깔 ‘水床’위에 옮긴다. 통상 남자는 왼쪽(龍方), 여자는 오른쪽(虎方)에, 머리를 안쪽, 발을 밖을 향해 평평하게 눕히는데 대청에 준비한 水床은 벽에 너무 가까이 설치해서는 안되고, 水床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처럼 깨끗한 침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깨끗하게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런 흔적도 남김없이 다시 깨끗하게 돌아간다는 뜻에서 비유되었다. 한편 正廳으로 옮길 때 죽은이보다 연배가 많은 어른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가문에 특별히 공적을 이룬 장남이나 백숙부 등을 제외하고는 正廳으로 옮기지 않고 偏廳에 안치한다. 통상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안치하나 시어머니가 안 계신 부인의 경우, 남편이 살아 있더라도 왼쪽에 모시고, 유아나 미성년자는 남녀 구분 없이 偏廳 혹은 침실의 바닥에 안치하며 침대 위에 안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소수의 고택 이외에는 正廳, 虎龍 등이 따로 없으니 굳이 가릴 필요가 없으며 男左女右 원칙도 무의미해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안치하면 된다.

4.2.1.2 遮神

죽은 자의 시신을 正廳에 안치하게 되면 신명이나 조상신을 욕보게 하는 것으로 신명이 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신을 正廳에 안치하기 이전에 신명과 조상신을 모신 책상 위의 神明, 天燈, 天公爐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빨간 천 혹은 빨간 종이로 가리는 것을 ‘遮神’ 혹은 ‘辭神’이라고 한다. 요즘은 쌀을 담은 마대

포대로 神像을 가려서 덮고 가옥구조상 시신을 안치한 곳에 신명이 없으면 곧이 遮神을 할 필요가 없으나, 服喪中에 있으므로 조석으로 信佛에게 향을 올리는 것은 불경이 되므로 안 해야 한다.

4.2.2. 送終

4.2.2.1 擧哀(始哭)

일반적으로 병자가 생명이 끊어지면 전 가족은 슬퍼서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擧哀’ 또는 ‘始哭’이라고 한다. 혹자는 생명이 끊어지면 바로 문밖에서 ‘魂轎’¹⁰⁸를 먼저 태우고 나서 통곡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눈물이 시신 위에 떨어지면 죽은 이의 영혼이 바로 시신을 떠나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어 눈물이 시신의 몸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교도는 사망 후 8 시간 안에는 ‘八識’¹⁰⁹이 육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어 이때 소리를 내서 울면 망령이 육체를 떠나기가 안타까워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큰소리로 울면 안 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병자가 막 세상을 하직하여 가족들이 큰소리로 통곡하면 간혹 죽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죽은이가 가족을 떠나가는 것을 참지 못하여 우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黃文博은 『台灣冥魂傳奇』에서 ‘做謹爽’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를 생명이 끊어지고 나서 魂轎를 태우기 이전까지 가족은 큰소리로 울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做謹爽이후에 소리 내어 울 수 있다고 하였다. 做謹爽의 도구로는 대나무 샷대와 자기그릇, 銀角仔가 필요하다. 방법은 먼저 대청 문을 열고 모든 유족들이 문 앞에서 밖을 보고 꿇어 앉으면, 나이 많은 할머니가 대나무샷대를 처마에 걸치고 “대나무 샷대를 처마에 걸쳤으니 자손 대대로 부가 만년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¹⁰⁸ 장사(葬事) 때에, 고인(故人)이 전생(前生)에 입던 옷이나 갓을 담아 가는 교자(轎子)

¹⁰⁹ 오관(五官)과 몸을 통(通)하여 외계(外界)의 사물(事物)을 인식(認識)할 수 있는 여덟 가지의 심적(心的) 작용(作用). 곧,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 말나식(末那識), 아뢰야식(阿賴耶識)

하고 큰소리로 외치고 나서, 죽은 이가 지금부터는 인간들이 불로 익혀 먹는 밥을 더 이상 안 먹는다는 의미로 은각자가 담긴 자기그릇을 들어 올려 떨어뜨려 깨뜨리면서 큰소리로 “자기그릇을 들어 올려 깨뜨렸으니 자손들은 돈이 만년에 걸쳐 박힐 것을 서로 믿습니다” 라고 외친 다음 마지막으로 상가를 바라보고 “상주들은 큰소리로 우시요, 금은보화가 대청에 가득할 것이요” 하고 외치면 상가의 모든 유족들은 대성통곡을 한다 라고 했다.

4.2.2.2 유체처리

가. 易枕

환자가 생명을 마쳐서 대성통곡으로 슬픔을 표한 다음 바로 유체처리를 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하는 역침(易枕)은 죽은 이의 베개를 바꾸어주는 것으로 돌 베개나 銀紙錢을 가득 채운 높은 베개로 바꾸어 주는데, 돌 베개로 바꾸는 것은 자손들의 머리를 돌처럼 강하게 총명을 더해 달라는 의미이고,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은 턱을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여 입이 다물어지고 눈이 감기도록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나. 乞水, 목욕, 미용

시신을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먼저 ‘乞水’를 한다. 乞水는 죽은 이를 목욕시키기 위한 목욕물을 구해 오는 것으로 아들 등이 도사의 인도 하에 하천이나 계곡 혹은 물 도랑 등지에서 흐르는 물을 자기그릇에 담아온다. 이 물을 담아 오기 전에 ‘水仙公’, ‘水仙婆’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水仙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우리 부친(모친)이 돌아가셨기에 당신에게 얼굴을 씻을 물을 사려 왔으니 기뻐하시고 성스러운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하고 동전 2 개를 던져서 서로 다른 면이 나와 응답을 받으면 감사인사를 하고 동전 2 개를 물에 던져서 물을 사고, 金紙錢을 태우고 나서 물을 가지고 상가로 돌아온다. 만약 응답을 받지

못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물을 사오는데 이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흐르는 물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상류의 물을 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서 한번에 취해야 한다. 두 번에 걸쳐서 취하면 집에 또 다른 상을 당할 수 있고, 우물이나 가정의 항아리에 받아 논 물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천이나 계곡 물 도랑 등의 물이 대부분 오염되어 깨끗하지 못해서 물통을 수돗물에 연결하고 물통 속에 동전 2개를 넣은 다음 길가에 놓고 하천이나 개천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물을 구한다.

물을 구해오면 시신을 목욕시키는데 죽은이가 남자이면 남자 후손이 하고 여자 후손은 자리를 비키고, 죽은이가 여자이면 여자 후손이 하고 남자 후손은 자리를 비킨다. 목욕은 대나무 가지에 흰 형견을 끼워서 길러온 물에 담근 다음 시신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머리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높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듯 하면 된다. 자손들이 하는 것 이외에 부모가 살아있는 명이 좋은 사람이나 검시인이 할 수도 있는데 현대에는 장의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목욕을 할 때는 “당신은 이따 신이 되었으니 조상들과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라든가 “당신의 머리와 얼굴을 씻거나 자손들이 머리와 얼굴이 있겠고, 입을 씻어주니 자손이 만년에 걸쳐 부귀가 있겠고, 손을 닦아주니 자손에게는 자유가 있겠고, 몸 전체를 깨끗하게 닦아주니 자손은 모두 우정과 효도를 하겠고,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주니 자손들의 끝이 좋겠습니다” 등의 축복의 말을 함께 하면서 목욕을 시켜 준다. 유체미용은 화장사가 시신의 머리를 다듬어 주고 얼굴을 화장하는 것으로 화장사는 통상 여자가 한다.

다. 張穿

‘張穿’은 ‘張老衫褲’ 라고도 하고 죽은 이에게 수의를 갈아 입히는 것으로 통상 죽은 이가 죽기 전에 갈아 입히는데, 이는 죽은 이가 죽게 되면 바로 시신이 굳어져 가기 때문에 옷을 갈아 입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목욕과 같이 죽은 이

가 남자면 남자가, 여자이면 여자가 같아 입히고 현대에는 유족이 아닌 전문 장의사가 하고 나중에 흥빠오를 준다. 일반적으로 수의는 ‘唐裝’으로 남자는 긴 두루마기, 여자는 비스듬히 틀어진 적삼을 입히나, 현대에는 남자는 양복, 여자는 최근 유행하는 옷으로 하고 통상 상의를 기준으로 5벌, 7벌, 많게는 11벌까지 홀수로 한다. 長壽와 경제적인 빈부에 따라 여유가 있고 장수하면 많게, 젊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작게 하는데, 3 벌은 요절했을 때 입고, 九벌은 九와 拘의 동음으로 피한다. 수의의 아래옷은 남자는 바지 두벌, 여자는 세벌의 치마를 입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三裙兩褲, 子孫大富’에서 연유된 것으로 최근에는 상하의 구분 없이 연결되어 있는 옷으로 같은 수의 옷으로 입히는 경우가 많다. 통상 수의(壽衣)는 시집간 딸이 부모의 61세 생일에 선물을 하고 만들 때는 바지에 주머니를 모두 봉하여 자손들의 재물을 저승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 黃文博은 『台灣冥魂傳奇』에서 수의는 ‘轉去’시에 입는 옷으로 남녀 모두 정청에서 운명을 맞이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으로 두벌의 백색, 세벌의 흑색 혹은 짙은 남색으로 모두 다섯 벌을 입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남녀간의 약간 차이가 있으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4-1) 대만 수의(壽衣) 기준

성별/부위	머리	신체(내부에서 외부 순)					발	별도
		1	2	3	4	5		
남	壽帽	貼內衫	私底裘	衫褲	張衫	馬掛	黑襪壽鞋	荷包袋
여	頭箍	貼內衫	私底裘	衫褲	衫裙	裘仔	黑襪壽鞋	

대만 광복 이전에는 죽은 이에게 수의를 같아 입히기 전에 상주인 아들이 한번 먼저 입어보는 ‘套衫’이란 관습이 있었으나 광복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 없고, 상주가 套衫을 마치면 죽은 이가 살아온 모든 삶을 각각의 자손들에

게 나누어 주어서 자손들이 장수하기를 위하여 상주와 모든 가족들이 흙 설탕국수를 먹는 ‘抽壽’습속이 있다.

라. 舍銀

수의를 갈아 입힌 다음 빨간 봉지에 싼 동전 하나를 죽은이의 입안에 넣어 주는 것을 ‘舍銀’이라 하고, 동전 외에 구슬(진주), 옥, 쌀 등을 넣어 주는데 옥을 넣어 주면 딱딱하게 굳은 시신이 부드럽게 되기 때문이다.

마. 放手尾錢

고대에는 죽은 이가 임종하기 전에 종종 ‘放手尾錢’의 습속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초종의 유체 처리시에 한다. 放手尾錢의 의미는 죽은 이가 임종 시에 가진 모든 돈을 자손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후에 자손들이 영원히 부귀하기를 기원 하는 “放手尾錢富萬年”이다. 방법은 죽은 이의 유체처리시에 소매 자락 끝에 동전이나 지전을 넣어 두었다가 입관전에 이를 다시 꺼내어 쌀독에 쏟아 붓고 나중에 이를 꺼내어 아들, 며느리, 딸, 손자 및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옛날 돈은 모두 가운데 구멍이 있어 나중에 자손들이 손목(아버지가 사망 시 왼손, 어머니가 사망 시 오른손)에 매달고 다녔으나 현재의 돈은 구멍이 없어 放手尾錢으로 받은 돈을 그냥 가지고 다닌다.

바. 蓋水被

유체처리가 일단락 되면 바로 시신을 ‘水被’로 덮는다. 水被는 한 폭의 하얀 천 중앙에 빨간 천으로 좁게 재봉하여 만드나 현대에는 대부분 장의사에서 미리 준비된 노란 비단천에 도안이 장식 되어 있는 사전에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한다.

4.2.2.3 吊九條, 豎靈, 立魂帛, 招魂旛

가. 吊九條

유체처리가 완료되면 한 필의 하얀 천으로 시신을 모신 곳의 3면(다른 한 면은 벽)을 둘러쳐서 거는 것을 ‘吊九條’라고 하며 ‘孝廉’이라고 하기도 한다. ‘九條’

라고 부르는 것은 ‘彎九彎’이고 다른 어원으로는 예전에는 아홉 조각의 천으로 만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나. 豎靈

친지나 친구의 조문을 받기 위해서 상가에서는 政廳의 한 모서리 혹은 입구 에 임시영위를 설치한다. 임시영위는 하나의 책상 위에 혼백, 향로, 2 개의 하얀 초, 한 쌍의 남녀 卓頭儻, 기름 등 1 개(현재는 전구로 대체, 연화등이라고 부른 다)를 비치하고, 별도로 하나의 의자에 시신에게서 갈아 입힌 옷, 바지, 양말, 신 발 등을 올려 놓는다.

다. 立魂帛

임시 신주인 ‘魂帛’은 가로 10 cm, 세로 30 cm 정도인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 정 가운데에 죽은 이의 名諱를 ‘顯考某公諱某某府君之魂帛’와 같이 적고 오른쪽에는 죽은 이의 出生年月日時를, 왼쪽에는 死亡年月日時를 음력으로 적거나, 묘비와 같 이 우측에는 死亡年月을 적고 좌측에는 죽은 이와 상주의 관계에 奉祀 이라고 적 기도 한다. 혼백상의 글자수는 묘비나 명정과 같이 ‘生老病死苦’의 규정¹¹⁰에 의해 적는데 일반적으로 7 자나 12 자를 많이 사용하고 이 혼백은 출상할 때 산에까지 가지고 갔다가 묘지에서 태우거나 返主한다.

라. 招魂旛

‘招魂旛’은 ‘孝旛’이라고도 부르며 보통 3~4尺에 달하는 대 이과리가 길게 달린 대나무 가지에 3~4尺 정도 되는 7~8 조각의 하얀 깃발을 달아 메고, 깃발 에 죽은이의 名諱와 출생, 사망 연월일시를 적어서 혼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한다. 요즘은 혼백과 招魂旛을 법사 혹은 도사가 준비한다.

¹¹⁰ 「生老病死苦」의 규정은 혼백, 명정, 묘비명을 새길 때 적용하는데 글자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글자수에 따라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顯考某公諱某某府君之魂帛」는 총 12자로 「生老病死苦」의 「老」에 해당하고 「生民國六年十二月八辰」은 총 11자로 「生」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출생과 사망은 生에 해당하는 6자나 11자로 쓰고 고인의 명휘는 老에 해당하는 12자나 7자로 쓰는 「兩生添一老」법이나, 출생과 사망은 生에 해당하는 6자나 11자로 쓰고 고인의 명휘는 苦에 해당하는 10자를 쓰는 「兩生合一老」법, 혹은 출생, 사망, 명휘 모두를 동일하게 老에 해당하는 7자나 12자로 쓰는 「三老合一生」법이 있다.

4.2.2.4 腳尾飯, 腳尾錢, 腳尾燈, 腳尾香

가. 腳尾飯

‘腳尾飯’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이의 발 뒤에 한 그릇의 밥에 젓가락을 꽂아 한 개의 익은 오리 알과 함께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밥은 반드시 외부에서 지은 밥이어야 하고 오리 알은 반드시 삶아서 껍질을 벗겨서 놓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삶은 오리 알은 더 이상 부활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이도 다시 살아올 수 없음을 나타내고, 껍질을 벗기는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껍질을 벗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극락세계로 인도 되는 것으로 믿고, 腳尾飯은 악한 귀신을 위한 것으로 여겨 준비하지 않는다. 이러한 腳尾飯이 유래된 전설은 명나라 때에 한 범인의 처가 밥 한 그릇과 삶은 달걀 한 개, 그리고 젓가락을 가지고 남편을 만나러 갔으나, 남편은 이미 형을 받아 죽은 뒤였다. 그러나 남편을 제사할 향과 향로를 준비해 오지 못했으므로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해온 밥을 향로로 하고 젓가락을 향로로 하여 밥 그릇에 꽂은 다음 발 밑에 놓고 제사를 지낸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¹¹¹

나. 燒腳尾紙

腳尾飯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죽은이의 발 밑에 銀紙錢을 태우는 것을 말하며, 이는 죽은이가 저승에 가는데 사용하는 통행료로 반드시 여성 즉 딸, 며느리, 손녀, 조카딸 등이 한 장 한 장씩 찢어서 도자기 그릇이나 세수대야 안에다 태운다. 腳尾飯과 銀紙錢을 태우는 것은 죽은이를 입관할 때까지 하는데 지전을 입관시까지 태우려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는 여덟 시간까지만 단축해서 하기도 한다.

¹¹¹ 陳瑤塘 외, 『台灣民間殯葬禮俗彙編』, 高雄復文圖書出版社, 2005, p144

다. 點腳尾燈

죽은 이의 발끝에서 약 한 자 정도 되는 위치에 죽은이의 영혼이 저승세계에 가는데 비추어 주는 등으로, 중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長明燈’이라고도 불리며 요즘에는 2 개의 일반 작은 등으로 대체 하기도 한다.

라. 燒腳尾香

腳尾飯을 차려 놓음과 동시에 2 개의 향을 피워 죽은 이를 제사 지내고 향로에 꽂아 놓는다. 향로는 일반적으로 재를 가득 담은 그릇이나 가는 모래로 대체 하고 주의할 점은 향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주어야 한다.

4.2.2.5 燒魂轎

사람이 죽으면 대성통곡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문 앞에서 종이로 만든 수레를 태우는데 일명 ‘過小橋’라고도 한다. 이 수레는 죽은이가 저승세계에 갈 때 타고 가는 수레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홍색으로 만들고, 수레 속에는 銀紙錢을 담으며 별도로 수레를 끄는 두 사람의 마부가 있다. 최근에는 종이수레 대신 종이로 만든 자동차로 대체 사용하는데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4.2.2.6 子孫變服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자손들은 바로 ‘易服’으로 갈아 입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백색 혹은 흑색 옷을 입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파란색 옷을 입기도 하는데 이는 成服 시 입는 孝服과는 다르며 喪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다.

4.2.2.7 守舖與守靈

사망 이후 입관 전까지 실내에 시신을 보관하면서 지키는 것을 ‘守舖’라 하고, 이는 효심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 고양이를 지키는 역할도 있다. 내려오는 이야기

에 의하면 고양이가 시신을 뛰어 넘으면 시신이 바로 벌떡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을 안고 놓아주지를 않는다는 설이 있다. 입관 이후에 출상 시까지 관을 지키는 것을 ‘守靈’이라고 하고, 守舖, 守靈 기간에는 향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4.2.3 發喪

「發喪」이라 함은 가정에 상사(喪事)가 생겼음을 인근 이웃과 친지 또는 친구에게 알리고 시신처리를 위한 관 준비 등을 하는 절차이다.

4.2.3.1 門口示喪與掛孝

사람이 죽으면 죽은 이가 남자이면 하얀 종이에 ‘嚴制’라고 써서 대문 왼쪽에 붙이고, 죽은 이가 여자이면 ‘慈制’라고 써서 대문 오른쪽에 붙임으로 喪을 당했음을 표시한다. 그러나 집안에 죽은 이보다 나이 많은 어른께서 살아계시면 ‘喪中’이라고 써서 붙여야 하며, 일부 ‘忌中’이라고 써 붙이는 경우는 일본 방식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백색 종이를 길게 잘라 그 위에 ‘掛孝’라고 써서 대문의 ‘紅蓮’에 경사지게 붙이는데 남자의 경우 왼쪽으로, 여자의 경우 오른쪽으로 경사지게 하고, 처가 먼저 죽고 남편이 죽은 경우는 먼저 오른쪽으로 기울게 붙인 다음 그 위에 왼쪽으로 기울게 붙이고, 남편이 먼저 죽고 여자가 죽은 경우는 그 반대로 붙인다. 그 외에 오색천이나 삼베, 하얀 천을 문틀에 가로 댄 나무인 ‘門楣’에 걸어서 喪중임을 표시하는데 요즘에는 남자는 녹색, 여자는 황색의 ‘孝聯’으로 대체 하기도 한다.

4.2.3.2 爲鄰居貼紅

상가 이웃을 위해 하는 것으로 이웃이 모르고 상가에 불쑥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상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 좋은 일을 구하고 나쁜 일을 피해 달라는 의미

로 빨간 형겔이나 빨간 종이를 사각형으로 잘라서 좌우 인근 집의 문가에 붙였다가 출상 이후에 떼어 내는 것이다.

4.2.3.3 報喪

‘報喪’은 ‘報白’이라고도 하며 죽은 이의 친지와 주변에 초상을 알리는 것이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사망 시에는 집안 어른에게 먼저 알려 검시하게 하였고, 어머니가 사망 시에는 외삼촌에게 먼저 알려 확인을 한 이후에 입관을 하였다. 외가에 알리는 것을 ‘報外祖’라고 하는데 아들은 하얀 천과 검정 천을 하나씩 가지고 외가 문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울면서 “阿母啊 阿母啊” 하고 외치면 외할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나와 외손자를 일으켜 의자를 주어 앉게 한 다음 물 한 컵을 주어 마시게 하는데 이를 ‘淨口’라고 한다. 물 한 모금을 마신 다음 외가 어른에게 어머니의 사망 내용과 입관, 출상시간을 알려 주어 외숙이 입관 시에 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외할아버지나 외숙이 흰색 천은 받아 들고 검정색을 돌려주면 계속해서 생질 집과 교류를 하면서 살겠다는 의미이고, 이때 만약 검정색 천도 함께 받아 안 돌려 주면 이후에 생질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로 이는 상가의 얼굴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다. 외할아버지가 이런 저런 내용을 물어 본 다음 지팡이를 잡고 딸 집에 오면, 상가에서는 문 앞에 ‘外祖卓’이라고 하는 책상을 준비하여 이 위에 향로와 불 붙이지 않은 축대를 올려 놓고, 향은 향로에 거꾸로 꽂은 상태에서 모든 자손들이 탁자 옆에 꿇어 앉아서 외할아버지를 영접하는데 이것을 ‘接外祖’라고 한다. 외할아버지(혹은 외숙)는 자손들을 일으켜 세운 다음 책상보 한 모서리를 들쳐 올리고 거꾸로 꽂혀 있는 향을 바로 꿍고 방으로 들어가서 검시를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사망증명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나 외숙이 와서 검시를 하는 풍습은 이미 사라졌고, 단지 먼저 와서 위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손들이 무릎을 꿇고 외할아버지나 외숙을 맞이 하는 것은 어머니가 사망 시에만 그렇고 아버지 사

망 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나 최근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 시에 관계없이 모두 무릎을 꿇고 외가식구를 맞이 하는 것은 잘못된 풍습이다. 報白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경우 외가에 알리는 것 외에 다른 친척에게 알릴 때에도 하얀 종이와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報白이라 하고, 외가에 알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이 직접 가지 못하고 다른 친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紅包나 가벼운 선물을 함께 보낸다. 최근에는 모두 전화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직접 아들이나 친척이 가서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4.2.3.4 「哭路頭」與「匍匐奔喪」

출가한 딸이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바로 친정으로 달려와 상을 치르는데 집 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부터 엎드려 포복으로 기어 들어오면서 큰소리로 울며 “아버지(어머니)! 당신은 우리만 남겨놓고 아무런 가르침도 없이 그냥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가셨어요? 아버지(어머니)! 몇 년 더 사시어 자손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을 보시지 않고 가시면 다음에 내가 와도 다시는 아버지(어머니)를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등 哭喪을 하면서 들어 오는데 이것을 ‘哭路頭’이라고 한다. 哭路頭는 ‘哭喪’에서 온 것으로 ‘跪哭’과 같이 「孟姜女哭倒萬里長城」의 전설에서 유래 되었으며, 출가한 딸 외에 외지에서 일하는 자손들도 소식을 듣고 집 앞에 오면 꿇어 엎드려서 포복자세로 대문을 들어 오는 것을 ‘匍匐奔喪’이라고 한다.

4.2.3.5 風水擇日

發喪을 마치면 입관 전에 상가는 마땅히 택일사나 지리사를 청해서 입관, 출상, 매장을 위한 3대 중요한 의식의 시간과 沖剋對象¹¹²을 정하는데 이것을 ‘喪事

¹¹² 사주에서 지지가 충하여 극하는 뜻이다. 충한다는 것은 본래 상대를 공격하고, 확대하고, 엄하게 하는 것 등의 뜻인데, 충을 받은 상대는 상하게 되며, 충을 한 쪽도 상하게 되어 같이 상(傷)하는 결과가 된다. (역학사전, 2006.2.10, 백산출판사)

三大忌克'이라고 한다. 沖剋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척이 효자의 재액을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출생이 상극인 사람과 일반인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택일을 할 때는 '重喪日', '三喪日', '三煞日'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상주가 큰소리로 울 수 없는 경우(偷埋라 하여 남몰래 매장하는 경우)에는 도사를 불러 살풀이를 하여 미리 재액을 막아야 한다. 入棺, 運柩, 埋葬에 관한 택일 순서는 閩南인과 광둥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약간 다른데 閩南인들은 먼저 입관시간을 정하고 입관 후에 풍수지리사와 장남이 택지를 찾아 묘지 위치를 잡은 다음 출상과 안장시간을 정하고, 광둥인들은 입관, 출상, 매장 시간을 동시에 정한다.

4.2.3.6 成服帶孝

가. 孝服

상을 치르는 기간 동안 친족들이 죽은 이를 위해서 상복을 입는 것을 成服이라고 한다. 상복은 죽은 이와 의 직접적인 친족관계와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상복을 입는데, 상을 당해서 바로 같이 입는 易服과는 다르다. 상복시간은 각 민족과 지방마다 다소 달라서 어떤 지역은 사망 다음 날 입기도 하고, 어떤 곳은 택일하여 입기도 하는데, 광둥인들은 출상 전이나 범회를 할 때 상복례를 올리고 평상시는 검은 옷이나 흰색 상의와 바지를 입는다.

상복은 친근관계에 따라 '斬衰', '齊衰', '大功', '小功', '總麻' 등 五服이 있고, 오복은 각 상주가 해당 하는 상복을 입는다. 상복에 사용하는 천은 麻, 苧, 藍, 黃, 紅과 백색 천 혹은 麻, 苧, 淺黃, 黃, 紅과 백색 천으로 한다. 麻는 가장 무거운 孝로 자녀와 며느리, 장손 등의 상복을 만들고, 苧는 그 다음으로 죽은이의 손자, 생질, 藍는 증손자, 黃은 현손, 紅은 5 대손이 입으나 현대에는 현손이 紅을 입기도 한다. 백색은 죽은이와 동일 학렬이나 외척들이 입는데 요즘은 각 지역이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단지 일반적인 규정일 뿐이다. 대만의 상복 연원은

국가의 상례와 상복을 토대로 고령로부터 모든 친족이 尊卑長幼에 따라 애정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고, 남녀가 복장을 다르게 입어 일정기간 죽은이를 애도하는 방법이었으나, 현재 대만의 효복은 대부분 禮儀社에서 麻와 苧 두 종류의 천으로 만들어진 검정색 두루마기를 남녀 구별 없이 대여해 입고, 장례가 끝나면 반납하는 형태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나. 孝誌

유족들은 孝服을 입는 것 이외에 소위 ‘帶孝’라 불리는 ‘喪誌’를 다는데 이는 곧 상중이라는 표시로 ‘粗孝’와 ‘幼孝’로 구분한다. 粗孝는 初終에서 ‘除靈(滿七)’ 전까지로 천의 재질은 효복과 같으며, 아들과 딸 들은 삼베로 된 실 묶음이나 마포로 접은 나비모양을, 아버지 사망 시에는 왼쪽, 어머니가 사망 시는 오른쪽 손목에 차고 다니거나 소매 자락에 붙이고, 여자들은 통상 머리에 꽂기도 한다. 또한 이 기간에는 이발, 화장, 부부 합방, 영화 감상, 연회 등 일체의 유락생활이 금지 되고, 사원에 가거나 친구들의 방문을 정중히 거절하며, 꼭 할 얘기가 있으면 집 밖에서 하며 방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幼孝’는 ‘除靈’부터 효복을 벗는 기간까지 달고 다니는 것으로 백색 실로 나비 모양을 만들어 粗孝과 같이 소매 자락에 붙이고 다니는데 어떤 경우는 滿七에 백색 실로, 1 년이 지난 뒤 부친상은 남색, 모친상은 황색으로, 3 년후에는 홍색 실로 바꾸어 달았다가 2~3 일후 제거하는데 이를 ‘脫孝’라고 한다.

다. 孝杖

완전한 효복은 머리 복식, 신체, 신발과 지팡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팡이도 상복의 한 부분이다. ‘孝杖’은 원래 부모가 돌아가서 상을 당하면 아들과 장손은 슬픔이 극에 달하고 마음과 몸이 쇠약해져서 스스로 지탱하기가 어려워 걸어 다닐 힘조차 없으므로 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몸을 지탱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길이는 가슴에 이르렀으나, 현재에는 짧은 것으로 사용한다. 재질은 부친상에는 대나

무 지팡이, 모친상에는 오동나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친의 사랑은 마디가 있어 끊어짐이 있고, 모친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구분 없이 모두 대나무를 사용한다. 지팡이 맨 위에는 안에서부터 紅, 藍, 白, 苧, 麻의 순서로 다섯 가지 천으로 감는데, 요즘은 단순하게 麻布만을 감아서도 사용한다. 통상 아들의 지팡이는 백색 천 위에 麻布를 감고 장손인 경우 밑에서부터 紅, 藍, 白, 苧, 麻 순서로 감는데 이는 5 대를 표시하며 藍, 白, 苧, 麻인 경우는 4 대, 白, 苧, 麻는 3 대를 표시한다. 현재는 지팡이를 대부분 장례 이전에 준비하여 출상 당일 혼백과 함께 장남 혹은 장손이 들고 가서 장례를 마친 이후에 묘비를 세울 양쪽이나 묘지 위에 꽂는다. 따라서 봉분 위에 꽂혀 있는 지팡이로 아들의 수를 알 수 있고 장손의 지팡이로 몇 대에 걸친 사람인지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客家人들은 孝服을 입을 때는 항상 지팡이를 짚으며 장례 후에 다시 집으로 가지고 왔다가 除靈 시에 孝服과 함께 태워서 없앤다.

한편 내정부의 1991년 1월 26일 수정 발표된 「國民禮儀範例」 제 5 절 喪期及喪服, 제 55 조부터 59 조에 이르기까지 상의 기간을 3년, 1년, 9개월, 5개월, 3개월로 구분하여 대상과 효복의 범위 및 입는 시기, 상장 부착 규정 및 금기사항을 규정해 놓았고, 이는 단지 표준으로 제시했을 뿐 각 지역별 특수한 풍습이나 죽은이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참고로 대만의 「국민범례의례」에 규정된 상기와 상복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2) 대만 상장례시 복기와 해당 가족 구분표

등별	복기	해당가족
1	3년상(실제 25개월)	부모
2	1년상	조부모, 백숙부모, 부부, 형제자매, 고모, 고모부 부모, 자녀, 생질녀, 양자녀의 생부모
3	9개월	당 형제, 증조부모, 아버지의 백숙 모, 손자녀
4	5개월	백숙부조부모, 당 백숙부모, 종당 형제, 당자매, 이모, 외조부모, 형제의 처, 며느리.

5	3 개월	중조부모, 아버지의 고모, 손자며느리, 증손, 생질, 사위, 외숙, 이모 의형제자매
---	------	--

4.2.3.7 治喪工作

상을 치르는 일은 해야 될 일이 많으면서 예의도 번거롭고 복잡하여 결혼이나 다른 예식에 비해 복잡한 일이 많아 순조롭게 상을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통상 장소의 크기나 지위에 따라 전체 상장례의 일을 맡아 주관하고 일을 분배 지휘하는 ‘總幹事’, 각종 출납과 제사, 제의물품 기록 및 각종 흥빠오를 준비하는 일을 담당 할 ‘會計組’, 각종 필요한 용품구매, 차량 준비, 영결식 장소 대여 및 준비, 회계 조에서 지출할 흥빠오와 답례품 준비, 악대와 장례행렬 선두 준비, 부고 문 작성 및 발송, 각종 제사에 필요한 물품 준비, 발인식에 필요한 의자 준비 및 배열, 상장례 기간 동안 필요한 각종 제의 물품 구매 및 식사 준비, 기타 서무 준비 등을 처리할 ‘總務組’, 제사 기록부, 방문록, 조의록 준비, 래방객 기록 및 안내, 장갑, 수건, 꽃 지급, ‘公祭’단위 기록, 현장 접수 된 조의품 접수 기록 등을 담당할 ‘接待組’ 사회자와 제사 도우미 섭외, 죽은 이 약력 보고, 감사문 작성, 음향, 조명, 반주, 촬영 협조, 발인식장 준비 협조, 제사물품(향, 축대, 꽃 과일, 술, 술잔, 자리, 카펫) 등 검사 등을 담당할 ‘奠儀組’, 당일 차량 주차 안내 및 질서 유지, 출상 노선 및 행렬 안내, 紅包 지급 등을 담당 할 ‘行列組(交通組)’, 상복 제작, 출상 후 식장 청소, 남아서 집을 지키고 돌아온 영을 모실 ‘內場組’등을 구성하여 각자가 맡은 일을 처리 하도록 한다.

4.2.3.8 사망 신고

상주는 사전에 병원 혹은 위생소에 사망증명서를 신청해야 입관을 할 수 있고 1 개월 이내에 ‘戶政事務所’에 사망 등기를 해야 한다.

4.2.3.9 買棺, 放板, 接板, 積棺, 還庫, 乞飯

가. 買棺

관목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인데 관목을 구매한다고 말하는 것이 금기이므로 ‘買板’, ‘買柴’, ‘買大厝’ 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모친상에는 외조부께서 오시면 함께 가서 구매했었고, 부친상에는 집안 어른과 함께 가서 구매 했다. 관목은 6 조각의 나무판자로 조합된 것으로 뚜껑을 ‘天’, 바닥을 ‘地’, 왼쪽을 ‘日’, 오른쪽을 ‘月’, 머리 쪽을 ‘龜頭’, 발 쪽을 ‘龜尾’라 하고 龜頭 위쪽에 ‘福’자를, 龜尾 위쪽에 ‘壽’자를 적으며 그래서 관목을 ‘壽’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 放板

관목을 상가로 운반해 오는 행위를 ‘放板’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관을 운반하는 일을 많은 수의 종친 혹은 동성의 사람들이 짚신을 신고 했으나, 최근에는 모두 관목 판매상이 고용한 12~16 명의 인부들이 형짚신 혹은 운동화를 신고 관목을 차에 싣고 내리며, 나중에 상가에서 이들에게 紅包를 지급하고 있다. 관을 운반하는 도중 다리나 교차로를 만나면 통행료로 銀紙錢을 뿌리고, 운반은 입관 시간에 맞추어 황혼 이전에 완료 한다.

다. 接板與積棺

관목이 상가 문 앞에 도착하면 모든 유족들이 효복을 입고 한쪽에 꿇어 앉아 관을 영접하는 것을 ‘接板’ 혹은 ‘接大壽’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土地公’과 ‘大門神’을 위해 金紙錢을, 관을 운반시 관에 따라온 잡신을 위해서 ‘銀紙錢’을 태우며 司公이 法事를 하거나 婆仔가 “관 뚜껑을 덮어 두면 이 자손들에게 해마다 부귀를 주시고, 관을 들어 올리면 이 자손들에게 아들을 낳고 재물이 들어 오게 하시고, 관을 태우고 나면 자손 중에서 장원이 나오게 해 주소서”¹¹³하고 상서로운 주문을 외운 다음 관의 머리부분이 먼저 들어가게 하여 대청으로 옮긴다. 관이

¹¹³ 壽金蓋棺厝互這子孫年年富! 壽金提起來, 互這子孫添丁與進財! 壽金燒得完, 互這子孫中狀元! 을 필자가 번역

대청에 들어오면 유족들은 큰소리로 “아버지(어머니) 당신의 새로운 자리를 사왔습니다”하고 외치면서 울고, 관을 대청 앞에 놓 때는 뚜껑을 열어서 관 옆에 뒤집어 놓는다. 자손들이 관을 영접할 때 집사나 婆仔가 쌀 한 포대와 흥빠오 하나, 관을 청소할 빗자루 하나를 관 뚜껑 위에 눌러 놓는데 이를 ‘磧棺’이라고 한다.

4.2.3.10 唸腳尾經, 開魂路

‘唸腳尾經’ 과 ‘開魂(冥)路’는 사람이 죽은 후 아직 입관 전에 승려나 도사를 청해서 영전에 경을 읽어 주는 것으로서 주요한 용의는 죽은이를 저승세계로 편안하고 순조롭게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지방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한 사람의 승려나 도사를 불러서 약 1시간에 걸쳐 죽은이의 이름과 주소, 출생과 사망 일시, 유족의 이름 등을 생각하면서 ‘腳尾經’으로 ‘阿彌陀經’을 소리 내어 외워 주고, 입관 전 혹은 입관 후에 다시 5명 정도의 승려 혹은 도사를 불러 오후부터 저녁 8~9 시까지 죽은 이를 위해서 처음 범회인 ‘開魂路’를 하는데 이를 ‘入木功德’이라고도 한다.

4.2.3.11 還庫

관목을 사가지고 와서 대청에 들여 놓 다음 혹은 범회가 끝난 다음에 ‘燒庫銀’의 풍습이 있는데 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저승에서 빚진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이를 갚아야 된다고 해서 ‘還庫’라고 한다. 즉 ‘做功德還庫錢’으로 상 장례 습속의 일종이다. 庫錢의 수량은 죽은이의 태어난 해와 姓氏, 지역에 따라 다른데 북쪽지역의 일반적인 풍습에 따르면 쥐띠는 10 만, 소띠 38 만, 범띠 12 만, 토끼띠 12 만, 용띠 13 만, 뱀띠 11 만, 말띠 36 만, 양띠 14 만, 원숭이띠 8 만, 닭띠 9 만, 개띠 9 만, 돼지띠는 13 만 NT\$에 해당하는 銀紙錢을

태운다.¹¹⁴ 또한 이 돈은 다른 잡신이 훔쳐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모든 후손이 손을 잡고 둘러 쌀 가운데 승려나 도사의 주재하에 의식을 치르고 자손들의 성명과 수량을 신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圍庫銀’이라고도 한다.

4.2.3.12 留三頓與乞飯

민간풍습에 의하면 죽은이의 사망 시간에 따라 자손에게 몇 끼의 식사를 남겼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아침 식사 전에 사망하면 자손에게 세끼를 남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고, 아침 식사 이후에 사망하면 두 끼를 남기는 것으로 역시 좋으나, 점심 이후 사망하면 한끼를 남기는 것으로 보통이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 사망하면 자손에게 한끼도 남기지 않고 떠난 것으로 가장 안 좋아 司公이 쌀 바가지에 쌀을 가득 채워서 죽은이에게 “자손으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 두 끼 남겨 주세요”하고 구걸하거나, 도사가 주문을 외우는 가운데 쌀을 키는 체에 쌀을 담아 흔들면서 죽은이에게 고하기를 “체 밖에 떨어 지는 것은 당신 몫이고 체 안에 남아 있는 것은 자손이 먹게 남겨 주세요”하고 구걸하는데 ¹¹⁵ 이를 ‘乞飯’이라고 한다.

4.2.3.13 訃告

‘訃告’ 또는 ‘訃聞’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친지와 친구들에게 사망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모친상 시 외가와 부친상 시 가족 어른에게 알리는 것 이외에는 모두 우편으로 사각 모서리 중 한 곳을 약간 태워서 보냈으나 최근에는 이런 풍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부고 문 작성은 정해진 일정한 양식에 의해 죽은이에 관

¹¹⁴ 陳瑤塘 외, 상계서, p186

¹¹⁵ 徐福全, 台灣民間傳統喪葬儀節研究 台南縣採訪錄, 陳瑤塘 외, 『台灣民間殯葬禮俗彙編』, 高雄復文圖書出版社, 2005, p187에서 재인용

한 사항, 유족에 관한 사항, 임종장소, 발인 및 매장 시간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死者에 대한 稱謂

죽은 이에 대한 ‘稱謂’는 부고를 발송하는 당사자에 따라 구별된다. 자녀가 부친상에 발송 시는 부친상은 ‘顯考〇公〇〇府君’, 모친상은 ‘顯妣〇母〇孺人閨名〇〇’라 하고, 만약 조부모가 생존해 계시면 顯考, 顯妣 대신 先考, 先妣라고 쓴다. 모친상에 孺人 대신 夫人, 太夫人 이라고 적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나 조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모친상을 당한 경우에도 太夫人으로 적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상을 당해 부고를 하는 경우는 ‘先夫〇〇〇君’, 남편이 妻喪을 당해 부고할 때는 ‘先室〇〇〇女士’, 조부모상에 손자가 부고할 경우는 ‘顯祖考(妣)〇公(母)〇〇府君(太孺人)’, 부모가 자녀상에 부고를 할 경우는 ‘〇남(녀)〇〇〇君’으로 하고, 이때 부모는 자신을 反服父, 反服母로 칭한다. 형제자매가 부고하는 경우는 ‘先兄(혹은 〇弟)〇〇〇先生’, ‘先姊(〇妹)〇〇〇小姐’라고 적는다.

나. 사망 장소

정상적인 사망으로 나이가 60 이상의 남자는 ‘壽終正寢’, 여자는 ‘壽終內寢’이라 하며 60 이하인 경우 ‘因病去逝’ 혹은 ‘因車禍逝世’라고 사실대로 적는다.

다. 亨壽或享年

60 세 이상인 경우 ‘亨壽’라하고 60 이하인 경우는 ‘享年’이라 하며 나이가 적은 사람은 ‘得年’이라고 쓴다.

라. 孤, 哀子

부친상은 ‘孤子’, ‘孤女’, 모친상은 ‘哀子’, ‘哀女’로 쓰고 부모님께서 모두 안계실 때는 ‘孤哀子’, ‘孤哀女’로 쓴다. ‘不孝男’, ‘不孝女’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 護喪夫(妻)

아내상을 당하고 자녀가 어리거나 남편상을 당한 경우 자녀가 어리면 ‘護喪夫(妻)’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夫(妻)’로 써도 되며 위치는 자녀보다 한 칸 위에 크게 적는다.

바. 隨待在側

임종 시 자녀가 옆에 있었을 경우 사용하고, 만약 옆에 없었으면 사실대로 ‘聞耗自 OO 星夜趕回匍匐奔喪’과 같이 쓴다.

사. 停柩在堂

靈堂에 모신 경우는 ‘停柩在堂’이라 쓰고 殯儀館이나 기타 장소에 모신 경우는 ‘停柩殯儀館’ 혹은 ‘停柩某地’라고 쓴다.

아. 發靱安葬

‘發靱安葬’은 단지 매장을 위한 출발을 안내하며, 화장을 할 경우는 ‘發靱火化安靈於 OO 內’ 혹은 ‘靈骨安厝於 OO’라고 적는다.

자. 친족배열순서

친족의 기입순서는 孤(哀)子, 媳婦, 孤(哀)女, 女婿, 義子, 義媳, 義女, 義女婿, 孫, 孫媳, 孫女, 孫女婿, 外孫, 外孫媳, 外孫女婿, 曾孫, 曾孫女, 兄(嫂), 弟(婦), 姊(夫), 妹(夫), 侄, 侄女, 侄媳, 侄女婿, 侄孫, 侄孫女, 侄孫女婿, 護喪夫(妻), 外甥, 중친대표, 친척대표, 친구대표 순으로 적는다. 일반적으로 남자 친족만 적으나 모친상에는 여자 친족 중 胞兄(嫂), 弟(婦), 胞姊(夫), 妹(婿) 등을 추가로 적는다. 친족이 너무 많아 다 적을 수가 없는 경우 맨 마지막에 ‘族繁不及備載’라고 적어 모두 적지 못했음을 표기한다.

차. 哀傷語

친족의 이름 밑에 붙이는 슬픔을 표하는 말로 죽은이와 유족간의 관계에 따라 슬픔의 정도가 다름을 나타낸다. ‘泣血稽顙’은 ‘泣血稽首’와 같은 말로 눈물에

서 피가 날 정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것으로 아들 이름 밑에는 泣血稽顙, 며느리와 딸 이름 밑에는 泣血稽首를 쓴다. 출가한 딸은 이미 다른 집안의 가족이 되어 며느리보다 덜하기 때문에 이름 밑에 泣淚稽首라 쓰고 사위, 질녀사위, 손녀사위, 수양딸 사위 이름 밑에는 ‘拭漏頓首’ 혹은 ‘拭漏頓首’를 쓰며, 손자, 손자며느리, 손녀, 증손, 증손녀, 질부, 질녀 등은 ‘泣淚拜’, 형제는 ‘頓首’, 자매는 ‘歛衽’, 호상은 ‘悲’, 종친대표, 친척대표, 친구대표 이름 밑에는 ‘鞠躬’이라고 쓴다. 그러나 이런 애도의 말이 너무 번잡하고 대상에 따라 다르고 이해가 어려워 잘못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재는 일반적으로 모두 ‘同泣啟’로 대체 사용한다.

카. 부고 봉투상의 訃

통상 수수한 색깔의 부고 봉투에 검정색 큰 글씨로 ‘訃’ 자를 쓴다.

4.2.4 입관

4.2.4.1 辭生

‘辭生’은 입관 전에 죽은 이에게 마지막으로 전별하는 제사로 승려나 도사를 청해 경을 읽어 주고 준비한 음식을 먹여 주는 것이다. 제물은 ‘十二道菜’를 준비하며 ‘婆仔’나 명이 좋은 사람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하면서 음식을 한가지씩 들어 올려 죽은이의 입가에 가져다 먹여 주는 것처럼 한다. 예를 들어 “콩을 한입 먹으면 자손이 오래 살고, 말린 두부 한입을 먹으면 자손들마다 큰 관리가 되고, 하나의 魚丸을 먹으면 자손들 중에 장원급제를 하고, 닭을 먹으면 가세가 일어나고, 생선을 먹으면 해마다 여유가 있고, 부추를 먹으면 길고 오래가고, 미나리를 먹으면 자손들이 근검절약하고, 육류고기를 먹으면 논밭이 만석꾼이 되고, 닭 머리를 먹으면 자손이 큰사람이 되고, 닭 꼬리를 먹으면 자손들이 시작과 끝을 알고, 돼지 배 고기를 먹으면 자손들이 크게 발전 합니다.” 하고 12 가지 음식을 모두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오곡을 드리니 자손들은 福祿을 얻어야

하고, 한입을 같이 먹으니 자손들은 오래도록 부귀가 함께 합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별도로 三牲祭物을 준비하여 土地公에게 제사한다.

4.2.4.2 分手尾錢

‘辭生’ 이후 입관 전에 初終의 유체처리 시에 죽은 이의 소매에 넣어 둔 돈을 꺼내어 바가지에 담는 것을 ‘放手尾錢’이라고 하고, 나중에 모든 유족이 나누어서 손목에 묶는다. 이때 같은 항렬의 모든 유족이 균등하고 동일하게 나누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전에는 죽은 이와 유족간의 관계를 끊어 내는 풍습으로 삼베 실이나 하얀 천으로 한쪽은 죽은 이의 몸에 묶고 한쪽은 유족이 잡고 있다가 도사가 행운의 말을 마치면 잘라서 유족이 잡고 있는 쪽에 銀紙錢을 싸서 태우는 ‘割鬮’라는 의식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다.

4.2.4.3 入殮

‘入木’ 또는 ‘入殮’이라고 하는데 시신을 들어 올려 관속에 넣는 의식으로 상례의 3 대 忌剋중에 하나로 죽은 이와 유족의 생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하고, 죽은 이와 서로 상극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입관은 일반적으로 사후 24 시간 이내에 대부분 오후 5 시에서 7 시 사이인 酉時에 하며 시간이 되면 모든 유족이 시신을 함께 들어서 관 속에 안치한다. 큰아들이 머리, 둘째가 다리, 나머지는 이를 도와서 다른 부분을 잡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아들과 며느리가 머리 쪽을, 딸은 다리 부분을 잡고 입관하는 경우도 있다. 입관에 참석하는 사람은 시신을 옮길 경우 시신의 입이 벌어져 시신으로부터 나오는 독가스 등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일을 모두 장의사의 인원들이 하기 때문에 가족은 상징적인 행위만을 한다. 옛날에는 모친상에는 반드시 외가 어른이 참석하여 시신을 검시한 후에 입관을 할 수 있었다. 입관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출생이 서로 상극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입관 시 유족의 눈물이 시신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유족의 그림자가 시신 위에 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밖에서 천둥벼락이 치는 시간을 피해야 하는데 이것을 ‘入木四忌’라 하고 이를 범하면 나쁜 운이 따른다는 속설이 있다.

4.2.4.4 放陪葬品

입관 시에 관 속에 죽은 이와 함께 담은 물품을 말하는데 매 물품마다 각기 아래와 같은 역할이 있다.

가. 차 잎, 숯, 풀잎

관 아래에 두며 이는 피와 수분을 흡수하기 위함이다.

나. 銀紙錢, 蓮花金

죽은이가 저승에 가는데 필요한 통행료로 역시 수분을 흡수 한다.

다. 칠성판

길이는 다섯 자 반, 넓이는 한 자 척, 두께는 五分 정도의 나무판자로 위에 七星 혹은 太極이라 적어서 액운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나 현재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라. 복숭아 혹은 버들 가지

죽은 이가 저승세계에 갈 때 달려드는 개를 때리기 위해 사용한다.

마. 돌, 삶은 오리 알, 발효된 콩

저승에 가는 길에 따라오는 개를 쫓기 위한 용도 이외에 죽은 이가 이제 더 이상 돌아 올 수 없음을 표시하는데, 돌은 영원히 썩지 않고, 삶은 오리 알은 다시 부화할 수 없으며, 발효된 콩은 다시 싹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은 오리 알과 돌맹이를 관속에 넣는 또 다른 뜻은 부부간에 죽은 이가 살아 있는 다른 상대방을 찾아 올까 무서워서 넣는 목적도 있어 만약 상대방이 살아 있지 않으면 이런 물품은 넣지 않아도 된다.

바. 過山襪

하얀 천으로 만들며 왼쪽과 오른쪽의 대롱을 만들어 한쪽은 정면으로 꿰매고 한쪽은 반대로 한다. 이는 죽은 이가 저승세계에 갈 때 중간에 악귀를 만나면 이를 던져 주어 악귀가 이 바지를 입으려 하나 순조롭게 입지 못하게 하여 시간을 벌어서 죽은 이가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 糕餅, 飯糰

개 먹이 용으로 떡과 주먹밥을 넣는다.

아. 雞枕

닭털과 개털을 하얀 천에 담아서 만든 베개로 ‘雞啼狗吠’를 의미하며 죽은 이로 하여금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잘 시간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관속에 함께 넣는 물품으로 대체로 죽은 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물건 즉 안경, 연필, 책, 지팡이, 장갑, 마장과 여자의 경우 빗, 부채, 손수건, 거울 등을 함께 넣는다. 시신을 중심으로 사방에 庫錢, 銀紙錢을 놓으며, 시신의 고정을 위해 죽은 이가 입던 옷이나 휴지 등으로 짝 채운 다음 왼발 밑에는 蓮花金, 오른발 밑에는 蓮花銀을 넣는데 이는 ‘左踩金右踩銀’의 원리이나 일부 지방에서는 여자의 경우 ‘右金左銀’으로 하기도 한다. 시신을 완전히 고정시킨 다음 여자의 경우에 며느리가 머리를 빗기고 모자를 씌우고 딸은 양말과 신발을 신긴다. 죽은 이에게 신기는 신발은 일반적으로 형겁으로 된 신발인데 만약 가족신을 신기면 바닥에 형겁이나 빨간 종이를 붙여서 죽은이가 되돌아 올 때 소리 나는 것을 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죽은 이가 생전에 즐겨 달고 다니던 금붙이나 보석(반지나 팔찌) 등을 넣어 주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도굴 발생이 많아 귀중품을 함께 넣어 주는 풍습은 이미 없어졌다. 부장품을 모두 넣은 다음에는 자손들이 순서대로 서서 영구를 한 바퀴 돌면서 마지막으로 시신을 한번 본 다음 하얀 천으로 덮고 뚜껑을 닫는다. 뚜껑을 닫기 전에 도사를 청해 경을 읽어 주고 뚜껑을 들어서 덮은 다음에

자손들은 큰소리로 곡을 하여 효도를 표현한다. 입관이 끝난 다음부터는 ‘棺’을 ‘柩’라고 칭한다.

4.2.4.5 封釘

‘封釘’은 관 뚜껑을 덮은 다음 사각 모서리와 머리부분에 못을 박는 의식이다. 이때 사용하는 못은 사각에는 길이가 5 촌정도 되는 긴 못을 박고 머리부분에 박는 못은 ‘子孫釘’이라 하여 작은 못으로 살짝 박았다가 나중에 장남이 입으로 물어서 뽑아 낸 다음 쌀 되나 영정 옆의 향로 옆에 두었다가 출상 이후 태워 버린다. 封釘은 죽은 이가 남자인 경우 친족 중 한 사람이 하고, 여자인 경우 외가 어른이 한다. 封釘을 하기 이전에 道士나 司功이 자바라 같은 동 방울로 관 끝을 두드리면서 경을 읽은 다음에 남자 자손들은 왼쪽, 여자 자손들은 오른쪽, 혹은 모두 관 끝에 꿰어 얹은 상태에서 장남이 쟁반에 빨간색으로 싼 작은 도끼, 수건, 封釘자에게 줄 紅包를 쟁반에 담아 머리 위로 올려서 封釘을 요청한다. 封釘者는 장남을 일으켜 세우고 도사나 사공의 인도하에 남자의 경우 福釘(왼쪽 머리부분), 祿釘(오른쪽 머리부분), 壽釘(왼쪽 발 부분), 全釘(오른쪽 발 부분), 子孫釘(관의 머리부분)의 순서로 못을 박고, 여자의 경우는 祿釘(오른쪽 머리부분)과 福釘(왼쪽 머리부분)순서를 바꾸어서 하는데 반드시 주의할 것은 子孫釘을 박을 때 외에는 절대 관의 머리 부분을 돌아서는 안 된다. 封釘을 할 때 도사가 상서스러운 말을 하고 후손들에게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한다. 봉정이 끝나면 봉정자에게 홍빠오를 주는데 모친 사망 시 외가 어른에게 주는 경우 외가 어른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받아 들면 이는 이후 상호 왕래를 끊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봉정은 입관 후 모두 완벽하게 끝나지만 출상 전에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하는 것을 ‘點釘’이라 하고 모든 封釘 절차는 여기서 끝난다.

4.2.4.6 拼腳尾

입관 후에 시신을 안치했던 판자, 초석, 기타 입고 있었던 옷과 차려놓았던 腳尾飯, 腳尾燈 등을 치우고 정리하는 것을 ‘拼腳尾’ 혹은 ‘送腳尾’라고 한다. 방법은 사람을 시켜 밖으로 가지고 나가 태우는데 일부 유물은 남겨서 자손들이 사용한다. 특히 ‘財庫’의 ‘庫’와 발음이 같은 바지를 선호한다.

4.2.4.7 豎靈

拼腳尾 이후 영구 앞에 작은 靈堂을 설치하고 친구들이 문상하게 한다. 설치하는 초종시와 같이 하고 이때는 영정사진과 꽃, 과일 등의 제물을 올리고 燈은 밤낮 모두 꺼지지 않게 주의 한다.

4.2.4.8 捧飯, 叫起叫暈

입관과 豎靈을 한 다음부터 식사를 올리는 것을 ‘捧飯’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死人無三頓’이라 하여 조석으로 두 번만 올리나 지방에 따라서는 아침, 점심, 저녁 3 찬을 모두 올리기도 한다. 식사는 밥 한 그릇과 한가지 반찬만 올리고 식사를 올릴 때 자손들은(일반적으로 며느리, 딸)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식사 이후에 곡을 하여 슬픔을 표시하는데, 이는 망인으로 하여금 아침에 일어날 시간과 저녁 때 잠잘 시간을 알려 주는 것으로 ‘叫起叫暈’라고 하나, 최근에는 조석으로 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침식사를 올리기 전에 먼저 세수대야에 물, 칫솔, 치약을 담아 올려 세수를 하게 하고, 9 시 전후로 아침식사를 올리고 저녁은 오후 4~5 시경에 올려 죽은 이로 하여금 일찍 쉬게 한다. 식사 시간은 30 분 정도를 주고 찻를 던져 죽은이가 식사를 잘 했는지 유무를 聖杯로 확인한 다음 銀紙錢을 태운 다음 상을 치운다. 일반적으로 捧飯은 滿七까지 하나 백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식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낭비가 많아져 민간도 소위

‘寄飯’이라 하여 봉지에 쌀과 마른 음식, 새로운 재료를 영정 옆에 나누어 망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지어 먹게 하는데 그래도 10 일째에는 捧飯을 해야 한다.

4.2.4.9 打桶, 暍棺腳

封棺 이후 출상 전까지의 기간을 ‘打桶’이라 하고 옛날에는 이 기간이 길수록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실제 이런 풍습은 잘못 된 것으로 위생적인 면을 고려 한다면 빨리 출상하여 매장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다. “在生一粒豆不願死後拜豬頭”라고 한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이 생존 해 계실 때 최선을 다해 효도를 해야지 부모가 죽고 나서 출상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모신다고 효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들은 돌아 가면서 영구 옆에서 잠을 자면서 수시로 일어나 腳尾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暍棺腳’라고 하고, 잠을 잘 때는 죽은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누워서 자면 안 된다.

4.2.4.10 孝燈

입관 후 상가의 입구 양쪽에 ‘孝燈’을 매다는 풍습이 있다. 이 孝燈은 대 창살을 이용해서 원추형으로 만든 위에 하얀 종이를 바르고 남색 글씨로 한쪽 면에는 성씨를 크게 쓰고 반대쪽에는 ‘O代大父(母)’라고 쓴다. ‘代’수는 실제보다 한대수를 더해서 쓰는데 조부모인 경우는 4대로, 증조부모인 경우는 5대라고 쓰거나, 손자가 없는 경우 3대, 손자가 있으면 4대, 증손자가 있으면 5대라고 쓴다. 보통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를 쓰나 만약에 高孫子가 있으면 실제로 5대이기 때문에 정 5대와 성씨를 빨간색으로 쓴다. 효등 위에는 다시 마포로 가리개를 만들어 씌우는데 예전에는 대수에 따라 5대인 경우 5색천(麻, 苧, 白, 藍, 紅), 4대인 경우는 4색(麻, 苧, 白, 藍), 3대인 경우는 3색(麻, 苧, 白)으로 띠를 두르거나 아니면 麻布로 대수만큼 둘렀다.

4.2.4.11 銘旌

명정의 원래 이름은 ‘銘而旌之’이다. 고대에 사망한 관원의 공적이나 선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친척이나 친구들이 60 세 이상은 홍색 천으로, 60 세 이하는 백색 천으로 만들어 죽은 이의 관함과 名諱를 적어 기다란 대나무 위에 매달아 출상시 행렬 선두에 서서 행렬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도 명정을 만들며 사위나 손녀사위가 각자 하나씩 만들어 오거나, 하나로 합해서 만들기도 하며, 아홉 척 길이에 폭 한 척 반의 빨간 천 위에 아버지인 경우 파란색, 어머니인 경우 노란색 종이를 정사각형으로 자른 다음 경사지게 글씨를 써서 붙이고 푸른 대나무 끝부분에 매단다. 문자 내용은 우측 상단에 ‘哀輓’, 중앙에는 혼백을 쓸 때와 같이 ‘生死病老苦’ 원칙에 따라 순서대로 ‘顯妣陳媽楊太夫人闈名金蓮亨陽壽九十歲之銘旌’, 좌측 하단에는 명정을 보낸 사람의 이름을 ‘愚女婿賴松申頓首揮淚拜’와 같이 쓴다. 명정과 효등은 모두 출상 시에 영구 앞에 세우며 영구를 매장할 때 보낸 사람의 이름을 떼어내고 영구 위에 덮어서 같이 묻는다.

4.2.5. 법회

4.2.5.1 做七與做旬

사람이 죽고 나서 매 7 일마다 자손들은 정해진 효복을 입고 제물을 준비하여 죽은이에게 울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일곱 번 채 까지 하여 ‘做七’이라고 한다. 이는 불교 ‘中陰經’의 ‘亡靈每七日一蛻變’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云泉출신은 ‘做旬’, 광동지역 출신은 ‘做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做七과 做旬은 다른 것으로 먼저 做七 49 일을 지내고 다음부터 십일 단위로 四旬을 지낸 다음 百日을 치르는데, 做七은 明王을 제사하는 것이고 做旬은 判官을 제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做七은 ‘做功德’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明王에게 죽은이가 살았을 때 저지른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일종의 ‘過王’의식으로 일곱의 명왕에게

신문을 받고, 네 명의 판관에게 죄과를 판결 받아 죽은이의 영이 순조롭게 해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받는다. 過王시 모든 왕은 각각 담당 업무가 다른데 예를 들어 제 1 왕은 ‘秦廣王’으로 살아 생전에 선행을 베풀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선행을 베풀 사람은 바로 제 10 왕에게 보내어 저승으로 가게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치르고 나서 제 1 過王 확인을 받은 다음 제 2왕에게 넘어 간다. 예전에는 做七을 대부분 매 7일마다 일곱 번 하여 대부분 49 일을 했으나 지금은 ‘淸氣靈’이라 하여 첫 번째와 마지막만 칠일을 하고 중간에는 격일을 7 일로 계산하여 24 일만에 마치거나, 첫 번째는 칠일,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일일, 마지막은 2 일을 하여 14 일, 혹은 1 일단위로 ‘一七’, 오전 오후 각 ‘一七’로 하여 간소화 하기도 한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做七중 ‘首七(頭七)’은 사람이 죽은 다음 칠일 째 되는 날에 비로소 자기가 죽은 것을 인지하고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따라서 유족들은 당일 새벽 영시부터 곡을 하고, 아들이 제물을 준비하여 죽은이와 秦廣王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일반적으로 頭七시 開魂路 법회를 함께 지낸다. 이후 매 칠일마다 頭七과 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제물은 二七은 며느리, 三七은 출가한 딸, 四七은 다른 사람 혹은 이웃, 五七은 출가한 손녀와 질녀(최근에는 三七에 딸과 함께 한다), 五七부터 滿七까지는 상가에서 준비하며 통상 1,3,5,7 번째는 大七(旬)이라 하여 크게 하고 2,4,6 번째는 간단하게 한다. 제사 시간은 頭七만 당일 子時부터(前日 11 시) 하고 나머지는 당일 오전 巳午時(당일 오전 9 시부터 12 시)에 하며 출상 당일에는 안 해도 되고 頭七과 滿七 아침에는 밥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做七과 作旬의 관련 염라대왕과 일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3) 做七與做旬之王官及天數對照表¹¹⁶

做七與做旬	各殿閻王與判官	傳統天數	改良後的天數
-------	---------	------	--------

¹¹⁶ 李秀娥, 『台灣傳通生命禮儀』, 晨星出版有限公司, 2003 p161

頭七	第一殿秦廣明王	제 7 일	제 7 일
二七	第二殿楚江明王	제 14 일	제 9 일
三七	第三殿宋帝明王	제 21 일	제 11 일
四七	第四殿五官明王	제 28 일	제 13 일
五七	第五殿閻羅天子	제 35 일	제 15 일
六七	第六殿卞城明王	제 42 일	제 17 일
滿七	第七殿泰山明王	제 49 일	제 24 일
頭旬	崔氏判官	제 59 일	
二旬	李氏判官	제 69 일	
三旬	韓氏判官	제 79 일	
四旬	楊氏判官	제 89 일	
百日	第八殿平等明王	제 99 일	
對年	第九殿都市明王	1 주년(소상)	
三年	第十殿轉輪明王	3 년(대상)	

4.2.5.2 葬前一日法會 (出山功德)

상을 당해서 하는 法會(功德)은 초중 시의 開魂路와 같은 立木功德과 葬前一日에 하는 법회가 있는데 葬前一日에 하는 공덕을 ‘出山功德’이라 한다. 出殯前 법회는 시간의 장단에 따라 하루 전 정오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점심 이후까지 하는 ‘午夜’, 하루 전 황혼에 북을 치기 시작하여 다음날 황혼까지 또는 당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는 ‘一朝’, 오후에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 반 동안 하는 ‘一朝速啓’, 이틀 동안 하는 ‘二朝’, 오후에 시작하여 2 일째 새벽까지 이틀 반 동안 하는 ‘二朝速啓’, 승려가 15 명 이상 동원되어 3 일동안 하는 ‘三朝’, 3 일반 동안 하는 ‘三朝速啓’로 구분하는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午夜 혹은 一朝가 일반적이다.

4.2.6. 葬日儀節

4.2.6.1 발인식장 준비

가. 牌樓

발인식장 입구에 ‘生, 老, 病, 死, 苦’의 원칙에 따라 통상 7 자 혹은 12 자로 ‘陳 OO 先生奠場’ 또는 ‘陳公諱 OO 老先生奠禮靈堂’과 같은 ‘牌樓’를 만들어 길가로질러 붙이고 양쪽 옆 기둥에는 上聯을 써서 붙이는데 이때 사용하는 글자는 홍색이나 분홍색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顯考(顯妣)OOO’ 또는 ‘故考(故妣)OOO’ 라고 써서는 안 된다.

나. 靈堂佈置

발인식장 내부에 3 단으로 제단을 설치한다. 맨 아래 단은 하얀색 천으로 바닥에 이르게 하고 맨 위 단에는 영정을 설치하며 중간에 꽃으로 이어서 장식을 하고 혼백, 향로, 축대, 꽃, 과일 등을 놓는다. 정 중앙 천장이나 높은 곳과 양측으로 친지나 기관장들이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 보내온 ‘輓額’, ‘輓聯’, ‘輓帳’ 등을 설치한다. 액자는 특별한 기관장이 보내 온 것이 있으면 식장 정 중앙 전면에 걸고 다른 것은 보내온 사람의 직급에 따라 2~3 개 정도만 중간에 걸며 나머지는 최대한 양쪽에 설치한다. 친척이 보내온 輓聯은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사위), 부모, 형제, 생질, 손자, 손부, 증손, 동향, 장례위원회의 순으로 전방 좌우에 설치한다.

다. 牲禮

가족제사를 지낼 때 지방에 따라 친척들이 제물을 보내오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최근에는 현금으로 보내오고 상가에서 대신 준비한다. 전체 숫자는 일반적으로 세 상이나 다섯 상을 준비하는데 아들이나 결혼한 딸은 五牲, 미혼인 딸이나 기타 친척은 三牲, 그 외에 漢食六碗, 과일, 麵龜¹¹⁷ 등을 준비한다. 준비한 제물의

¹¹⁷ 밀가루로 만든 빵 종류의 일종으로 대만에서 각종 경축에서 제사에 이르기까지 항상 사용되며 색깔은 빨강이나

진설 순서는 아들 딸, 부인의 친가, 사위, 며느리의 친정, 시가 어른, 외가어른, 손녀사위, 질녀사위, 기타 친척 순이다. ‘牲禮’는 예전에는 모두 친척의 이름을 적었으나 최근에는 적지 않고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아들이 돼지머리를 포함한 五牲을 대표로 준비하고 미혼 딸과 외가, 중요한 친척이 각각 한 상씩 준비한다.

4.2.6.2 轉柩與壓棺位

가. 轉柩

가족제사 이전에 영구를 밖에 설치한 영결식장으로 옮겨 오는 것을 ‘轉柩’ 혹은 ‘移柩’, ‘遷棺’이라고 한다. 轉柩는 택일사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승려나 도사가 경을 읽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죽은 이를 조상하고 이때 유족들은 靈柩 양 옆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를 ‘哭棺材頭’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유족들은 포복으로 발인식장까지 영구의 뒤를 따라 이동하는데 현재는 비좁은 장소관계로 상징적으로 조금만 이동 하고 관을 밖으로 이동 하지 않으며 영결식장에 준비된 책상에 혼백, 향로 등만 이동하여 영결식을 마치고 실제 발인 전에 영구를 밖으로 빼 나오기 때문에 轉柩와 移柩가 나누어서 진행 된다.

나. 壓棺位

靈柩를 밖으로 이동한 이후에 가족들은 원래 靈柩를 모셨던 걸상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장수 유복한 부인을 청해 원래 영구를 모셨던 자리에 물을 뿌리고 대청을 청소하는데 이를 ‘掃大廳’이라 한다. 청소를 할 때에 “빗자루를 밖으로 쓸면 모든 재앙이 없어지게 하고 빗자루로 안으로 쓸어 들이면 방마다 아들을 낳고 많은 돈을 벌도록 해 주세요”등의 상서로운 말을 한다. 대청 청소를 마친 다음 원래 영구가 위치했던 자리에 동전 몇 개를 담은 물통, 작은 띠로 감아진 통(桶圈), 사발 한 개, 젓가락 하나 혹은 發糶, 紅圓등을 가져다 놓는데 이를 ‘壓棺位’

분홍색을 띠며 거북이 모양으로 만든다. -- 대만대백과전서

<http://taiwanpedia.culture.tw/web/content?ID=11886&Keyword=%E9%BA%B5%E9%BE%9C>

라고 한다. 사용되는 물품은 각 지방마다 다소 다르나 모두가 상서로운 물건으로 쌀통이나 12 가지 음식은 먹는 것이 풍부함을 의미하고, ‘桶圈’은 가족간의 단결, ‘發糶’, ‘紅圓’은 재물과 상서로움, 그릇과 젓가락은 가족간의 화합, 물통에 돈을 담는 것은 ‘錢水活路’ 등의 의미를 갖는다.

4.2.6.3 家奠禮(家祭)

장례 당일 영구를 영결식장으로 옮긴 다음 가족과 친척들이 드리는 제사를 ‘家奠禮(家祭)’라 하며 일반적으로 자녀, 친족, 친척으로 구분한다. 제사방식은 기타 제사방식과 같은데 먼저 향을 사르고(上香), 꽃, 술, 반찬 등 제물을 올리며(獻祭品-獻化, 獻酒, 獻饌), 제문을 낭독한 다음 영정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자녀들은 지극한 정성으로 예를 올리고(三跪九叩首), 죽은이와 같은 향렬은 서서 머리 숙여 인사한다. 아들 딸들은 절을 마치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영정 앞까지 기어가서 양 옆으로 나누어 있다가 친족과 친척들의 의례 시에 감사를 표시한다. 家祭는 시간에 따라 같은 향렬의 가족이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같은 향렬의 친척들은 한꺼번에 한다.

참고로 국민의례범례에서 규정한 家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가. 의식 시작
- 나. 참례자 기립
- 다. 애도곡 연주(없으면 생략가능)
- 라. 향을 사름
- 마. 제물 헌상(꽃, 술, 반찬)
- 바. 제문 낭독(불필요 시 생략)
- 사. 영정을 향한 인사(여기서는 서서 인사 혹은 옆드려 절함)
- 아. 애도곡 연주(없으면 생략 가능)
- 자. 예식 완료.

직계비속은 가족제사에 참여한 친척들에게 엿드려서 인사한다.

4.2.6.4 公奠禮(公祭)

가족제사를 마치면 ‘公祭’를 하는데 이는 장례위원회, 기관, 단체, 학교, 기업 단체 및 동향, 동창, 동인대표 등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죽은이에 대한 고별의식이다. 그러나 실제 죽은이 또는 유족과 깊은 관계가 없으면서도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많은 민의대표 등이 참가하여 公祭를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장시간 동안 서 있어야 하는 유족들을 감안 하여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公祭면적의 대소는 죽은이와 유족의 명성, 공헌도나 친교,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과 연관이 된다. 2004년 4월 15일 국회의원 顏淸標 모친상을 당했을 때 영결식장에 5~6 천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준비하고, 장례행렬에 백 대 이상의 초 고급 차가 동원되었으며, 각종진두가 400 여진이 동원 되어 길을 벗어나는 데만 무려 2 시간 이상이 걸린 적이 있는데 이는 대만 민간 상례의 가장 큰 公祭기록으로 알려져 있다.¹¹⁸

4.2.7. 發靱

발인은 ‘出殯’의 의미이고 出殯 전에 封釘, 旋棺, 絞棺, 點主 등의 의식을 먼저 한다. 出殯을 위해 轉柩 시에 만약 죽은 이보다 나이 많은 부모께서 생존해 계신 경우에 부모가 지팡이로 靈柩 머리부분을 세 번 두드려 나이 많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먼저 세상을 하직한 데 대한 질책의식이 있다.

4.2.7.1 旋棺

¹¹⁸ 陳瑤塘 외, 전상서, p246

封釘 이후 장손(녀)가 魂旛, 혼백, 향로를 들고 딸 중 하나가 우산으로 혼백을 가리면, 도사의 인도에 따라 관을 시계반대방향 혹은 시계방향으로 세 바퀴 도는데 이것을 ‘旋棺’이라고 하며 이때 딸들은 관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한다.

4.2.7.2 絞棺

旋棺을 마치면 영구를 들 기둥을 영구 위에 놓고 삼베 줄로 단단하게 묶는 것을 ‘絞棺’이라고 하고 絞棺 이후에 영구 위에 꽃과 새를 수놓은 천이나 인물의 錦緞棺罩로 덮는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빨간색 카펫으로 대체한다.

4.2.7.3 點主

‘點主’의식은 신주패에 빛을 열어주기 위해 죽은이의 세 혼 중 한 혼을 불러 오는 의식으로 원래 신주패의 ‘主’자를 ‘主’자로 적어 놓고 나중에 위에 점을 찍어 ‘主’자로 만드는 것이다. 속설에 의하면 점을 찍어 주는 사람은 자손에게 좋은 운을 불러 준다고 하며, 시기는 일반적으로 영구를 매장하기 위해 묘소에 안치한 후 龍을 부르고(呼龍) 오곡을 뿌리기 이전에 하는데, 客家族들과 서해안지역의 沙鹿, 梧棲, 龍井 일대에서는 出殯 전 旋棺 혹은 轉柩 이후에 한다. 出殯 전에 ‘點主’ 의식을 하는 경우 점주관은 관인을 가지고 있는 縣長, 鄉長, 里長 등 문관이 한다. 點主의식은 지역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장남이 신주가 묘역을 향하도록 등 뒤에 들고 꿇어 앉으면(집에서 하는 경우 신주가 동쪽을 향하도록 꿇어 앉는다) 點主官이 빨간 잉크가 묻은 붓을 들고 하늘을 향한다. 이때 사회자가 “指日高陞, 今日點主大吉唱點主官呼氣, 孝子孫皆呼氣” 하고 외치면 점주관이 붓을 향해 불고, 다음으로 모든 아들, 며느리, 딸, 손자들 앞에 가서 입 앞에 붓을 대면 연이어서 분다. 모든 자손들이 모두 불고 나면 점주관이 원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사회자가 “點天天清, 點地地靈, 點耳耳聽, 點目目明, 點主主安, 主上一點紅, 子孫代代做三公”이라고 외치면 자손들이 “예”라고 대답한다. 다음에 점주관이 신주의

위, 아래, 좌, 우에 점을 하나씩 찍고 붓을 동쪽으로 던지고 나서, 다시 검정 먹이 묻은 붓을 들고 앞의 방법과 같이 신주에 빨간 붓으로 찍은 점 위에 검은 점을 찍어 덮어 씌운 다음 붓은 남겨서 공부하는 손자가 계속 사용하게 한다.

4.2.7.4 장례 행렬

民國 72 년 대만정부 민정청에서 출판한 「台灣地區現行喪葬禮俗研究報告」에 의하면 전통적인 장례행렬은 開路神¹¹⁹, 放銀紙¹²⁰, 燒草龍¹²¹, 孝燈¹²², 銘旌¹²³, 五彩旗¹²⁴, 大鼓吹, 地理師, 點主官¹²⁵, 輓軸, 輓聯, 香亭¹²⁶, 像亭¹²⁷, 花車와 악대, 陳頭¹²⁸, 魂轎¹²⁹, 金童玉女及紙厝¹³⁰, 棺前吹, 靈柩¹³¹, 孝眷, 般會葬親友, 押後로 아주

¹¹⁹ '方相'이라고 불리며 비교적 규모가 큰 장례행렬에서 길을 인도하면서 악신을 쫓아 내는 기능을 한다. 開路神은 종이에 풀칠을 해서 만든 사람인데 빨간 얼굴에 눈이 세개 오른손에는 창, 왼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복부에는 모지에 도착해서 제사 지낼 小三牲祭物로 돼지 내장을 담아서 간다. 제사를 지낸 후 開路神은 태워서 없애고 돼지 내장은 開路神을 들고 간 사람들에게 주는데 최근에는 거의 볼 수 없다.

¹²⁰ 통행료로 볼 수 있는데 운구도중 다리 입구나 교차로 입구에서 銀紙錢을 뿌리는 것으로 예전에는 통상 사위 혹은 생질 등이 하거나 '光前裕後'의 의미로 부부금실이 좋은 노부부중 남자가 행렬 앞에서 紙錢을 뿌리고, 노부인은 장례 행렬 맨 뒤에서 손에 바구니를 하나 들고 바구니 속에 富貴燈, 銀角, 五穀, 紅圓, 發糶, 그릇과 젓가락 등 12 가지 吉兆의 물건을 담아서 따라 갔는데 현재는 한 사람이 '放銀紙'와 '燒草龍'을 모두 하기도 한다.

¹²¹ 죽은이의 망령이 저승에 갈 때 불을 밝혀준다는 의미에서 벋 집에 불을 붙혀 들고 갔으나 현재는 대형 초로 대신 하기도 하고 타이베이현 판교시의 경우 銀紙錢을 뿌리고 태우는 것이 도로변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어 금지 시키면서 자동으로 없어져 가고 있다.

¹²² 본래 상가의 대문 양쪽에 걸어 두었던 등으로 발인 시에 대나무에 걸어 들고 장례행렬의 앞에 선다.

¹²³ 과거에는 명정관이 가마에 타고 들고 갔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맞사위가 명정을 들고 차에 타고 가거나 외부인을 시켜서 들고 가기도 하며 일부는 명정은 장례행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¹²⁴ 비교적 큰 장례행렬에 紅, 黃, 淺黃, 白, 麻 등 오색의 깃발을 한 쌍씩 들고 가기도 한다

¹²⁵ 안장 후에 신주패에 점을 찍을 사람으로 최근에는 도사 혹은 지리사가 겸한다.

¹²⁶ 향합, 향로 그 밖의 제구를 받쳐들기 위해 나무로 만든 작은 정자 모양의 기구로 예전에는 큰말이 임대해 와서 네 사람이 들고 갔으나 현재는 모두 차로 이동 시킨다.

¹²⁷ 나무로 조각한 죽은이의 초상이나 현재는 영정을 영구차 앞에 모시고 가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

¹²⁸ 악대 뒤에 있는 각종 진의 우두머리로 '牽亡陳', '五子哭墓', '孝子親親', '三藏取經', '目蓮救母', '獅陳', '龍陳' 등이 있다.

¹²⁹ 나무로 만든 작은 수레로 이 안에는 오곡, 동전, 못, 숯, 孝丈 등 물품을 담은 쌀 항아리에 신주와 혼백 등을 담는다. 捧斗는 대부분 장손이 담당하는데 예전에는 안장을 하러 갈 때는 장손이 운반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는 혼교에 태워 왔으나 지금은 모두 차량에 싣고 운반하기 때문에 魂轎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많았으나 장례행렬은 진두의 숫자에 따라 길거나 짧게 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현대의 일반적인 장례 행렬을 보면 開路陳頭-卽大鼓亭, 孝燈, 銘旌旗, 放銀紙¹³², 捧斗, 捧遺像, 樂隊陳頭(陳頭的 숫자에 관계없이 맨 끝에는 吹陳頭가 있어 길을 인도한다), 道士, 靈柩, 喪家大小, 送行戚友순으로 하고 「국민의례범례」 52 조의 장례행렬에 대한 규정에는 前導(標明 OOOOO 之喪), 儀仗(不用儀仗者略), 樂隊(應用國民禮儀樂曲, 不用樂隊者略), 遺像, 靈柩, 靈位(孝子或孝女恭奉), 重服親屬, 親屬, 送殯者 순으로 되어 있다.

4.2.7.5 辭客與路祭

가. 辭客

장례행렬이 출발하여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 어떤 적당한 지역을 선정하여 영구차를 멈추고 모든 유족이 먼저 외척들을 향해 무릎 꿇고 장례에 참석해 줌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음으로 기타 참석한 외부 손님들에게 감사인사를 하는 것을 辭客이라고 한다. 죽은 이가 남자이면 유족이 감사인사를 드린 다음 친척 중 장년배 혹은 동년배가 부축하여 일으켜 주고 죽은 이가 여자이면 외숙이나 이모가 붙들어 일으켜 준다. 일반적으로 어머니 상을 당하면 외가 어른들은 거의 장례행렬에 참석하지 않는데 이는 속설에 외가식구가 장례에 참석하면 후손들이 아주 가난해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나, 嘉義, 屏東, 花蓮과 嘉義 市에서는 외척들도 장례에 참석하여 매장지까지 동행한다. 이외에도 장례행렬에 동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부부간은 서로 동행하지 않는데 장례행렬에 참석하는 것은 다시 재취를

¹³⁰ 죽은이의 망령이 저승에서 주거할 집으로 종이로 만들며 통상 묘지에서 불태운다.

¹³¹ 현재는 장지가 대부분 집에서 일정 거리가 되어 전문 장의차를 임대하여 운구하는데 영구의 머리부분이 뒤, 끝부분이 앞쪽을 향하도록 싫고 자녀들은 남녀로 구분하여 양쪽으로 나누어 앉아 이동 중에 경을 암송 해주거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염원한다. 다리를 지나거나 차에 타고 내릴 때 유족들은 이를 죽은이에게 말한다.

¹³² 현재는 孝燈, 銘旌旗, 銀紙錢들을 모두 차에 두고 한 사람이 銀紙錢을 뿌린다.

얻거나 재가를 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죽은이보다 연장자가 동행하면 죽은이가 저승세계에 갈수 없다는 설로 인해 죽은이보다 윗사람은 참석하지 않으며, 동서간에는 속언에 ‘送東西會敗’한다 하여 서로 전송하지 않고 기타 월경 중인 여자들은 동행하지 않는다.

나. 路祭

‘路祭’는 장례행렬이 출발하여 이동 중에 일부 죽은 이의 친구나 죽은 이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중간에 제사상을 진설 하여 제물을 진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행렬이 도착하면 영구를 잠시 세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제사를 마치면 상주는 꿇어 엎드려 감사 인사와 답례를 한다. 이전에는 변형된 路祭가 있었는데 구걸하는 거지들이 간단하면서 이미 한번 사용한 오리 알이나 오징어, 돼지고기 등을 길가에 나두고 있다가 장례행렬이 다가오면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주었으니 감사표시의 돈을 강제로 요구하는 형태가 있었으나 지금은 생활수준이 올라 가면서 이런 변형된 노제는 거의 볼 수가 없다.

4.2.8 安葬

4.2.8.1 開壙

상가에서 택지 선정을 마치면 시간을 정해 ‘開壙禮’를 올린다. 상가에서 준비해준 三牲祭物과 壽金, 福金 등을 묘지에 놓고 먼저 토지신에게 향을 사르고 壽金을 태운 다음에 뒷자리를 판다.

4.2.8.2 祀后土

영구가 묘혈에 도착하면 영구를 묘혈 앞으로 이동하고 관 덮개가 있으면 이를 벗겨낸 다음 깃발 등이 있으면 묘혈 좌우에 꽂고 묘지에 제사하기 이전에 먼저 토지신에게 제사한다. 이때 제물은 三牲 한 벌과 술, 金紙錢등을 놓는다. 예전

에는 이때 많은 관원이나 점주관을 청해서 이들이 제사를 지냈으나 현재는 대부분 지리사 등이 향을 사르고 상주들이 제사를 지낸다. 일반적으로 관을 묘혈 속에 안장하기 이전에 지내나 안장 이후에 하는 곳도 있으며 용신이 있으면 먼저 용신에게 제사하고 다음에 토지신과 묘지에 제사한다.

4.2.8.3 祭墓

묘지에 제사하는 것으로 ‘拜墓’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사후토 이후에 지낸다. 이때 사용하는 제물은 菜碗六碗, 백반 한 그릇, 과일, 술, 銀紙錢 등이고 자손들이 향을 사르고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낼 때 우산 하나로 신주를 가리고 유족들은 묘혈 좌우로 꿇어 엎드려 곡한다.

4.2.8.4 進壙(하관)

‘進壙’은 관목을 미리 준비해 진 묘혈자리에 내려 묻는 것으로 옛날에는 ‘窆’ 또는 ‘落壙’이라고도 하였다. 관을 하관하기 이전에 먼저 외부 공기가 관속에 들어갈 수 있고, 시신에서 나오는 물이 외부로 빠질 수 있도록 하며, 시신이 빨리 부패 하는 것을 도와 주기 위해 관의 전면 하단에 구멍을 뚫어 주는 ‘放栓’을 하는데 이를 ‘防水’, ‘放涵’ 혹은 ‘放風’이라고도 한다. 放栓 시에 관내에서 독성의 가스나 액체 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마시거나 몸에 닿지 않도록 이에 참가 하는 사람들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 하여야 한다. 放栓 후에 하관시간이 되면 죽은이와 출생이 상극인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고 다른 사람들은 입에 풀이나 나뭇가지를 물어 악귀를 피한상태로, 지리사가 쌀항아리에 있는 일부 오곡과 못 등을 조금 바닥에 뿌린 다음 지리사의 인도에 따라 관을 서서히 내린다. 지리사는 이때 나침반을 이용하여 방위를 측정하는데 이것을 ‘定方位’라고 한다. 정해진 방위대로 관이 내려지면 ‘窆’을 던져서 신명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아들들이 사전에 지리사가 설정한 중심선과 관의 중심선이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定方位

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리사가 정해준 방향과 일치되지 않으면 「拼房」을 유도하여 죽은이가 어떤 특정한 자손만 편향되게 보살피던지 아니면 다른 재액이 발생한다는 속설이 있다. 방위가 결정되면 명정을 관위에 덮고 흙으로 살짝 덮은 다음 승려가 ‘孝旛’을 들고 모든 유족들을 인도하여 묘혈을 세 바퀴 돈 다음에 준비된 흙으로 완전히 묻는다. 이때 아들들은 “아버지(어머니) 일어나세요” 하고 외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은 이의 영혼이 영원히 묘혈 내에 묻힌다는 속설이 있다. 흙으로 관을 덮을 때 금기사항으로는 사람의 그림자가 묘혈에 비추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그림자가 묘혈에 비추이면 이 사람도 곧 따라서 죽는다는 속설이 있는 것은 입관시의 금기사항과 같다. 매장이 끝나면 봉분 위에 풀을 심고 묘 뒤에는 芋頭(토란)이나 蓮蕉를 심는데 芋頭는 ‘芋頭喻頭有尾’ 蓮蕉는 ‘蓮蕉則喻善結子’로 모두 길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분이 끝나면 비석과 后土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데 먼저 后土에 지내고 나중에 묘 주인에게 지낸다.

4.2.8.5 묘비 형식

묘비에 새기는 글자 수는 혼백이나 명정과 같이 ‘生老病死苦’ 또는 ‘興旺死絕’ 원칙에 따라 쓴다. ‘生老病死苦’는漳州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生老’에 해당되는 글자수는 吉數, ‘病死苦’에 해당되는 글자수는 禁忌되는 숫자이고, 興旺死絶은 泉州인들이 사용하는 범으로 興旺은 吉數, 死絶은 禁忌數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측에는 ‘民國壬午年建’(6 자로 生에 해당)과 같이 묘비를 세운 때를 기록하고, 가운데는 ‘顯考楊 OO 佳城’(7 자로 老에 해당)과 같이 쓰며, 좌측에는 ‘男三大房立石’(6 자로 生) 과 같이 묘비를 세운 사람들을 표기 하는데 여기에 자손의 이름을 직접 써서는 안 된다.

4.2.8.6 呼龍

‘呼龍’과 오곡 뿌리기는 상가의 재물이 왕성해지기를 기원하는 풍습에서 시작된 것으로 호룡은 산맥에 있는 24 신중 용신을 불러 묘를 잘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의식으로 지리사가 주관하여 그 산에 해당되는 용신을 불러서 용신이 묘에 오면 그 묘는 크게 성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한다.

4.2.8.7 撒五穀

呼龍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지리사가 미리 쌀 되에 담아 논, 번식과 흥왕을 상징하는 오곡과 숯, 쇠못, 동전을 꺼내어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면 자손들은 이것들을 분묘 위에 뿌린다. 이때 전부 다 뿌리지 않고 일부를 남겨서 返主 시에 가지고 와서 못을 침대 밑에 꽂으면 아들을 낳고, 동전을 지니고 있으면 많은 돈을 번다고 한다. 자손들이 오곡을 뿌릴 때 지리사는 길상의 염원¹³³을 하는데 매 구절을 마치면 후손들은 “예”라고 답한다. 오곡을 뿌리는 이외에 祭物로 사용한 오리 알 껍질이나 토란 껍질 등도 함께 묘 위에 뿌린다.

4.2.8.8 旋墓

오곡뿌리기를 마치면 장남은 捧斗, 장손은 遺像, 차손은 魂旛을 들고 도사가 자바라를 울리면서 인도하는 데에 따라 묘지를 시계반대방향(어떤 지역은 시계방향)으로 세 바퀴 돌면 안장의식은 모두 끝나게 된다. 묘지돌기를 마치면 복건성 사람들 은 상주가 짊었던 지팡이는 묘지 옆이나 뒤에 나 두었다가 나중에 草龍, 孝燈과 함께 불사르고 광동인들은 지팡이를 집에 가지고 와서 除靈 시에 孝服등과 함께 불 사른다.

¹³³ 오곡을 뿌릴 때 하는 길상화로 예를 들면 一散東方甲乙木, 子孫代代居福祿, 二散男方丙丁火, 子孫代代發傢伙, 三散西方庚辛金, 子孫代代發萬金, 四散北方壬癸水, 子孫代代大富貴, 種子灑高高, 生子生孫中狀元, 種子灑起起, 子孫多坐金交椅, 種子灑墓頭, 子孫都會起大樓, 種子灑墓尾, 子子孫孫好結尾 등이다

4.2.8.9 淸氣靈

최근 들어서는 ‘安淸氣靈’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旋墓 이후 도사의 인도 하에 모든 유족이 장지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다가 일정 지점에 오면 다시 묘로 돌아가서 반대방향으로 봉분을 세 바퀴 돌아 ‘巡灰(山)’의 의례를 마친다. 返主한 다음 효복을 벗고 상장례에 사용한 모든 용품을 태우고 정상 생활로 돌아와 모든 상장례를 마치는데 이를 ‘淸氣靈’이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업화 사회에 맞추어 생활이 바뀐 관계로 최근에는 아주 유행하고 있다.

4.2.9 返主與接主

안장을 마치고 장손이 쌀 되에 쫄은 신주를 받들어 집에 돌아오는 것을 ‘返主’라고 하는데 ‘回主’, ‘回龍’이라고도 한다. 返主는 본래 하나의 상서로운 일로서 신주를 받들고 돌아오는 사람은 상복이 길복으로 바뀐다 하여 대부분 장손이 하고, 예전에는 魂轎를 타고 왔으나 지금은 모두 자동차를 타고 돌아 온다. 返主의 길은 통상 출상 시 이용했던 길로 되돌아 오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죽은이의 망령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길로 오는 풍습도 있다. 유족들이 집 앞에 도착하면 문 앞에 벧 집을 태우고 그 위에 풀로 만든 허리띠나 집신 등을 던져서 태우고 이 불을 넘어서 들어 오는데 이를 ‘過火’ 혹은 ‘食甜豆’ 라고 한다. 이는 사악함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芙蓉이나 쭈 혹은 榕樹攢을 담은 물을 한 통 문 앞에 준비해 두었다가 유족들이 들어오기 전 이 물에 세수를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역시 過火와 같은 의미이다.

4.2.10 安靈

신주를 집으로 모시고 돌아 오면 지리사가 사전에 정한 위치에 설치 되어 있는 제사상 위에 모시고 향로, 축대 등과 별도로 제물을 준비하여 도사를 청해 경

을 읽어 주는 것을 ‘安靈’이라고 한다. 淸氣靈을 한 경우는 별도로 제사상을 준비할 필요 없이 혼백 위에 빨간 종이 한 장을 붙여서 향로와 함께 公媽牌의 우측에 놓는다. 신주를 위치에 모신 다음 신속하게 이웃집 대문옆에 붙여 논 빨간색 천이나 종이를 뜯어내고 이웃을 위해 ‘符仔水’를 뿌린다. 返主 이후 대부분이 점심 혹은 저녁을 먹을 때 소연을 베풀어 상장례를 도와준 친척이나 친구들을 초대 하여 함께 먹는 것을 ‘回食’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음식을 대접하는 대신에 수건이나 돈, 초, 포 등 물품으로 대신 하기도 한다.

4.2.11 寄孝

부모상을 당했을 경우 자손들이 상을 당했음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것을 ‘帶孝’라고 하고, 孝는 ‘粗孝’, ‘幼孝’, ‘脫孝’로 구분되며, 粗孝는 초중 시에 남자는 삼베로 된 고리를 왼쪽에, 며느리와 딸은 삼베로 만든 나비모양의 편을 오른쪽에 단다. 이 孝는 출상 후에는 하얀 실로, 일년이 지난 후에는 노란 실로, 3년째는 빨간 실로 바꾼다. 그러나 자손들이 외부에서 일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효를 달지 않고 효를 영위의 향로 옆에 놔두는데 이것을 ‘寄孝’라고 하고, 3년째 되어 홍실로 바꾼 다음 얼마 안 되어 이를 태워 없애는 것을 ‘脫孝’라고 한다.

4.2.12 巡山

안장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과 7 일째 되는 날에 유족들은 효복을 입고 묘지에 도착하여 분묘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巡山’이라고 한다. 이때는 제물을 준비하여 토지신과 묘지에 제사하며 토지 신에게는 壽金을, 묘지에는 銀紙錢을 태운다. 그러나 최근 대만에서는 오전에 出殯하고 오후에 巡山하는 경우도 있다.

4.2.13 完墳

분묘 건축을 마친 후 길일을 택하여 육류의 제물과 채소류, 술 등을 준비하여 묘지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完墳’이라고 하는데 巡山과 동시에 지내기도 하고 淸氣靈을 한 경우는 返主 전에 巡山, 完墳의 동작을 한꺼번에 하여 바로 除靈 한다.

4.2.14 除靈

‘除靈’의 시기는 각 지방마다 아주 다르다. 滿七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백일이나 1년 후에 하는 경우도 있으며, 淸氣零자는 返主 이후 바로 실시한다. 除靈은 그 동안 설치되었던 靈卓을 절거하고 신주를 제외한 기타 모든 물품을 밖에 가지고 가서 불사르거나 버린다. 神主牌는 除靈 이후 祖先牌의 위치로 옮기고 나중에 合爐 시에 태워서 없앤다.

4.2.15 기타 장례의식

4.2.15.1. 火葬

최근에는 일반적인 장례방식으로 화장이 보편화 되고 있다. 화장은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묘지공간이 필요 없고, 비용이 적게 들며, 납골당에 안치하여 전문관리인이 관리는 물론 때에 맞추어 제사까지 지내 주고 이후에 檢骨 등이 필요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불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화장이 일반적인 장례방법이 되고 있다. 화장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出殯 후 화장장에도착하여 간단한 제사를 지내고 바로 화장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아무런 제례의식 없이 먼저 화장을 한 이후 出殯을 하는 방법으로 유골함에 담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매장하는 방법이다.

한편 최근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장례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잔디 밑에 묻는 ‘植葬’, 꽃밭에 묻는 ‘花葬’ 등의 자연장이 적극 추천되고 있고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4.2.15.2 草人葬

‘草人葬’은 풀로 사람을 만들어 대신 장례를 하는 것인데 ‘招魂葬’과 ‘獵七葬’이 있다. 招魂葬은 죽은이가 의외의 사고로 사망하여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풀로 사람을 만들고 도사가 초인 얼굴에 오관을 그리고 바지를 입혀서 사고를 당한 지점에서 대나무 가지에 하얀 천을 매달아 혼을 부르고 주변에 임시로 상을 차린 다음 법사를 한다. 법사를 마친 다음에 초인을 나무상자에 담아서 出殯 의식을 거행하고 매장하는 것이고 獵七葬은 한 가정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상을 당하는 경우나 동시에 2건의 상을 당하면 이는 凶煞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사를 불러서 초인을 만들어 두 번째로 죽은이의 옷을 입히고 얼굴에 오관을 그린 다음 종이관 속에 담았다가 두 번째 상을 당한 사람의 出殯 시에 중간에 버리거나 묘지까지 가지고 가서 영구를 매장할 때 동시에 매장한다.

4.2.15.3 海葬

‘海葬’은 원래 선원이 항해중에 사망한 경우에 관에 담아 올 수 없기 때문에 배위에서 간단하게 의식을 치르고 시신을 그대로 바다에 버리거나 죽은이의 유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바다에 버리는 장례방법이다.

4.2.15.4 牽水與牽血葬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거나 산모가 출산하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은 경우 치르는 장례방법으로 죽은 혼을 위로하기 위해 도사를 청해 5~6척 높이의 종이로 원통형 용등을 만들고 이름을 적는다. 여기에 익사 자는 검정색으로 3

단 혹은 5 단의 계단을 만들고 산모는 빨간색으로 3 층 혹은 7 층의 계단을 만들어 중심부에 대나무로 관통시켜서 땅이나 그릇 가운데 꽂고 자손들이 손으로 밀어서 돌린다. 이것은 익사 자는 물에서 산모의 경우 피에서 구해내기 위한 의식이다.

4.2.16 葬後儀節

4.2.16.1 做百日

장례를 마치고 100 일에 지내는 제사를 ‘做百日’ 이라고 한다. 백일의 계산 기준은 지방에 따라 다소 다른데 죽은이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00 일만에 지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0 일에서 아들의 숫자와 장손을 빼고 계산하여 만약 죽은이의 아들이 4 명이면 백일에서 5 일을 빼서 95 일만에 지내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택일사에 의뢰해서 날짜를 잡는데 죽은이의 나이보다 초과하지 않게 하거나 77 일 이후에 지내기도 한다. 따라서 백일 기준은 지방과 종족의 풍습에 의해 날짜를 정하며 제사 의식은 做七(旬)과 같이 도사를 청해서 경을 읽어 공덕을 쌓아 주고, 지방에 따라서는 백일과 함께 탈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1 년후에 ‘습爐’를 하고 길일을 택해 탈상을 하는데 이를 ‘做三年’ 이라고 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백일제사를 짝수 달과 9 월에는 금기로 여겨 6 월에 죽은이가 사망하는 경우 9 월과 10 월을 피해서 11 월에 한다.

한편 대만에는 ‘乘孝娶’라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상을 당하면 자손들은 3 년 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죽은이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약혼을 한 경우에 3 년을 기다리지 않고 100 일 이내에 결혼을 하는 특별한 풍습이다. 喪中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외부인을 초청하지 않고 간단하게 결혼 의식만 치르는 비밀 결혼으로 ‘暗婚’이라고도 하는데 결혼식이 간단하여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장례를 치를 때 한 가족이 늘어나서 상가 입장으로 보아서는 하나의 좋은

일이라고 여긴다. 장례이전에 결혼을 하는 여자는 며느리 자격으로 장례에 참석하며 빨간색 옷 위에 마포 옷을 입고 머리에는 빨간 띠를 두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약혼을 했으나 백일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 3년을 기다리지 않고 1년이 지나면 길일을 택해 습례 이후 결혼을 하기도 한다.

4.2.16.2 做對年與做三年

사람이 사망한지 1 주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를 ‘做對年’이라 하며 옛날에는 사후 1 년이 되면 ‘小祥’, 2 년이 되면 ‘大祥’이라 하였는데 이는 대만의 ‘做對年’, ‘做三年’과 같다. 做對年の 시간과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 주년이 되는 날이나 만약 윤달이 들면 한달 앞당겨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3 일전부터 밥을 해서 올리면서 죽은이를 추모한다. 제사의식과 제물은 做七과 같이 三牲 혹은 五牲의 육류와 채소, 紅龜, 紅毛線 등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도사를 청해서 경을 읽어 주고 덕을 쌓기도 한다. 1 주년 제사를 지내고 나면 지방에 따라 脫孝를 하여 靑孝 혹은 黃孝를 紅孝로 바꾸어 출가한 딸이나 손자 등에 해당하는 자손들은 먼저 脫孝를 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做三年을 마치고 모두가 함께 脫孝를 하고 일체 정상 생활로 돌아온다. 做三年은 做對年과 달리 정확한 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做對年을 마치고 며칠 이내에 택일사를 청해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통상 做對年の 날짜가 죽은이의 생일과 띠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 같은 날 오전에 做對年을 마치고 오후에 做三年을 하여 脫孝를 한다. 做三年을 마치고 바로 습례를 하는데 많은 일반인들은 做對年 이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또한 남부의 많은 지방(雲林, 高雄, 併東)에서는 做百日을 마치고 습례와 除孝를 하기도 한다.

4.2.16.3 습례

‘습爐’는 죽은이의 혼백(신주)를 태우고 나서 神主爐의 일부 재를 조상신의 향로인 ‘公媽爐’에 합하고 ‘神主爐’의 三支香을 뽑아 조상신의 향로로 옮긴 다음 죽은이의 이름을 조상신 위에 적는 것이다. 습爐 시에는 紅龜, 發糶, 반드시 가문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내포한 닭을 포함한 牲禮 등과 채소류를 준비하여 죽은이에게 제사를 지내고, 紅圓을 준비하여 선대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죽은이가 조상들과 원만하게 합해지기를 원함이다. 대만에서는 습爐 이전에 맞이하는 절기에는 하루 전에 먼저 죽은 이를 위한 절기를 지내는데, 청명과 단오절은 하루 전 정오에, 구정 전날과 정월보름에는 하루 전 황혼이 들 때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이에게 “내일이 OO 절인데 오늘 당신을 위해 먼저 절기를 지냅니다”라고 아뢰고 절기에는 떡이나 粽子를 준비하지 않는다.

4.2.16.4 培墓

묘지의 봉분을 완료하고 3년 동안은 ‘培墓’를 하는데 이는 죽은 이를 위해 음택을 고치고 수선하는 것으로 풀을 벨 수 있는 도구와 청소도구를 가지고 가서 벌초를 하고 묘원을 정리하는 것이다. 培墓시간은 첫해는 ‘開墓頭’라 하여 청명 전에 하루를 택일해서 하고, 제 2년째에는 청명 당일에 하며, 3년째는 청명 이후 하루를 택해서 한다. 방법은 모든 부인의 자손에게 培墓시간을 정해 동의를 얻은 다음 모든 자손이 같은 시간에 도착하여 제사를 지내고, 만약 혼자서 하게 되면 조상의 두둔함을 입어 해당 부인의 자손에게 불리하다는 속설이 있어 절대로 혼자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제물은 토지신과 죽은이에게 드릴 각각의 三牲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2 가지 음식, 과일 등을 준비하며 먼저 토지신에게 제사한 다음 죽은 이에게 제사한다. 제사를 지낸 다음 일부 지방에서는 자손들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빨간색의 작은 등을 키는데 이를 ‘子孫燈’이라 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 제사를 지낸 다음 묘지 정리를 했음을 표시하기 위해 죽은 이에게 쓴 편지를 봉분 위에 눌러 놓는데 이를 ‘掛墓紙’ 혹은 ‘掛紙’, ‘壓紙’라고 한다. 만

약 ‘墓紙’가 없으면 이는 후손이 없음을 표시하고 제물로 사용했던 오리 알 껍질, 조개 껍질, 토란 껍질 등을 봉분 옆에 버린다. 다음으로는 토지신에게 ‘壽金’ 혹은 ‘刈金’을 태우고 죽은이를 위해서는 ‘大銀紙錢’을 태운다. 옛날 풍습으로는 培墓 3 년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제사는 지내지 않고 ‘掃墓’만 하는데 집안에 득남, 결혼, 승진, 큰돈을 버는 등 좋은 일이 있으면 다시 3 년을 연장하여 조상에게 알렸으나 이런 풍습은 이미 없어졌다.

4.2.16.5 掃墓

培墓 3 년 이후 제 4 년째부터는 ‘掃墓’로 대신 하는데 ‘上墳’ 혹은 ‘上墓’라고도 하며 묘원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이런 풍습은 중국인의 효 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기는 청명절 당일(음력 4 월 5 일 혹은 4 일)에 하는데, 일반 閩南人들의 풍습은 청명 전후 1 개월 안에 할 수 있고, 客家族의 풍습은 매년 춘절 이후부터 청명절 이전에 한다. 掃墓도 배묘와 같이 모든 부인의 자손이 같은 날에 함께 함으로 가족간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준비물품으로는 작은 빨간 초와 꽃 두 다발, 향, 과일 혹은 과자, 壽金, 銀紙錢, 墓紙 등을 가지고 와서 培墓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한다.

4.2.17 喪葬祭品

상장례에 사용되는 제사용품으로는 牲禮, 菜碗, 麵食, 과일, 茶酒, 冥紙(金銀紙錢), 香 등이 있으며 각각 제물의 내용물과 제사의 대상 시기 등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4) 牲禮

종류	내용물	대상	사용시기	비고
五牲	돼지고기, 오리, 생선, 닭, 계란(혹 돼지 간, 돼지 배,	高位神明, 亡魂	법회, 아들, 딸, 부인 제사 이외의 가족제사	가족제사 시 아들, 딸이 준비한 돼지고기는 통 돼지

	돼지창자, 오징어)			사용
三牲	돼지고기, 생선, 닭	보통신명(土地公, 王官, 判官) 亡靈	일반제사, 법회, 祀后土, 拜墓, 가족제사	
小三牲	돼지고기, 계란, 오징어(혹은 말린두부)	神將, 神兵	路祭	

표 4-5) 菜碗

종류	내용물	대상	사용시기
五味菜碗	雞糞, 春干, 韭菜, 菜頭, 魚, 魚丸, 豆干, 芹菜, 黑豆, 豬肉, 豬肝, 豬腸, 米粉, 金針, 木耳, 芋頭	조상, 亡魂	법회, 作七, 拜墓
素食菜碗	香菇, 金針, 豆皮, 木耳, 紅豆, 黑豆, 海帶, 豆干, 麵筋, 素雞, 花生, 蘑菇, 芋頭	제신, 佛 혹 素食者亡靈	일반제사, 법회

표 4-6) 麵食 및 甜食

종류	내용물	대상	사용시기
紅龜		亡靈	壓棺位, 合爐, 培墓
發糶		亡靈	壓棺位, 合爐, 培墓
麵頭山	만두	亡靈	做七法會
紅圓	종이		入靈厝, 壓棺位, 安靈, 合爐

표 4-7) 과일

종류	내용물	대상	사용시기	비고
과일		拜神, 佛, 亡靈	일반제사, 법회	석류, 토마토 사용불가 도가에서는 재 사용 불가

표 4-8) 茶酒

종류	내용물	대상	사용시기
술		拜神, 佛, 亡靈	일반제사
차	차 물 혹은 마른 차	拜神, 佛, 亡靈	일반제사

표 4-9) 冥紙(金銀紙錢)

종류	사용시기
大銀	조상의 상장례에 사용
小銀	귀신의 혼령에 제사
四方金	토지신, 王官, 判官, 水神
刈金	一般神明, 祖先, 地基主
壽金	神明, 土地公
福金	土地公
庫錢	喪葬法會繳庫用或入殮塞屍身用
往生錢	불교도 혹은 객사 시 일반적으로 접어서 시신 위에 놓아 조기에 극락왕생을 기원
三寶錢	명국은행 발행, 상장례 입관 시 관속에 넣음

표 4-10) 香

종류	사용시기
三柱香	神, 佛 제사용
二柱香	亡魂 제사
一柱香	조상이나 일반 신명에게 제사

4.3. 대만 상장례 정책

4.3.1. 대만 상장례 정책 변화 과정

중국의 상장례 정책은 주 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수 있으나 실제로 대만의 경우는 일제시대 이전에는 황무지와 같은 사유지에 제약 없이 묘를 만들었고 특히 원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인 처리를 하였다. 일제시대에 들어와 일본정부는 전반적인 대만 묘지 정리작업을 실시하였는데 하나는 무연고자의 분묘의 유골을 모아 한 곳에 매장 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묘지를 정해서 정해진 지역 이외에는 매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관련 법이 없어 통제나 관리가 불가능했던 묘지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법제화 된 것은 민국 25년 10월 30일(1936.10.30) 제정 공포된 「公墓暫行條例」로 민국 72년 12월 9일 까지 유지되다가 폐지되었다.

이 법의 중점내용으로는 분묘의 설치지역을 경작지나 군사건축 및 공공위생과 이익을 저해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공동묘지를 설치하여 모두가 공동묘지에 매장 하도록 했으며, 분묘의 사용면적을 6.6 m² 이내, 지표면 위로 1.3m 이내로 제한 하였고, 오래된 묘지 중 상기 제약조건에 해당하는 묘지를 전부 공동묘지로 이장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반 민중들은 공동묘지 이용을 하지 않고 관습에 따라 사유지에 개인묘지를 만들었다. 이후 정부는 위생적이고 실용적인 장례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민국 44년에는 전체 공동묘지의 현황조사, 공동묘지가 없는 鄉鎮(市)단위의 공동묘지의 설립 계획, 묘지의 미화 및 주변시설 보완, 전염병 환자의 전용 묘지구역 설치, 지방의 수요를 고려한 납골시설 설치, 묘지 사용료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臺灣省各縣市改善公墓·火葬場·殯儀館·實施步驟」, 민국 45년에는 「實施計劃」을 수립 반포하고 민국 48년에는 「第3期 改善計劃」

을 제정 공포하여 장기적인 공동묘지 개선작업의 기초가 되게 한다. 「第3期改善計劃」에는 舊墓의 이장과 신설을 병행하고, 공공으로 주변에 과수와 화초를 심어 이 소득으로 관리비용을 충당하게 하며, 滿葬의 공동묘지는 공고하여 더 이상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묘지 관리강화로 무연고 묘지나 유골이 노출된 묘지는 「公墓暫行條例」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였다.¹³⁴ 民國 63년 謝東閔 전 부 총통의 ‘墓地重劃’의 시정이념과 민간인의 상장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한 후 民國 65년에 「臺灣省公墓公園化十年計劃」¹³⁵을 제정 반포하였다. 이 법의 3대 목적을 관리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묘지 이용을 통한 공원묘지의 기업화, 오래된 묘지를 정리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공동묘지의 공원화, 악습과 미신타파를 통한 공동묘지의 현대화에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舊墓를 정리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위치와 교통, 지형 등 일반인의 수용상태를 파악하여 지정하고, 기본적으로 민속관념을 중시하여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제공하며, 묘지사용 시 비용을 부과하여 묘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묘지면적과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토지자원을 절약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묘지 이외의 지역에 사립묘지를 임의로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는 「公墓暫行條例」에 의해 조치하였으며 묘정인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관리효율을 높이고, 공공묘지와 사립묘지의 혼용을 권장하며, 성정부는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기관에 기금을 대출해 주어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는 「公墓暫行條例」가 제정 공포되어 실시된 지 40년이 되면서 변화된 시대의 조류와 현행 법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民國 72년과 75년에 「墳墓設置管理條例」와 「墳墓設置管理條例 施行細則」이 전체 6장 32조로 공포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묘지 설치 요건, 묘지 관리규정,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기준, 묘지 이장절차 및 빈의관, 화장장

¹³⁴ 吳樹權, 위 논문, P43

¹³⁵ 臺灣省政府爲員會議第 1307 次會議審議通過, 65년 1월 1일 공포하여 75년 6월 30일까지 실시.

혹은 기타 빈장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많은 개선 성과를 본 정부는 2차 공동묘지 공원화를 위한 「臺灣省改善喪葬設施十年計劃」¹³⁶을 민국 74년에 제정 공포한다. 이 법의 4대 목표는 舊墓의 갱신과 납골당 건축을 통한 묘지의 순환사용, 공공위생·교통질서·주택지역의 안녕 유지를 위한 빈의관 증설을 통해 민중에게 治喪장소로 제공하여 민중들의 생활환경 개선, 화장장 증설과 화장권장을 통한 상례비용 축소, 각 지방정부의 묘지규모에 따른 적정인원 배치 및 관리강화로 공동묘지 공원화 추진이었다.¹³⁷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인의 장지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고, 공동묘지가 공원화되면서 위생적이고 경관이 좋아졌으며, 관리비용을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고충을 덜어주었고, 지속적인 관리강화를 통해 미신을 타파하고 고질적인 상장례의 악습을 개혁해 나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민국 75년 12월 1일부터는 직할시와 縣(市)장을 召集人으로 하는 「濫葬處理執行小組」를 결성하여 관계인원이 정기회의를 통해 관할구역내 공동묘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불법묘지를 처리하고 신규로 난립하여 불법 매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4.3.2. 「國民禮儀範例」, 「殯葬管理條例」, 「臺北市殯葬管理自治條例」요점

4.3.2.1 「國民禮儀範例」

현재 대만의 상장례에 적용되고 있는 법 규정은 「國民禮儀範例」,¹³⁸ 「殯葬管理條例」¹³⁹와 시행규칙 및 각 지방정부의 자치조례가 있다.

「國民禮儀範例」는 行政院 59年 10月 9日 台五十九內字第 9113號令核定되어 중간에 5회에 이르는 개정을 거쳐 內政部 80年 1月 26日 台(80)內民字第 891300

¹³⁶ 行政院 74年 5月 17日 台內字第 9014號函核定

¹³⁷ 吳樹權, 위 논문, p47

¹³⁸ 行政院 59年 10月 9日 台 59內字第 9113號令核定, 內政部 80年 1月 26日 台(80)內民字第 891300號函修正頒行

¹³⁹ 民國 91年 7月 17日 總統令制定公布全文 76條, 民國 101年 1月 11日 總統令修正公布全文 105條 內政部

號函修正頒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7 장 67 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상장례에 관한 부분은 제 5 장 45 조부터 6 장 65 조까지가 해당된다. 제 1 장 총칙에서는 본 규범이 고유 전통 예속과 현대사회의 상황을 참조하여 제정하였으며 국가의 모든 예의는 본 규범에 따르나 전통예의 혹은 종교를 갖는 신앙인의 통과례에 대한 예의는 고유전통 혹은 종교적인 예의를 따르게 하여 강제성이 없는 단순 참고용임을 알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각종의례의 순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 5 장 상례부분 1 절 治喪에서는 부고 형식과 입관 시에 상복을 입고 영구 앞에 사진이나 靈位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절 奠弔에서는 出殯 전에 교통 및 주변인에게 소음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적당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家奠의식 순서와 靈堂 설치의 참조 도면을 제시하고 있다. 3 절 出殯에서는 出殯 시의 장례행렬 순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의 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절 安葬에서는 안장의식 순서가 제시되어 있고 안장 또는 화장 완료 후 행동에 대해 정해져 있다. 5 절 喪期之喪服에서는 죽은 자와의 친근관계에 따라 입어야 하는 상복의 종류와 상복기간, 상장의 종류와 폐용기간, 상복기간에 유족이 지켜야 하는 행위와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 6 장 祭禮 부분에서는 1 절 公祭에서 공제의 대상과 의식절차, 참여자의 위치를 설명하고 2 절 家祭에서는 가족과 친족이 상복기간에 지켜야 할 제사의 종류와 의식 순서, 제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3.2.2 「殯葬管理條例」

빈장(殯葬)은 상장례에 있어 일체의 과정과 관리방법을 포함한 것으로 「殯葬管理條例」는 빈장시설과 빈장서비스업, 빈장행위를 3 대 주축으로 전체 7 장 105 조로 구성 되어 있다.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영에 합당한 殯葬施設의 축진을 통해 빈장업계의 품질서비스를 증대시키고, 빈장행위가 현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빈장행위로 개인의 존엄과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국민 생활 품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본 법은 1 장 총칙에서 제정 목적과 사용용어의 정의 및 중앙정부기관과 직할시, 鄉(鎮·市)에 이르는 지방정부의 관련 업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 殯葬施設의 설치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直轄市, 縣(市) 및 鄉(鎮·市)의 주관기관은 公立 殯葬施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설 殯葬施設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法人이나 寺院, 宮廟, 敎會로 제한하면서 설치, 확장, 위치 및 구비시설에 대한 내용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은 殯葬施設의 경영관리 부분으로 직할시 등 관련기관이 殯葬施設을 경영 시는 반드시 해당 기관과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24 조에서는 단순한 禮廳 혹은 靈堂을 설치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시신을 보관하거나 압관 등 위생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出殯 당일 제사의식을 위해 영구를 잠시 이동하여 멈추는 경우 이외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公設墓地에 매장 시 매장허가증이 없는 시신은 매장할 수 없도록 했다. 26 조에서는 公設墓地의 매장면적을 시신 1 구당 8 m², 추가 시 1 구당 4 m², 유골매장 시는 1 구당 0.36 m²로 제한하고 토지이용 절약을 위해 상황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7 조에서는 시신을 관과 함께 매장하는 경우 표면에서 70 cm 이상 깊이 묻고, 높이는 1m 50 cm 이하로 하고, 유골 매장 시는 평장을 하도록 하였으며, 28 조에서 묘지와 유골의 보존시기는 해당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결정하는 기간으로 하였는데, 타이베이 시의 경우 7 년이후 檢骨하여 화장 후 처리하도록 하고, 최장 10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⁴⁰ 기타 29 조부터 41 조까지는 무연고자 묘지 처리 방법과 公設墓地와 유골의 등기부 기재내용과 보존, 사설 殯葬施設 설치 및 폐쇄와 사설 殯葬施設의 비용, 殯葬施設경영관리기금, 公設 殯葬施設의 移葬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¹⁴⁰ 대북시빈장관리자치조례 제 12 조

제 4 장에서는 빈장업종 관련 업체의 신청, 허가, 영업등기 및 변경신청, 빈장업조합 가입의무, 전문예의사의 구비자격 및 조건, 수행업무, 빈장업 책임자의 조건과 빈장업의 비용 공개 의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기사항으로 빈장업체는 반드시 중앙담당부서에서 정한 격식을 사용한 서면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행하도록 하고,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다. 50 조에서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승인된 업체가 아닌 자는 빈장업서비스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51 조에서는 사전에 선수금을 받은 빈장서비스업체는 수취비용의 75%를 신탁기금에 신탁을 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 해지, 종결 혹은 별도로 정해진 조항에 의하지 않으면 신탁금액을 수령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빈장업체의 파산, 영업정지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제 5 장은 빈장행위에 대한 관리규정이다. 61 조에는 기본적으로 빈장서비스는 고인의 생전 유언을 존중하여 하도록 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 유족과 합의 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62 조에서는 빈의관 시설부족으로 도로에 천막을 치고 빈장예의를 해야 하는 경우 관할경찰서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 2 일동안에 걸쳐 지방정부의 자체법규에 준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3 조에서는 빈장서비스업체가 허가 받지 않는 불법장소를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소개할 수 없고, 병원에 허가 없이 들어가 소관을 피우거나 병원 혹은 유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밖으로 운반할 수 없도록 하였다. 64 조는 병원에 태평간을 설치하는 경우 병원에서 사망한 자에 대해 임치로 안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설치하고 가족이나 위임을 받은 빈장업체에게 시신을 인계할 수 있어야 하고, 65 조는 본 법 제정 이전에 태평간을 설치하고 염, 出殯, 제사 등을 지낼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자는 시설의 증축 등을 할 수 없으며 5 년 이후에는¹⁴¹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¹⁴¹ 2016 년 12 월 24 일

병원은 직접 혹은 위탁 경영을 할 수 있으나 관련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정된 비용 이외는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67 조는 빈장서비스를 위탁 받은 자는 出殯 1 일전에 빈장관련 동선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68 조는 빈장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소란을 피우거나 주변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밤 9 시부터 익일 7 시까지는 확성기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69 조에서는 불의의 사고 혹은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한 이후에 가족이 인계해 가거나 위박받은 빈장업체가 인수해 가지 않으면, 관할 공립빈의관에 연락하여 운반해 가도록 하고 스스로 빈장업체를 소개하거나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빈의관은 연락을 받은 이후 자체적으로 운반하거나 빈장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가족의 동의 없이 운반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70 조는 시체의 매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골 등은 합법적인 화장로나 이동식 화장로를 이용하여 화장한다. 71 조에는 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장한 개인 묘지나 시설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72 조에서는 본 법 시행 이전에 합법적으로 公設墓地에 매장된 가족 묘지 등은 지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6 장 73 조에서 99 조는 상기 정한 법을 위반했을 경우 각 조항별 위반 사항에 따른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7 장 부칙에서는 낙후된 殯葬施設의 실질적인 관리와 공원화 추진 및 殯葬施設업체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주관기관의 계획하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殯葬施設의 설치 및 경영에 관해서는 공정한 인사나 관련인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본 법 시행이전에 건설중인 사설 殯葬施設을 계속해서 건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중앙기관은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殯葬管理條例施行細則」은 「殯葬管理條例」 제 104 조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전체 35 조로 구성되어 있고 「殯葬管理條例」의 내용을 보완한 실무적인 내용

으로 中華民國 101 年 7 月 1 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4.3.2.3 「臺北市殯葬管理自治條例」

「臺北市殯葬管理自治條例」는 중화민국 82 年 1 月 4 日(1993.1.4)에 제정되었고 民國 91 年 7 月 23 日(2002,7.23) 전체 5 장 28 조로 수정 반포되었다. 제 1 장 총칙에서는 제정목적으로 “빈장문화를 개선하고 빈장시설의 설치관리를 강화하며 합리적이고 유효한 토지자원 이용”으로 했으며 적용대상을 타이베이시의 공·사립 빈장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제 2 장 시설에서는 빈의관과 화장장 납골당의 필요 구비시설, 공설묘지 내에서의 불법 행위와 매장 및 화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관내 빈장시설을 이용하여 매장 혹은 화장을 할 경우 반드시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매장 혹은 화장을 신청한 이후에 가능하며, 화장 시 사용할 관의 두께는 8.5인치(1.6cm), 시신의 매장과 화장 시기는 사후 24시간 이후에서 입관 후 1 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만약 사전 신청없이 6 개월 이후 매장 혹은 화장 시 관계기관과 위생소의 인원의 대동하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묘지 사용기간은 7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였다. 외국에서 사망하여 관내에 매장을 위해서는 외국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했고 병사(病死)가 아닌 자를 화장할 경우에는 별도 표기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묘지 사용 신청후 3 개월이 지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립빈의관 사용료 면제 혹은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제 4 장은 이장(移葬)에 관한 부분으로 빈장관리조례에 의거 이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3 개월전에 사전공고를 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기간 내 이장을 하는 묘 주인이나 관계인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이장 신청인에게 보상비를 받고 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5 장 부칙은 공립장례시설 이용 비용과 이장 보상비는 관련기관이 정하여 타이베이 시 정부에서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별도 규정양식을 정해 두고 있다.

4.4. 제기되는 문제점

4.4.1 과도한 의례와 금기사항

주자회통을 근간으로 대만 상장례의 주축이 되고 있는 전통 상장례는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변천에 부응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상장례의례는 그 동안 양육해 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한 생명을 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로써 엄숙하고 장엄한 가운데 고인의 삶을 기리고 애도하면서 사후세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이동과 그 동안 죽음에 대한 금기시한 사회풍토로 인해 직접 상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허둥지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문 장의사에게 일체를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장의사는 고인의 유언이나 유족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악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 이상의 각종 의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상장례의 의례는 일반적으로 고인 또는 유족의 종교에 따라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유교를 바탕으로 신흥종교와 지역 또는 종족의 전통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장례는 정체성이 불명확하다. 비록 종교는 기독교나 천주교 또는 도교이면서 기본적인 의례는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開魂路와 做七, 做旬, 出山功德 등은 일반적으로 불교의 습속이나 대만의 일반 상장례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법회에 많은 인원의 스님 혹은 도사를 불러서 장시간 동안에 걸친 제사는 유족이 집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 3 자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유족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추모하여 드리는 제사라기 보다는 옛 관습에 따라 요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 상장례에서는 유독 금기사항이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면서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는 풍수지리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입관과 매장 시에 고인의

사주와 상극이 되는 사람은 참석을 해서는 안되고 눈물을 시신의 위에 떨어 뜨려서도 안되며 부부가 합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6 년이 지나야 되는 등¹⁴² 각종 금기사항은 결국 유족으로 하여금 함께 슬픔을 표하고 마지막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없게 제한을 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4.4.2 상장례 기간의 장기화

대만의 상장례 절차는 크게 염(殮), 빈(殯), 장(葬)의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염은 시신을 관목에 입관하는 절차이고, 빈은 입관 후 매장 혹은 화장 시까지 지키며 애도하는 것이며,葬은 시신을 최종적으로 땅에 매장하거나 화장 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임종 이후 장례를 마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관련법령인 「國民禮儀範例」나 「殯葬管理條例」에서는 임종 후 시신의 처리기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상복기간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복기간이 부모상의 경우 3 년에 해당하는 장기간으로 되어 있다. 물론 현대인의 바쁜 일상 생활로 인해 3 년 동안 治喪에 치중하는 경우는 없어졌으나 아직도 治喪 기간이 장기간임에는 분명하다. 단지 「臺北市殯葬管理自治條例」에서는 매장 또는 화장 시기를 사망 후 24 시간 이후에서 입관 후 30 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이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어 각각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임종 후 몇 개월이 지나서 입관을 하고, 또 몇 개월이 지나서 매장 또는 화장을 하고 있다. 최근의 일례로 2008 년 10 월 고인이 된 台塑集團 설립자 故王永慶선생의 경우 2009 년 7 월 2 일 매장¹⁴³함으로써 임종 후 8 개월이 지난 다음에 서야 영면 했으며 그의 부인 故王月蘭여사의 경우 2012 년 7 월 1 일 임종 후 동년 10 월 9 일에 입관하였으며 매장은 2013 년 1 월 26 일에 함으로써 6 개월 이후

¹⁴² 일례로 대만의 故王永慶선생의 묘에 큰 부인 故王月蘭여사를 합장해야 했으나 6 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장을 하지 못하고 별도 묘역을 조성한 예가 있다. 中時電子報 2013 년 1 월 26 일 보도

¹⁴³ 中時電子報 2012 년 8 월 28 일 보도

에 영면하였다.¹⁴⁴ 이는 대만 사람들의 명당을 중시하는 풍수지리사상과 연관되어 매장의 위치는 물론 입관과 하관의 시간까지 계산하여 정하는 풍습에 따른 것으로, 명당에 모심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의 은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복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겠으나, 대만지역은 아열대기후로 인해 1년 사시사철 온도가 높은 지역이고, 사람이 사망 이후 급속도로 부패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위생처리 이후 냉동고에 보관 해야 하는데 6개월, 8개월 이상 보관 시 발생하는 비용이 아주 높고, 또한 특정인이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4.4.3 요란한 발인식 및 장례행렬

출빈(出殯) 당일의 발인식은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을 보내는 家奠과 고인과 유족의 친척 및 친구들이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의례인 公奠을 마치고 장지나 화장장으로 이동한다. 家奠 시에는 예전에 모든 친족들이 서로 예를 갖추는 복잡한 의식이 간소화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公奠 시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인 관계가 반영되면서 장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있다. 유족들이 발송하는 부고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인이나 기관장 혹은 고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발송되어 남발이 되거나, 장례식을 통해 고인은 물론 유족들의 사회관계가 표명되고 규모에 따라 자녀들의 효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 비록 많은 돈이 들더라도 화려한 상장례의식을 추진하며, 조객들은 자신의 내방사실을 확실하게 유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단체가 아닌 개인적인 公祭를 함으로써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유산문제로 유족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남은 유산으로 다투는 것보다 장례식에 필요한 용품을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기도 한다. 출빈행렬에 있어서도 고인의 영정, 영구와 가족과 친척 및 가

¹⁴⁴ 中時電子報 2013년 1월 26일 보도

까운 친구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電子琴花車·五子哭墓·孝女思親등을 고용하여 가장된 슬픔의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효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역행된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족의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마비되고, 악대의 소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소음 공해를 입어야 하며,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어 질서 유지를 해야 하는 등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4.4.4 지속적인 銀紙錢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유발

대만의 장례식은 銀紙錢에서 시작하여 지전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이가 저승에 가는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태우는 腳尾紙부터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빌려 왔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還庫錢은 물론 매 번의 의식에 종이돈을 태움으로써 장례가 끝날 때까지 종이돈을 태우는데, 이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이승의 삶과 같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신에서 출발하였으나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당연시하고 있다. 또한 구습에서는 종이로 금동옥녀와 주택을 만들어 상례가 지나고 나면 태워 없애는데 이는 고대시대의 순장습속에서 연유한 것으로 막대한 비용만 발생할 뿐 아무런 의의가 없다. 이러한 구습은 습도가 높은 대만지역에서 상가 곁을 지나노라면 항상 향과 종이 탄 냄새가 섞인 퀴퀴한 냄새가 난다. 물론 개개인의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맞고 틀린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런 관습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행히도 新北市에서는 길가에서 종이돈을 태우는 행위를 환경오염차원에서 금지시키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동일한 유교문화권이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한국과 대만의 상장례문화를 고찰함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의 상장례의 변천과정과 전통 상장례, 양국의 상장례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개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 1 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동기와 목적, 연구방법 및 제한 사항과 선행연구를 검토 하면서 한국은 반만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대만은 17 세기 청 대에 중국의 한족이 대만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형성된 이민사회로 대만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2 장 생명관에서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인 정의와 임사체험자들의 경험,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과 종교별 죽음에 대한 생명관, 상장례의 의미와 각 종교별 상장례의 형태를 비교해 보았다. 의학적으로 죽음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중지되며 뇌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고, 죽음에 대해서 각 종교는 서로 다른 생명관을 갖는다. 불교는 사후 윤회한다는 논리로 탄생과 죽음은 실체가 없고 한낱 포말과 같이 인연에 의해 생겼다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유교에서는 인간은 기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물질적인 힘이 소멸되는 것을 죽음으로 정의한다. 기독교에서는 구약에서는 죄의 결과이나 신약에서는 예수의 부활로 죽음의 세력이 깨어져 부활을 통한 영생을 하기 때문에 죽음은 긴 잠을 자는 상태로 생각하며, 도교에서는 삼혼칠백이 있어, 함께 있으면 사는 것이요 혼과 백이 흩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보고 있다. 각 종교에 따라 다른 의식으로 진행되는 상장례는 전세계적으로 공히 통과의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과 대만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장례의 원형은 주(周)대에 형성되어 이후에 불교, 도교 및 각종 민간신앙사상이 결합하여 죽은이의 삼별(三別: 신분고하, 혼인유무, 자손유무)에 따라 상례의 정도를 결정하였다.

상장례의식은 죽음을 알리는 사회적인 역할, 유체처리의 물리적 역할, 각종예

식을 통한 문화종교적인 역할, 심리변화와 비통의 처리인 심리적인 역할과 영혼에 대한 진혼의례 및 부패에 따른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감정처리의 사회심리적 역할이 있으며 한국과 대만에서는 사자의례와 조상 숭배의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제 3 장에서는 한국 상장례에 관한 내용을 일제시대 이전과 일제시대, 현대시대로 구분하여 시대별로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한국 전통 상장례 절차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현대 상장례의 절차와 내용을 기준으로 고례의 상장례에서의 절차와 내용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례 관련 정책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기준으로 제한되거나 권장하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상장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장례문화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는 청원 두루봉에서 발견된 홍수아이이고, 신석기시대에는 불을 사용하였으며 자연신앙과 함께 가족묘지형태가 등장하고, 청동기시대에는 고인돌을 통해 장묘문화를 알 수 있었다. 부여시대에는 순장과 함께 5개월에 걸치는 장례를 치렀고, 신라시대에는 불교가 전래되어 고려시대까지 화장이 성행하였다. 고려 말 등장한 신진 무인세력을 중심으로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유교 상장례문화가 도입되어 조선시대 성종에 이르러서는 불교식 장례를 금지하고 화장을 법적으로 금지 시키는 등 강력한 유교식의 상장례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중에서는 불교식의 장례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2년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 제정 공포, 1919년 취체규칙 개정, 1934년 「의례준칙」을 통해 한국 장례문화의 대 전환점을 이루었다. 그 동안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묘지로 인해 일본의 통치상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공동묘지와 법적으로 금지되어온 화장을 합법화시켰고, 사람이 죽은후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기를 3일, 상복제도의 간소화 및 복기 단축, 전통의례의 간소화와 종교적 의례 보편화가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1961년 일제시대의 「의례준칙」을 근간으로 한 「표준의례」가 제정되었으나 강제성을 띠지 않아 지켜지지 않자 1973년 이른바 유신정부는 기존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로 전문을 개정하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 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함을 목적으로 하여 위반 시 벌칙을 두어 강제성을 띠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1998년 헌법재판소의 “경조사시 음식접대 금지 가정의례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1999년 「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되고 「건전가정의례」와 이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전통 상장례는 가례에 19가지의 절차가 명기 되어 있으나 상당부분이 미신적인 요소가 담겨 있고, 3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현대의 시대적인 조류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전통방법에서 중시하는 의례의식의 상당부분이 없어지고 상장례가 단순한 물리적인 유체처리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음은 심도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장례에 관한 법령 검토 부분은 한국의 장례 관련 법률은 「건전가정의례준칙」과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검토하였다.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장일은 3일을 권장하고 상기는 최대 100일 이내, 상복은 별도 준비 없이 흰색 한복 혹은 검정색 양복으로 대체하고, 상제의 범위를 고인의 직계비속으로 한정했으며 부고에 공공기관단체의 이름을 적지 못하도록 하였고, 운구행렬의 제한 등을 두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상장례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허례허식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 사항이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망 시 유체처리기간을 최소 24시간 경과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당 묘지의 면적은 10 m² 이내, 묘지의 사용기간은 15 년으로 최대 2 회 연장 가능토록 했고, 기타 장례업자의 시설 기준 등을 지정하였으며 최대한 매장을 줄이고 화장을 통한 자연장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국립묘지의 경우 적용을 제외시킴으로 인해 차별성을 두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령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너무 과도한 간소화와 효율화 측면을 강조함으로 인해 상장례가 의례의 의미는 상실되고 단순 유체처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가의 이 중태도로 인해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적인 영역까지 과도하게 국가가 통제를 하려 하며, 국가에서는 화장문화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와 노령의 사람들은 매장을 선호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제 4 장에서는 대만 상장례 내용으로 청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대만 상장례의 변천 과정과 일반적으로 대만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통 상장례 절차, 대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례 관련 정책과 각계에서 제기 되는 대만 상장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17 세기 말 중국으로부터 한족이 대거 대만으로 이주해오면서 한족중심으로 형성된 대만사회의 상장례 문화도 오래전부터 농후한 혼령숭배와 조상숭배신앙이 융합되어 나타났다. 남들이 불효자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여러 가지 악습이 그대로 전승되는 과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의식형태로 나타나고 종족범위내 혈연관계의 원근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달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대한 장례문화가 형성되었다.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위생적인 측면을 강조한 일본의 공동묘지 정책과 화장문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장례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향신(鄉紳)이었고, 해방 이후 향신의 역할은 입관을 직접 확인 후 사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이

장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천과 도시화로 인해 기존 상장례문화의 전승자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장의사가 태동하였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금기시하던 습성으로 인해 상장례업계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독특한 분야로 한때는 이를 기회로 여긴 불량범죄조직이 상장례 업계에 진입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전통적이고 비합리적인 장례문화가 형성되기도 했다.

대만 전통 상장례 부분은 전통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교 방식과 불교방식이 함께 어우러져 아주 많은 의례절차가 진행이 되고 또한 금기사항도 많다. 이는 의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장례 일체를 장의사에 위탁하여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침식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상장례 정책에 대한 최초의 법령은 1936년 제정 공포된 「公墓暫行條例」으로 1983년까지 유지되다가 동년에 「墳墓設置管理條例」으로 대체되었다. 이 법에서는 공동묘지를 설치하여 모두가 공동묘지에 매장하도록 강제 하고 분묘의 사용면적을 6.6㎡ 이내, 지표면 위로 1.3m 이내로 제한 하였으나 일반 민중들은 이에 따르지 않게 되자 이후 지속적으로 후속 법령을 제정 공포하여 그동안의 개인적인 묘지 구축에서 공동묘지로 일원화 해 나갔다. 특히 1976년에는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묘지 이용을 통한 공원묘지의 기업화, 오래된 묘지를 정리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공동묘지의 공원화, 악습과 미신 타파를 통한 공동묘지의 현대화에 3대 목적을 둔 「臺灣省公墓公園化十年計劃」을 제정 반포하였다.

현재 대만의 상장례에 적용되고 있는 법 규정은 「國民禮儀範例」, 「殯葬管理條例」와 시행규칙 및 각 지방정부의 자치조례가 있다. 「國民禮儀範例」고유전통예속과 현대사회의 상황을 참조하여 제정하였으며 국가의 모든 예의는 본 규범에 따르나 전통예의 혹은 종교를 갖는 신앙인의 통과의례에 대한 예의는 고유전통 혹은 종교적인 예의를 따르게 하여 강제성이 없는 단순 참고용임을 알 수 있

고, 전체적인 내용이 각종의례의 순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殯葬管理條例」는 빈장시설과 빈장서비스업, 빈장행위를 3 대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주관기관은 공립殯葬施設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설 殯葬施設을 설치할 수자의 범위를 法人이나 寺院, 宮廟, 敎會로 제한하였다. 公設墓地的 매장면적을 시신 1 구당 8 m², 추가 시 1 구당 4 m², 유골매장 시는 1 구당 0.36 m²로 제한하고, 시신을 관과 함께 매장하는 경우 표면에서 70 cm 이상 깊이 묻고, 높이는 1m 50 cm 이하로 하고, 유골 매장시는 평장을 하도록 하였으며, 묘지와 유골의 보존시기는 해당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결정하는 기간으로 하였는데, 타이베이 시의 경우 7 년이후 檢骨하여 화장 후 처리하도록 하고, 최장 10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 법 제정 이전에 태평간을 설치하고 염, 出殯, 제사 등을 지낼 수 있도록 허가 받은 받은 병원은 시설의 증축 등을 할 수 없으며 5 년 이후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臺北市殯葬管理自治條例」에서는 관내 빈장시설을 이용하여 매장 혹은 화장을 할 경우 반드시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매장 혹은 화장을 신청한 이후에 가능하며, 화장 시 사용할 관의 두께는 8.5인치(1.6 cm), 시신의 매장과 화장 시기는 사후 24 시간 이후에서 입관 후 1 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만약 사전 신청 없이 6 개월 이후 매장 혹은 화장 시 관계기관과 위생소의 인원의 대동하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만 상장례 문제점으로는 과도하게 많은 의례행위와 금기사항, 상장례 기간의 장기화, 요란한 발인식 및 장례행렬, 지속적인 銀紙錢 등의 소각에 따른 환경 문제 유발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대만의 상장례에 관한 변천과 전통 상장례 절차 및 법령 비교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공통점으로는 역사적인 배경과 풍수지리 사상에 의한 명당선호 사상을 들 수가 있다. 한국과 대만의 전통 문화 중 상장례 문화는 유교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오랜 기간을 통해 지리적인 환경과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일부 변형되기는

했어도 기본적인 사상은 조상신에 대한 관념과 조상 숭배에 대한 효도사상에 입각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도시화와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전통 상장례 방식이 간소화 되거나 축소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불교의 형식에 전통 무속 신앙과 각종 종교의 의식이 가미 되면서 변형되고 있으나 기본사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상장례의 구성은 사자의 시신 처리와 사자의 영혼 처리, 전체적인 사자 처리 이후 생자가 지켜야 할 행위가 주가 되고 있다. 의례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부분은 매장할 위치와 시간을 풍수지리를 감안하여 택일하고 죽은 자에 대한 음식물과 옷, 돈을 함께 매장함으로써 사후에도 이승과 같은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대만의 상장례에 있어 대부분의 전통 의식은 부계사회를 기반으로 한 가족 중심이고 남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한국은 「진전가정의례준칙」에 의거 현대의 상장례는 간소화 및 효율화에 치중되어 의례적인 측면보다 사체 처리에 중점을 둔 물리적인 처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만에서는 「빈장관리조례」에 의거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하여 의례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로는 한국에서는 상장례에 있어 금기사항이 많지 않은 반면 대만 상장례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금기사항이 지켜지고 있다. 임종이 임박하면 환자를 정침에 옮기는데 정침에 있는 조상신과 신들이 사자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빨간 형짚이나 종이로 조상신들의 신주를 가리는 차신(遮神), 腳尾飯에 한 쌍의 젓가락을 밥 위에 꽂아 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식사를 할 때 밥 위에 젓가락을 꽂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임종 후 시신을 지키는 동안 고양이가 시신을 넘을 경우 시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속설로 인해 고양이가 시신을 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잠을 잘 때 시신과 같은 방향으로 자게 되면 시신이 데리고 갈 수 있음의 속설로 반대 방향으로 자야 하고, 입관과 하관시 고인과 출생시간이 서로 상

극이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는 안 되고, 유족이 슬퍼서 울더라도 유족의 눈물이 시체에 떨어지면 눈물을 흘린 사람이 미칠 수도 있다라는 속설로 인해 눈물이 시체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금기사항 중의 하나이다.

셋째로는 대만의 장례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길다. 한국은 1973년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면서 장례기간을 일률적으로 3일로 제한했다. 이는 전통의례와 풍습에 부합하지 못하여 많은 반발을 일으켰지만 기독교 및 신흥종교 그리고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이전과는 다른 바쁜 일상과 핵가족 중심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아직 법적인 제한이 없어 기존 가족이 유지하는 전통의식과 풍수지리에 의한 택일과 금기로 인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장례를 치른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 시신 보관에 드는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장례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

넷째로는 끊임없이 銀紙錢을 태우는 풍습이 남아 있다. 사람이 죽어서도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저승세계에서 돈과 생활용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은지전 소각은 다분히 미신적이라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당연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비용을 유발함은 물론 습도가 높은 아열대 지역인 대만의 기후로 인해 불결한 냄새를 유발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행히도 新北市에서는 길가에서 종이돈을 태우는 행위를 환경오염 차원에서 금지시키고 있어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대만에서는 아직도 상례를 흉사로 여기고 있어 일반인들의 조문을 발인일 당일 위주로 진행한다. 한국에서는 3일장을 추진하고 있어 예전의 성복제가 끝나면 바로 발인을 해야 하는 시간 관계로 사망소식을 들으면 바로 조문을 가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도움 일이 있으면 도와준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상장례로 인해 우편을 통해서 정식으로

부고를 받아야만 장례일을 알 수 있고, 빈(殯)의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인 각종 의례에 치중되어 있어 외부인은 거의 조문 하지 않는다. 한편 조문시에 상주의 장례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의금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상가에 조문을 갈 때 본인과 고인 및 유족과의 친밀관계에 따라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 범위 내에서 금액의 액수에 대해 별도의 제약조건 없이 적정 금액을 담아 부의금으로 전달하여 상례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반드시 하얀 봉투에 홀수의 금액(예를 들어 2,100NT\$, 3,100NT\$ 등)을 담아서 해야 한다. 이는 상례는 흥사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짝수가 아닌 홀수의 금액을 담아서 하는 것이다

여섯째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개인묘지가 허용되지만 대만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처음 일제시대에 공동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지켜지지 않아 이후에는 유명무실해지고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사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만은 공동묘지 이외의 지역에 개인 매장을 단속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일곱째 대만이 한국보다 화장율이 높다. 한국의 화장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20%수준에서 2005년 52.6%로 매장을 앞선 이후 2012년말 72.9%에 불과하고, 장사시설은 2011년말기준 화장 시설은 53 개소, 봉안당은 355 개소, 자연장지는 359 개소, 묘지시설은 463 개소이다.¹⁴⁵ 이는 아직 나이가 많은 노년층이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 반면 대만의 화장율은 1996년에 이미 52.44%로 매장을 앞선 이후 2012년 말 91.49%가 화장을 하고 있다. 한편 대만의 빈장 시설은 2011년 말 현재 빈의관 50 개소, 화장장 34 개소, 공동묘지 3,164 지역, 납골당시설 458 개가 있다.¹⁴⁶ 위에서 대만의 공동묘지는 3,164

¹⁴⁵ 보건복지부, 2013년 장사업무 안내, 2013, p4

¹⁴⁶ 내정부 全國殯葬資訊入網

개소중 2,863 개 지역이 불법으로 조성 되었다는 것은¹⁴⁷ 대만정부가 지속적으로 빈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로 보인다.

여덟째 대만은 죽은이에게 하는 각종 제례의식을 통해 자손들의 복을 받고 있다. 시신의 목욕을 시키면서 “당신의 머리와 얼굴을 씻기니 자손들이 머리와 얼굴이 있겠고, 입을 씻어주니 자손이 만년에 걸쳐 부귀가 있겠고, 손을 닦아주니 자손에게는 자유가 있겠고, 몸 전체를 깨끗하게 닦아주니 자손은 모두 우정과 효도를 하겠고,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주니 자손들의 끝이 좋겠습니다” 등의 축복의 말을 함께 하고, 접관시에 婆仔가 “관 뚜껑을 덮어 두면 이 자손들에게 해마다 부귀를 주시고, 관을 들어 올리면 이 자손들에게 아들을 낳고 재물이 들어 오게 하시고, 관을 태우고 나면 자손 중에서 장원이 나오게 해 주소서”하고 나서 관을 들인다. 입관 전 마지막 제사인 사생 지에도 마지막으로 “당신께 오곡을 드리니 자손들은 福祿을 얻어야 하고, 한입을 같이 먹으니 자손들은 오래도록 부귀가 함께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자손들의 복록을 부탁하고 있다.

아홉째로는 대만에서 관과 함께 시신을 매장 시에 하관하기 전에 관의 상하에 구멍을 뚫는다. 이러한 풍습은 통상 입관 후 매장 시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해 그 동안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나 물 등이 빠지게 하고,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빨리 부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매장 후 6 년이 지난 다음 검골 시에 살은 완전히 썩고 뼈만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열번째로 대만에서는 검골(檢骨) 풍습이 있다. 처음에는 중국지역에서 이민 온 한족들이 상을 당했을 때 바로 조상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실 수 없어 먼저 사는 지역 주변에 임시 매장을 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살이 썩고 나면 뼈만 간추려서 고향에 매장을 하기 위한 풍습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민족이나 종족의 차이 없이 모두가 매장 후 6~7 년이 지나면 묘지를 개장하여 유골을 수습한 다음 다시

¹⁴⁷ 내정부 「빈장시설시범계획 제 3 기 계획 보고서」, 2013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을 하거나 다시 재매장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매장한지 오래된 분묘의 경우 적극적인 검골 및 납골당 봉안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번 매장한 분묘는 고인의 사후에 자손들의 생활이 빈곤해 지거나 액운이 빈발하여 풍수지리에 의한 분묘위치가 잘못되었다고 가족회의에서 이장을 결정하거나 또는 정부의 국토개발 차원에서 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매장한 유골을 수습한다.

현대의 전세계적 장사문화 추세는 친환경 녹색장례이다. 한국과 대만 양국도 이에 맞추어 적극적인 환경 친화적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장사정책의 기본방향을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국민의 인식 개선을 통한 장사문화의 개선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에 따라 그 동안 진부했던 한국의 화장율은 1990년대 중반의 20%에서 2011년에는 71.1%에 이르고 있으나, 화장 후 매장 혹은 봉안으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과도한 석물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연장’이란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고¹⁴⁸ 지속적인 권장을 위해 2011년말 현재 전국에 355개소의 봉안당 시설과 359개소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

상대적으로 대만은 한국에 비해 일찍부터 화장문화를 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화장비용에 대한 면제 혹은 감면 등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해 1993년 45.8%이던 화장율은 2011년에는 90.8%에 이르고 일반적으로 화장 후 다시 매장하거나 봉안을 하고 있다. 대만 내정부는 2001년부터 친환경 녹색장례인 자연장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로 2012년 말 현재 전국에 14개소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으며, 자연장을 이용한 사람은 5,435명이다. 자연장을 도입한지는 이미 10

¹⁴⁸ 장사법 제 2 조 3 항; “자연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년이 넘었으나 2010 년말 2,429 명이던 자연장 이용 누계 인원이 2011 년 4,058 명, 2012 년말에는 5,435 명으로 최근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같은 유교권 문화의 한국과 대만의 상장례 의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전통의례를 통한 선조들의 생명관과 부모 또는 조상에 대한 효도관에 대해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행해 오는 관습과 문화는 한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으로 강제해서 바꿀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런 반면에 대만에서는 아직 오랜 전통에 의해 종교 또는 민족간의 관습으로 인해 현대 산업사회의 생활방식에 맞지 않게 아직 많은 부분이 너무 형식에 치중되어 이행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장례 의식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유족은 고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추도하는 마지막 의례인 만큼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한다. 한국에서의 허례허식 일소와 효율적이고 간소화란 명목으로 고인에 대한 진정한 추도와 애도의 모습은 점차 약해지고 단지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물리적 처리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위생문제, 소음공해, 공기오염, 교통방해와 장시간에 걸친 발인식을 하고 있는 대만의 상장례문화도 죽은이에 대한 추모의식은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과다 포장된 낭비가 강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시대와 종교적인 한계 및 언어적인 문제로 제한된 부문만 연구 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녹색장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산주마(看山走馬)식으로 현황만 살펴 보았다. 다음에는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한 의례의 변천 과정과 종교에 따른 상장례의 차이점 및 최근에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녹색 장례에 대해 추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서로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한 분야만을 통해서는 알 수 없겠지만 한국과 대만의 문화를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 상장례문화에 관심이 있는 후학들에게 본 연구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韓文資料

단행본

- 김장생 저, 전선용 역, 『국역 사계전서 27,28,29,30』 한국고전번역원, 2004
- 김성배, 『세종시대의 예의범절』,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6
- 박태호, 『장례의 역사』, 서해문집, 2006
-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 퀴블러 로스 저, 성염 역, 『인간의 죽음』, 분도출판사, 1997
- 홍기원, 『민속놀이, 축제, 세시풍속, 통과의례』, 한국민속학회, 2008

논문

- 김미혜, 「장사문화의 개선방안 및 자연장지 활성화 방안」, 서라벌대학교, 2010
- 길현섭, 「우리나라국립묘지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병구, 「한국전통제례와 추모식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송현동, 「근대 이후 상장례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 14 호』, 한국민속학회, 2002
- 정민자, 「한국의 상장례문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표인주, 「호남지역 상장례와 구비문학에 나타난 죽음관」, 『민속놀이, 축제, 세시풍속, 통과의례』, 민속원, 2008,
- 황인호, 「한국기독교 상장례 문화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包栢穎, 「한중전통통과의례문화비교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한국 관련 법령 자료

- 조선총독부,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 1912
- 조선총독부, 「취체규칙」, 1919
- 조선총독부, 「의례준칙」, 1934
- 보건사회부, 「표준의례」, 1961
- 보건사회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1968
- 보건사회부, 「가정의례준칙」, 1969
- 보건사회부,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1973
- 보건사회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1973, (대통령령 제 6552 호)
- 보건사회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973 (보건사회부령 제 411 호)
- 보건복지부, 「장례식장의 시설 기준」, 1994
- 보건복지부, 「건전가정의례」, 1999
- 보건복지부, 「건전가정의례준칙」, 2008
- 보건복지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12
- 보건복지부, 「장사등에 관한 법률」, 2013
- 보건복지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4
- 보건복지부, 「2013 년 장사업무 안내」, 2013

인터넷

- 보건복지부 e-하늘 정보 시스템, <http://www.ehaneul.go.kr/index.do>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http://www.law.go.kr/lsSc.do>
- 한국고전 종합 DB, <http://db.itkc.or.kr/index.jsp>
- 통계청,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中文資料

단행본

- 王貴民, 『中國禮俗史』, 文津出版社, 民國 82 年
- 王夫子, 『殯葬文化學』, 中國社會出版社, 1998
- 李秀娥, 『台灣傳通生命禮儀』, 晨星出版有限公司, 2003
- 王貴民, 『中國古代禮俗』, 台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1994
- 朱筱新, 『中國禮儀制度』, 台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1994
- 萬安生命科技股份有限公司, 『過去現在未來台灣殯葬產業的沿革與展望』, 威仕曼文化事業股公司, 2012.
- 陳瑤塘 外, 『台灣民間殯葬禮俗彙編』, 高雄復文圖書出版社, 2005
- 蔡相輝, 『臺灣的祠祀與宗教』, 臺原出版社, 1989
- 楊國柱 外, 『民俗·殯葬與宗教專論』, 韋伯文化國際出版有限公司, 2003
- 松濤弘道 著 許愫纓 譯, 『世界喪禮大觀』, 大展出版社有限公司, 1998

논문

- 呂應鐘, 「殯葬文化變遷與殯葬改革」, 新客星站, 2013
<http://www.thinkerstar.com/lu/essays/funeral/reform.html>
- 楊國柱, 「臺灣地區墓地管理制度之研究」, 國立政治大學地政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90
- 吳樹欉, 「臺灣地區墓地計劃與管理之研究」, 國立政治大學地政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89
- 崔昌源, 「中韓社會文化中通過儀禮之比較研究-以台灣與韓國喪葬儀禮結構變遷為例」,
臺灣大學校博士學位論文, 民國 85 年
- 劉仲冬 外, 「我國婚喪儀式性別意識之檢討」內政部報告, 2005,

대만 관련 법령 자료

行政院, 「公墓暫行條例」, 1936

臺灣省政府, 「臺灣省各縣市改善公墓·火葬場·殯儀館·實施步驟」, 1955

臺灣省政府, 「第 3 期 改善計劃」, 1959

臺灣省政府, 「臺灣省公墓公園化十年計劃」, 1976

總統府, 「墳墓設置管理條例」, 1983

行政院, 「臺灣省改善喪葬設施十年計劃」, 1985

內政部, 「墳墓設置管理條例 施行細則」, 1986

內政部, 「國民禮儀範例」, 1991

台北市政府, 「臺北市殯葬管理自治條例」, 2002

內政部, 「殯葬管理條例」, 2012

內政部, 「殯葬設施示範計畫第三期計畫」, 2013

인터넷

內政部全國殯葬資訊入網,

<http://mort.moi.gov.tw/frontsite/statute/dcaStatuteAction101.do>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funeral rites of Korea and Taiwan. Confucianism, a religious-like philosophical teachings taught by Confucius, has spread its philosophical/moral ground throughout the Eastern part of Asia. It was introduced to Korea by "Jujahak" during the end of Koryo dynasty and has attributed enormously within the Korean culture as the basic philosophical/moral ground for its culture, and governmental basis.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massive movement of Han descendants, whom having Confucianism as their philosophical/moral ground, from Guangdong and Fujian province during Ching dynasty of China to Taiwan, has created the philosophical/moral ground for Taiwan's cultural and governmental basis a mixture of the aborigine's culture and Confucianism.

From ancient period, the rite of passage has been altered to accommodate the environmental and religious background of each ethnic group that adopted the practice. Korea and Taiwan, both being within Confucianism cultural circle which adopted the culture by mixing it with their own local culture, do now show some similarities and also differences in parts of their cultures. As one of the rite of passage that can show such alteration is the funeral rite, which being a rite that putting life away in order, and something that unknown and inexperienced, and since its done by not the person himself but by the ones that are left behind following the wills of the dead, is deemed a most important. Also, since the rite is don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way how one perceives life, and due to its close relation with filial piety, makes this rite even more peculiar.

The funeral rites of Korea and Taiwan, being forced by the Japanese to accommodate the Japanese wa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and also by adopting the societal change from agricultural to industrial, is also gradually changing to accommodate each family's religious preference or the structure of each family. Such changes may reduce the funeral rites to simple "disposal of the body", forgetting about all the meanings and philosophies hiding behind such rites.

The main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understand the social structure and ethical culture of Korea and Taiwan through comparing the funeral rites based on literature study and field works of the two countries, which are both the descendants of Confucianism culture. By doing so, I hope to find a way to differentiate the merits and weaknesses of both funeral rites so that we will be able to hand down the merits of each country's funeral rit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modify or nullify the weaknesses of the ritual that's become too perfunctory.

Keyword ; Korea funeral rites, Taiwan funeral rites, Comparison of funeral rites between Korea and Taiwan.